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699-01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자료집

차 례

1. 유엔 사회권규약 이행에 대한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초안)	1
2.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정부보고서(초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95
3. 유엔 사회권규약 이행에 대한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125
4.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회기전 실무그룹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쟁점목록 의견서	169
5.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관한 쟁점목록	205
6.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의견서	215
7.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NGO 보고서	253
8.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영문)	307
9.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한글)	331
10.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보도자료)	349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자료집

1. 유엔 사회권규약 이행에 대한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초안)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대한 제4차 국가보고서

2015. 2.



대한민국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1안)

1.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함)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동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E/C.12/2008/2), 유엔총회 결의 62/268 및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최종견해(E/C.12/KOR/CO/3)를 참고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취한 규약 이행 조치를 기술하였다.
2. 특히 유엔총회 결의 62/268에 따른 분량상 제한에 따라, 규약의 이행조치는 제3차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따른 권고의 이행에 관한 사안을 주로 제시하였다.
3. 보고서 작성 과정: 시민사회와 협의 및 인권위 의견 청취 등 추후 기술

일반 사항

규약의 효력

4. 위원회의 **최종견해 제6항**에서 한국 정부가 3차 국가보고서 심의 시 설명하고, 최종견해 초안에 대한 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는 규약보다 협소하지 않으며, 오히려 헌법 제37조에 따라 범위가 더 넓을 수 있다는 점과,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는 비록 헌법이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관할 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권리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5. 국내법원의 규약상 권리의 원용에 대하여 주요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판대상은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도 위반됨을 결정한 사례로서 ‘산업연수생 차별대우에 관한 결정’(헌법재판소 2004헌마670, 2007. 8. 30. 결정)은 동 규약의 제2조제2항의 차별금지원칙과, 제2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국가의 규약이행의무와 권리제한조치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하며, 산업연수생인 외국인의 권리 주체성이 인정되며 이들에게도 근로자로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하급심 판례에서 전교조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 법규정이 규약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¹⁾ 한편 또 다른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주노동위원장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명령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세계인권선언」 제2조 제1항 및 제23조 제4항,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1항 및 제26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의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우리 사회에 편입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인정된다고 봄이 옳다”고 동 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하여 판결하였다.²⁾ 2012년에는 최근 도입된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업무와 직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직급정년 또는 일정 연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헌법,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 제도가 규약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하였다.³⁾

국가인권기구

6.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된 권고 8항과 관련하여 2012. 3. 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이 확대되어, 각급 학교와 공직유관단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인권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원장의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1) 서울지방법원 2003. 7. 9. 선고 2003노1118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7. 9. 선고 2003노2647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8. 7. 선고 2003노2443 판결

2) 서울행정법원 2011. 9. 15. 선고 2011구합5-094, 2011구합18687(병합) 판결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가단43400판결

7. 2009년 당시 인권위 직원 정원 164명은 2014년 현재 191명으로 확대되었고, 인권전문성을 감안하여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직원을 선발하고 있다.
8.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정책권고('10. 7.), HIV감염인 수용자 관리에 관한 의견표명을 통한 감염인 차별금지('13. 1.), 여군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에서 일가정양립을 위한 모성보호제도 여건개선과 의료서비스 체계 보완, 성희롱 예방, 차별금지 등을 권고하였으며('13. 10.), 비정규직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학교비정규직 처우향상 정책개선권고('13. 3.) 및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정책개선 권고('13. 8.),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개선 권고('12. 5.), 최저임금준수를 제고 방안 마련에 관한 정책권고('13. 5.) 등 근로조건에 관한 권고, 노령연금 확보와 노인친화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노인의 건강권 보장 권고('13. 1.),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인권상황 정책권고('13. 11.), 노숙인 주거권 및 의료권 보장과 일자리 정책 추진 권고('13. 1.) 등의 권고를 통해 규약상 권리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가입

9. 위원회는 최종견해 **제36항 및 제38항**에서 각기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비준을 고려할 것을 독려했다. 정부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가 개인진정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사회권규약 상 규정된 권리에 대한 국내 구체절차의 현황과 국내법적 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경우는 외국인의 출입국, 사회복지제도, 고용제도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비준을 추진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 정부의 관할 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차별을 금지하고, 그들의 근로 관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강화해가고 있다.

제2조 규약이행을 위한 일반 의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국가인권정책협의회

10. 위원회의 권고 이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07

년 그 1차 계획이 처음 수립되었고, 5년간의 1차 계획 이행이 종료된 후 2012~2016년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는 유엔 인권조약감시기구 및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등에서 우리 정부에 권고한 사안을 검토하여 정책과제에 반영한다.

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행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평가와 관련하여 2012년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시부터 국민평가단이 보다 객관적이며 직접적인 정책수혜자의 시각에서 이행상황을 평가함으로써 다시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모든 조약 이행 국가보고서 심의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부처가 관여된 권고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방안 등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보다 강화된 인권정책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에 관한 보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발원조(ODA)

12. **권고 제7항** 이행 관련, 개발원조 수혜국에서 지원국이 된 우리나라는 보다 체계적인 개발원조사업을 위한 기본법을 지난 2010년 제정하고, OECD DAC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그 지원규모를 계속 증대해오고 있다. 2012년에는 GNI 대비 0.14%를 지원하였으며, 양자·다자원조의 배분 비율은 74:26,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비율은 39.6:60.4 수준을 기록하였다. 소득그룹별로는 2012년 기준, 총 양자원조의 40.6%가 하위중소득국에 배분되었으며, 최빈국에 35.2%, 상위중소득국에 8.3%가 지원되었다.¹⁾ 2013년 우리정부의 ODA 규모는 약 2조 411억원이고,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한 약 2조 2,666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 중이다. 현재에는 GNI 대비 0.7%에는 미치지 못하나 그 증가추세는 2003년 4,357억원에서 10년 후인 2012년에는 1조 7,986억원으로 약312.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차별금지

13.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모집·채용 분야는 2009년 3월, 그 외 분야는 201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연령차별적인 그릇된 모집·채용 관행 개선을 위해 2013년 관련 광고 7,365건에 대해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48건의 위반사례를 발견하여 경고 134건 및 시정지시 114건을 실시하였다.ⁱⁱ⁾
14. 위원회의 권고 제9항 관련, 정부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관련된 입법사례 및 적용실태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새정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15. 위원회의 권고 제11항의 이행 정책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 운영되었다. 201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제·개정,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다.ⁱⁱⁱ⁾ 2006년부터 시행된 성인지예산제도는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되었고, 2011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iv)}
16.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정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정책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해당 기관에 개선 권고를 함으로써 정책개선 효과를 높이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분석평가책임관을 두어 체계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인권교육

17.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교육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희롱(1999년), 성매매(2008년) 예방교육에 이어 성폭력(2013년), 가정폭력(2014년) 예방교육에까지 범위를 확

대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민간사업장 종사자, 농산어촌 주민 등 일반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강사 파견을 통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v)} 또 아동·청소년에게는 학교에서 성인권교육 및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8. 인권교육은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⁴⁾ 국방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에서 각 소관 사항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⁵⁾ 법원에는 판사들을 중심으로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결성되어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2013년에는 법무부의 국제인권법 연구회와 공동으로 국제인권법과 차별금지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법무부는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난민

19. 권고 제10항 이행조치로서, 정부는 2012년 2월 난민인정절차의 효과성, 공정성, 신속성을 기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상 난민 등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 7월부터 시행중이다. 동법의 집행 및 난민정책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 내 난민과를 신설하였고,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 심의를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vi)}
20. 또한 「난민법」에 생계비 지원,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보장 등 난민신청자와 그 가족들의 처우를 규정함에 따라, 난민신청자의 경제적 여건,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취업을 허가하고 있다. 아울러 2013년 11월부터 초기 난민신청자의 주거와 생계지원을 위한 난민지원시설을 설립하여 이들에게 주거와 국적·종교를 고려한 식사 제공, 언

4) 법무부는 2008년 ‘인권교육 인프라구축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인권강사를 양성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강사단도 법무부 소속 기관을 방문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 교육부는 학교교육과정, 학교폭력예방교육, 법무부는 검찰·교정·출입국 공무원, 국방부는 군인, 안전행정부는 공무원과 재한외국인,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고용부는 성희롱, 여성부는 양성평등,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어교육, 법제도 등 국내적응 교육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 건강검진과 응급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21. **권고 제12항**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힘써왔다. 2013년 1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232천명에 달하고 있으며,^{vii)} 가족갈등·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인종적·문화적 편견으로 인한 정착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06년부터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갖추었다.
22. 결혼이주여성이 처음 입국할 시에는 2009년 7월부터 영주권·국적취득절차, 가정폭력예방 및 구제기관 등을 안내하고 있고, 기초법률 및 생활지식 등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2010년 10월부터는 국제결혼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상대국가의 제도·문화, 국제결혼관련법령등을 교육하고 있다.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한국어교육, 통·번역 서비스, 한국인 예비배우자 사전교육, 가족통합 교육, 취업교육을 제공한다.^{viii)}
23. 2011년 4월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규정을 신설,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 후에도 피해회복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동년 12월에는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을 신설하여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및 이혼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허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더불어,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였다.

사회권 향유를 위한 국제협력

24. 2009년, 한국은 OECD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원조공여국으로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과학기술분야를 비롯, 다양한 분야에서 개도국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권 신장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5. 2006. 4. ‘한-UNDP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한 것에 이어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09. 11. UNDP서울정책센터 설립 및 한-UNDP MDG신탁기금 설치에 합의하였다.^{ix)} 이어 2013. 9.에는 ‘한-UNDP 새마을운동 글로벌 이니셔티브 협력협정’을 체결, 보편적인 개도국 농촌개발 모델을 마련하여 이를 적용한 공동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UNDP 양성평등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양성평등제고를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여성권리 증진과 양성평등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제3조 양성평등

양성평등조치

26. **권고 13항** 관련,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평등 조치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가) 가족등록제도의 보완

신분정보에 관한 증명서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쉽게 공개되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⁶⁾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입증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2014년 11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시, 한부모가정, 이혼·입양경력자 등의 사생활 침해가 될 우려와 고통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6) 2013년 한해 이혼 11만 2,300건, 한부모 가정이 전체가정의 9%에 이른다.

(나) 일가정 양립, 남성육아휴직, 유연한 근로스케줄 관련 조치

불합리한 성차별적 인사 관행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 3월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적용대상은 계속 확대되었으며, 2013년 5월 전체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⁷⁾ 이어 2013년 12월에는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고용기준을 확대(동종 업종 평균의 60%→70%미달)하고, 2014년 10월에는 업종별 고용특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이행계획을 제출한 기업들 중 미이행사업주에 대한 명단공표제도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x)} 더불어 승진 및 채용 현황을 분석하여 결과적 차별이 발생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양성평등컨설팅 대상을 확대하고, 컨설팅을 시행계획서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친화 인증기업제도를 활성화하고,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일가정 양립, 남성육아휴직 확산 등은 제7조 이하 제46항 내지 제51항에서 기술)

(다) 공공보육, 학교급식, 아동양육시설 등 사회서비스 확장

27. 정부는 결혼,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서비스를 총망라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음더하기' 포털 서비스를 2012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28. 보고기간 동안 아동양육 및 보육서비스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3월부터 만0세~5세까지 모든 아동에 대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2003년부터 모든 초·중·고에서 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인프라를 대폭 증대하고 영유아 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에게 접근성 및 편리성을 확대하고 있다.^{xi)} 정부는 시간제일자리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따라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시간연장형 보육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7) 2014년도 전체 1,945개사, 공공기관 304개사, 민간기업 1,641개사에 적용됨

제6조 노동할 권리

여성노동시장참여 증대 및 청년고용촉진(권고 14항)

29. 권고 14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는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음은 아래 46항 이하에서 설명한다.
30. 정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을 확충, 2013년 130개소가 설치되어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직무적응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 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xii)} 한편, 여성근로자의 출퇴근 시간과 비용을 줄여 육아나 자기계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센터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등에게 장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31. 또한 청년층의 고용률은 전체고용률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과는 달리 진학과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며 하락하고 있다. 청년과 기업이 요구하는 학력·자격 격차 등으로 인해 취업난과 구인난이 함께 발생하는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청년층 고용 문제의 특성이다.^{xiii)}
32. 정부는 2014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하여, 교육·훈련, 구직·취업, 근속·전직의 단계별 맞춤형 청년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⁸⁾

8) 교육·훈련 단계에서는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 내실화를 통해 자격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위해 '14년부터 구직자를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훈련시키는 ‘일·학습병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장훈련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훈련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직업훈련의 질을 높이고 자격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훈련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현장의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고, 훈련의 질을 관리하는 통합 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직 및 취업 단계에서는 청년-기업간 정보 불일치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정보제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학생 등에서 청년층(18~24세)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청년(15~29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공공기관의 금리우대, 정기세무조사관세조사 면제시 우대, 조달시장 접근시 우대 등 재정금융세장조달 측면의 지원이 제공된다.

근속·전직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여 청년들이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인턴제 참여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 후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고 지급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자에게는 매년 근속시마다 100만원씩 최대 3년간 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병역을 이행한 후 동일 기업에 복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감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할 계획이다.

실업감소 대책

33. 정부는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2012년부터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취약계층 목표채용비율을 정해 매년 70%이상을 취약계층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⁹⁾ 이들에 대해서는 특히 연령, 지역, 장애여부 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와 복지사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xiv)}
34. 특히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하였고, 2010년부터 취약계층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사업초기에는 1만명 규모로 시작하였으나 참여자가 급증하여 2013년에는 약 21만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2013년 기준, 동 사업 참여자 중 약 55.7%가 취업에 성공하였다.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하던 제도를 개선하여 2011년부터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취업지원과 직업훈련서비스를 연계하였다.
35. 또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2013년 개정하였고, 법 시행 이전 60세 정년제 조기도입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확대하였다. 퇴직한 장년 근로자가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장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취업이 어려운 장년층에게는 임시직·일용직 중심의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고학력·대기업 등 퇴직 전문인력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전문성 및 경험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지원하는 한편 중장년 인턴제를 통해 장년층에게 중소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년층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50세 이상 장년 재직자에 대한 근로자 개인훈련지원을 허용하고,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대상을 기존 90일 이내 이직 예정자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시범사업 실시, 폴리텍 대학의 베이비 부머 특화과정 운영 등 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9)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고령자, 여성가장,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이다.

36. 구직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실업자 및 영세사업자에게 1인당 200만원 범위에서 실훈련비를 지원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xv)}

부당해고

37.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일방적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동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다. 2007년 이전까지는 구제절차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이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일원화하고,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구제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xvi)}

직업훈련

38. 정부는 낮은 청년 고용률의 원인 중 하나는 현장과 괴리된 직업교육훈련이라고 보고, 인력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체제로 전환하는 한국형 일학습 병행제를 2013년 9월부터 추진 중이다. 이는 기업이 청년 취업희망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실무·이론 교육을 병행하여 제공한다.¹⁰⁾ 이 경우 학습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으며, 이외 근로조건 및 산재적용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39. 또 사업주가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 근로자가 본인의 능력개발을 위해 참여하는 훈련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기업 자체 또는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소속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연간 4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xvii)}
40. 그러나 중소기업의 근로자 훈련 참여율이 대기업에 비해 낮아^{xviii)} 이러한 훈련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등 중소기업 특화사업을 도입하였고, 2014년에는 훈련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원 수준을 조

10) 2013년 시범도입 이후, 2014년 1천개소의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훈련 인프라 구축, 훈련비 등을 지원하며, 규모를 확대하여 2017년에는 1만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 4월까지 570개 참여기업을 선정하였고, 그 중 63개소(학습 근로자 337명)에서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정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xix)}

41. 한편, 근로자에 대한 직접 훈련 지원은 근로자가 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사업주로부터 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근로자이다. 또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를 대부하는 사업을 2013년까지 추진하였고, 2014년부터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부사업으로 통합되었다.^{xx)} 장기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이 과중하여 단기훈련에 치중할 경우에는 장기적이며 양질의 훈련을 받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정규직 및 전직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대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xxi)}
42. 향후 직업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이직·전직 지원이 필요한 중장년층에 대한 훈련,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청년층 근로자 지원훈련, 고숙련 훈련 등을 우대 지원하면서, 재직자 직업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특히 그 훈련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토대로 개편하여, 직업훈련과 직무의 연관성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제7조 근로조건

최저임금(권고 16항)

43. 최저임금 결정절차는 3차 보고서 제121항을 참고하라. 최저임금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3년부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xxii)}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므로 숙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히 2009년 당시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던,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하는 의원발의 법

안은 폐기되었다.

44.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사업장 근로감독 시 필수점검항목이며,^{xxiii)} 특히 위반사례가 많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 교사, 기업노무담당자, 공인 노무사 등 민간퇴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를 구성하고, 또래 청소년을 ‘알바지킴이 청소년 리더’로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한편,¹¹⁾ 업종별 협회·프랜차이즈 업체와의 간담회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고등학교, 대학교, 청소년 단체 등에 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모바일 웹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운영 등 다양한 신고체계도 마련하였다.
45. 한편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적발되면 시정한다는 관행이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최저임금법 위반 시 현장에서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고 사업주가 시정을 완료하면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하고, 2차 위반 시에는 시정여부와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자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2014년 11월).

근로조건 및 일·가정양립(권고 13항)

46. 한국의 고용상 남녀격차는 출산·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어 여성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경력단절을 겪어 질 낮은 일자리에 근무하게 되는 데에 주요 원인이 있다.
47. 지난 보고서에 제출한 바와 같이 2007년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확대하고, 2014년 2월 범정부 여성의 경력유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가정 양립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48.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1년간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2010년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3세 이하에서 만6세 이하로, 2014년에는 만6세에서 만8세 이하로 높여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2011년에는 육아휴직 시에

11) '13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100명)'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의심사례(2,092건) 적발 및 법제도 개선사항 홍보(65,574개소)

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40%(월 50~1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xxiv)} 또한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고용 유지비용 지원금을 상향하여, 대기업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중소기업은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을 지급한다.

49. 일과 육아의 병행을 위하여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2008년 도입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2011년 시작하였다.
50. 또한 직장의 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특히 중소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형, 산업단지형 어린이집에 대해 최대 1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51. 이러한 정책의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9년 53.9%에서 2013년 55.6%로, 여성고용률은 52.2%에서 53.9%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임으로써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4년 10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 1개월분을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그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및 비정규직 대책(권고 15항)

52. 남녀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으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여성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남녀의 임금격차는 2012년 기준으로 32%로서 그 격차가 점차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53. 위원회의 권고 제15항과 관련, 정부는 차별시정제도를 활성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54.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이들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해 2007년 관련 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차별

시정제도는 2012년 8월부터 더욱 강화되어,¹²⁾ 근로자의 신청없이도 근로감독관이 감독을 하여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후 절차는 근로자가 신청한 사건 처리 절차에 준한다.^{xxv)} 이에 더하여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2012년에는 75개 사업장에서 108건, 2013년에는 113개 사업장에서 131건의 차별사례를 적발하여 시정지도를 하였다.

55. 2011년 9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업의 인력 운용의 유연성은 보장하되, 비정규직이 동종·유사 업무를 하면서도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복지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 8개 법률 개정안이 2012년 2월 공포되었었다.
56. 또한 2012년부터는 퀵서비스기사·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으며,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3만1천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2011년 11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비정규직 다수 활용 사업장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12년 2월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125만원 미만 보수를 받는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¹³⁾

1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에 해당한다. 차별 시정제도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를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3)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세부 내용은 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교육·주거 등에서의 복지 혜택을 확충, ②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간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차별 요인을 사전에 발굴·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확대하여 차별시정제도를 활성화, ③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④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비정규직 유형별 지도·점검 강화, ⑤ 직접고용 유도를 위해 세계 지원 강화 및 공공기관의 고용구조를公示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 가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회 확충, ⑥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 사내하도급 전환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원청의 산재예방 조치 강화 등 추진, ⑦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민간부문을 선도, ⑧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이다. 이를 위하여 2012년 개정된 8개

57. 이러한 차별시정제도와 지속적 지도·감독의 결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비율과 성·연령·학력·근속년수·직종 등 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감안한 시간당 임금총액 비율은 최근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다.^{14)xxvi)}
58.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자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후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과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하고, 기간제·파견·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2015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서, 사업주에게 1년간 정규직 전환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50%(월 60만원 한도, 공모사업)을 1년간 지원하게 된다.
59. 한편 법원은 2년간 근로계약 종결 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사건에 있어 기간을 정하는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고 판시하였으며(2007두1729, 대판 2011. 4. 14.),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근로자는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명	개정 법률 주요내용
① 기간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권 부여 ■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6월로 확대
② 파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파견 적발 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직접고용 ■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권 부여
③ 최저임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한 수습기간 설정 금지 ■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신설(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근로기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진 사업에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연대책임을 모든 상위 수급자로 확대
⑤ 근로복지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복지기금 혜택을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에게 부여할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의 사용한도 확대
⑥ 보험료징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사업장의 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⑦ 국민연금법	
⑧ 조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한도 확대(1%→5~6%)

- 14)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비율(『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부): ('10년) 57.2% → ('11년) 61.3% → ('12년) 63.6%
 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감안한 비율(『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부): ('10) 87.4% → ('11) 90.9% → ('12) 91.6%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xxvii)}

작업장 내 성희롱(권고 17항)

60. 직장내 성희롱을 처벌하는 것이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여타 범죄 행위의 유형과 처벌 등에 견주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으로 성희롱 금지 및 사업주의 예방교육 의무 등을 규정하고 근로감독관을 통한 진정사건 처리 및 여성고용환경개선 지도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사업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화하였으며 2012년에는 직장 내 성희롱신고 대표전화를 개설하였고, 모바일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를 지원하고 있다.^{xxviii)}
61.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업무를 수행하며, 성희롱사건으로 인정하는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게는 특별인권교육, 행위자 소속기관에 징계 및 인사조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행위자 소속기관 또는 유관부처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권고 조치를 취하여 실질적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xxix)} 인권위의 성희롱 권고가 불수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언론에 공표하거나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성희롱 진정사건 사례집(2007, 2009, 2010, 2011)과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2012)를 발간, 배포하여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과 요건을 정립하고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산업환경

62.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 **권고 제18항**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였다. 2009년 이후 꾸준한 증원 결과 산업안전감독관 수는 13% 증가, 산업재해율은 16% 감소하였다.
6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고취를 위해 지역특성화교육, 사내안전보건교육, 이동안전보

건교육,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지난 5년간 3, 692,174명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xxx)} 2011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를 신설하여 지난 5년간 총 989,994명의 건설근로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이론위주에서 실습과 사례 중심 교육으로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50인 미만 서비스업종 중 재해다발 6대 업종에 대해 교육실시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 3억 미만 건설현장, 서비스업 중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지도사업을 통해 재해예방에 기여하고 있다.^{xxxi)}

64. 산업 분야별로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100인 이상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이행계획서를 사업장특성에 맞게 작성·이행토록 하고 고용부는 이들의 이행수준을 확인·평가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원청업체를 통해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xxxii)} 제조업의 경우에는 재해 위험성이 높은 위험기계·기구를 제도단계와 사용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 안전성을 확보하는 안전인증, 안전검사 제도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를 도모하고 있으며,^{xxxiii)} 2013년부터는 고위험·중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관 전담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대상사업장은 화학물질 다수 취급 사업장, 건설현장, 크레인등 사망사고 유발위험 사업장, 기계 설비 다수 보유 사업장 등 1만개소이다. 전담관리사업장에 대한 재해현황 분석결과, 사고성 재해가 2013년 한해 약 25.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65. 외국인근로자는 소규모업체에 주로 취업해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산업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문에 2012년 산업안전공단은 “외국인근로자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주로 취업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안전보건 자료 보급,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고용허가제 및 시행기관과 연계가 미비하여 사업 효과성이 저하되고, 안전보건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고용허가제와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연계·통합하고 각 제도 운영기관을 연계하는 정부차원의 산재예방대책을 2014년 1월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기술지원대상 선정 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우선 지원기준에 반영하여 기술 및 재정지원 사업을 집중하고 있으며, 실습형 안전보건교육 실시, 교육운영의 현

장성을 강화하였고, 안전보건 미디어자료 50여종을 13개국 언어로 개발하여 외국인 고용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건강센터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xxxiv)}

66. 또한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강제근로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금품청산 등의 근로자 권리구제 조항이 존재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들도 이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고 있다.^{xxxv)}

제8조 노동3권

67. 근로자의 근로3권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되고 있으며,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결성권 및 노사교섭 등에 대해서는 3차 보고서 제149항-160항에 설명한 바와 같다.
68. 위원회는 최종견해 **제19항 및 제20항의 권고**와 관련, 2010. 1. 1.부터 교원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여 교원노조별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위원회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등을 비준할 것으로 고려하라는 권고를 하였는데, 여전히 공무원 노조가입범위·실직자 노조가입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현행 법제도가 ILO협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와 ILO의 이견이 존재하므로 비준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조결성권 및 노사교섭

69.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여 2011년부터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설립이 허용되었으며,^{xxxvi)} 사업장 내에서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였다. 교섭창구단일화는 1차적으로 자율적 단일화를 시도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공동교섭 대표단을 결성한다. 교섭대표 노조 및 사용자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하여 소수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2012년 헌법재판소는 동 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2012. 4. 24. 결정 2011헌마33).

70. 노조설립 및 운영 관련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및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으며 2011년 9월 ‘부당노동행위 사이버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1월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중대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에게 대한 시정지시를 생략하고 즉시 수사를 개시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조치기준을 개정하였다.

쟁의행위보장

71. **권고 제20항** 관련, 2008년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을 사전적으로 금지하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어 원칙적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서도 파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이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관계 당사자는 자율교섭을 통해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교섭 결렬 시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다.¹⁵⁾
72.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며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개인에 대한 압류는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¹⁶⁾
7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쟁의행위가 목적, 절차, 방법에 있어 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각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

15) 필수공익사업장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을 말하며,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2013년 12월 31일 224개 필수공익사업장 중 174개사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136개사는 자율체결, 38개사는 노동위원회 결정).

16)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급여의 1/2은 압류금지. 단 급여의 1/2이 최저생계비(월 150만원_미달 시 최저생계비 압류 금지)

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는 경우에 국한된다.

고용허가제 제고 및 이주노동자 노조결성권

74. **권고 제21항**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보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2009년 12월부터 사업장 변경 신청 후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기까지 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으며, 임신·출산·질병 등 사유로 새 사업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으나, 불법 체류 외국인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최종 판결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다.

제9조 사회보장

75. 사회보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는 3차 국가보고서 제176항 내지 제219항을 참조하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76. **권고 제22항**의 부양의무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검토와 관련하여,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인식과 현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해당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수급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미만에서 185%미만으로 완화하였고, 2013년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를 추가로 포함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부양의무자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는 기본재산액을 대도시는 약 1.7배, 중소도시는 약 1.25배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재산 중 주거를 위한 재산의 소득환

산율을 약 4배 완화하였다.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득기준을 대폭완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이다.^{xxxvii)}

77. **권고 제22항** 노숙인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없어 일반 수급자와 같은 기준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도 취약계층의 실제 거주 사실을 해당 지역 보장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여 다른 수급자와 같이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대신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다.

의료급여

78.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는 제3차보고서 제 197항~198항을 참조하라. 2010년에는 고가의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인정대상 질환을 확대하였으며, 2012년에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상향 조정,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노숙인에 대한 의료급여 제공 등이 이루어졌다.^{xxxviii)}

긴급복지지원제도

79.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복지제도로써 「긴급복지지원법」을 2005년 제정, 2006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제도에 따라 일정 소득 및 재산기준 이하인 저소득가구의 주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화재 등으로 주거곤란, 가정폭력 등을 위기상황으로 보아 생계·주거·의료지원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우선 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지원 후 조사한다.^{xxxix)}

사회보험지원

80.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업주의 경우 비용부담, 소득노출, 복지혜택축소 우려 등

으로 사회보험가입을 기피해와 실업에 대한 대비나 노후준비가 되지 않아, 취약계층을 사회안전망 속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가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2012년 시범사업 도입 후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약 140만명의 저임금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x1)}

고용보험 확대

81.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이들 상당수가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며, 자영업자의 폐업 시 안정적으로 재취업·재창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2012년 1월부터 도입하였다.¹⁷⁾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및 전직 지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2013년 말 현재 30,649명이 가입하였고, 이 중 17,908명이 가입유지 중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

82.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산재보험은 2013년 말 현재 적용사업장수 1,977,057개소, 근로자 15,449,228명이 적용을 받고 있다.^{xii)}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증가하는 등 종사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특히 재해발생위험성이 높은 택배·퀵서비스 사업의 경우 종사자 규모가 급증하여 이들에 대해서도 2012년 5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다.^{xiii)}
83. 또,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진폐장해인에게는 2010년 11월부터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직업성 암의 발암물질 14종 등 신규 유해요인 35종, 직업성암 12종 및 신규질병 3종을 2013년 7월부터 추가

17)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2. 1. 22. 시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는 고시하는 기준보수액에 따라 5종류가 있으며, 비자발적 폐업 시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기간 동안 기준 보수의 50%를 실업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하였다. 정부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요양, 보상 중심에서 재활복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9-2011년 2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완료하고,¹⁸⁾ 2012-2014년 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

84.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었고 2013년 현재 20,745천명 가입,^{xliii)} 가입자소득 9% 납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비의 4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가입자 중 농어민과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¹⁹⁾ 국민연금은 2013년 말 기준 427조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2008년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평균소득의 50%였으나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하, 2014년 현재에는 47%이다.²⁰⁾
85. 국민연금은 2012년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하였고, 2014년 현재,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나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면서 국민연금 자격이 상실된 전업주부 등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격상실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2015년 내 국회에서 관련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2016년부터 전업주부 등 463만 명이 추가로 노후에 국민연금 급여혜택을 받기 쉬워진다.
86. 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18) 2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 계획 추진 과제

부문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재활사업 인프라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단계별 재활서비스 지원 · 산재환자 심리재활 · 산재의료전달체계 구축 · 재활보조기 효율적 공급 · 합병증 등 예방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직복귀지원 · 직업훈련지원 · 창업점포지원 · 취업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역량강화 · 재활스포츠지원 · 생활안정지원 · 산재장해인 생활보호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사업 법령에 규정 · 재활상담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 · 재활사업 전달체계 개선 · 산재의료원 재활 전문화 및 특화 · 재활사업 평가체계 구축

19) 농어민과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지원 대상은 2014년 기준 총 108만여명, 지원금액은 약 5,897억원이다.

20) 2013년 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344만명, 월평균 연금수급액은 47만원이며,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85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혼인기간 동안 기여부분을 인정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분할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 관련법을 개정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수급권을 강화하였다.²¹⁾

장애인 소득보장

87.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고,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제도로써 저소득 중증·중복 장애인에게 생계보조가 이루어졌으나 2010년 7월부터는 종전의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비기여 장애인연금을 도입함으로써 저소득중증장애인에게 공적소득보장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는 재정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기존 장애수당 및 현행 경증 장애수당을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상승분, 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매년 법에 따라 인상, 실질적 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추후에는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추진 중에 있고, 기초급여를 2배 이상 인상하고, 대상범위를 소득하위 63%수준에서 70%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

88. 2011년 9월 이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국내체류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 10월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난민인정자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자에게도 수급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2013년 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주거급여, 자활급여, 의료금

21)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와 이혼하여야 하며,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본인이 60세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하며, 부부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따른 분할 비율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약 3,000명에 이른다.

제10조 가족에 대한 보호

보육지원

89. 2013년부터 5세 이하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내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보육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양질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확대하였고, 특히 영유가 지원 취약지역인 농어촌 지역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립을 지원하였다.^{xliv} 그간 양적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정부 보육정책이 추진되었으나 향후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맞춤형 보육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에 힘쓸 계획이다.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

90.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0년 「장애인연금법」 제정, 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²²⁾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²³⁾ 2012년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보고기간 동안 장애인이 사회에서 자립적이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91. 장애인에 대해서는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

22) 동 법에 따라 장애인은 활동보조 외에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은 2011년 1급 장애인에서 2013년 1월부터 1급 또는 2급 장애인까지 확대하였으며, 2015년도부터 장애 등급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활동보조서비스 급여액(서비스이용량)도 단계적으로 인상하였다. 활동보조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1등급 수급자의 경우, 2012년까지 매월 886천원(103시간)의 급여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13년에는 매월 101만원(118시간)까지 확대되었고, 독거, 취업·취학여부, 가구여건 등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로 제공하는 급여액도 2012년에 그 사유에 따라 매월 86~684천원(10~80시간)을 제공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매월 86천원~2,341천원(10~273시간)까지 대폭 확대하여 수급자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였다.

23) 장애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권 및 복지권을 보장하고 장애아동 무상의무교육, 무상아동양육서비스, 보편적 건강보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을 시행하고 있고, 소득지원으로는 장애인연금지급,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시행, 주거지원으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 부여, 의료지원으로는 국립재활원 확대개원, 의료비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가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으로는 교통요금 감면 및 무료승차, 전화요금 감면, 차량 등록세 등 면제, 대학입학 특례 등이 있다.

모성 보호

92. 임신·출산 여성의 보호를 위하여 출산전후휴가가 90일 보장되며, 최초 60일은 유급 휴가이다. 무급30일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월135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고,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모든 남녀근로자는 만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xliv)} 다태아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가 120일로 확대되어 2014년 7월부터 적용된다.

아동 보호 및 지원

93. 연소자의 근로는 헌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되고 있음은 제3차 보고서 제248항 내지 제250항과 같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함에 따라 연소자 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운영, 연소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xlvi)}

노인에 대한 보편적 최소연금 등 정책

94. **권고 제23항** 관련,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부터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된 후 같은 해 7월부터는 65세 이상에게 매월 월 1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였다. 연금액은 대상자의 재산, 근로 및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뒤 기준에 따라 월별 소득인정액을 산출, 수급대상자를 결정하였다. 이후 노인에게 보편적인 최소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5월 제정·7월부터 시행

한 「기초연금법」에 따라 만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이 금액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산정된다. 무연금자는 월 20만원,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월연금액에 따라 10만원~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금액은 물가상승분과 연동된다.

이민자의 가족결합

95.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족재결합을 위한 체류자격은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자격이 있는데, 거주자격은 국민의 미성년 자녀 또는 영주(F-5)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고, 동반자격은 특정한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방문동거자격은 거주 및 동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다.^{xlviii}
96.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자녀양육 지원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2011년 7월 부터 결혼이민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등의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최장 4년10개월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2011년 3월부터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 대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2년 체류 후에는 영주 자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적 변경이 없이도 국내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도 가족재결합은 보장되고 있다.

성폭력

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은 수차례 개정되었다.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분리되었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범정형을 상향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감경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며,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공개하도록 하였다.
98. 2011년 11월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유형화하여 처벌을 강화하

고,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한 강간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어 2013년 6월에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유사강간죄신설,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범위확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규정 적용 배제 범위 확대, 법정형 상향, 신상공개범위 확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제도 적용 범위 확대, 아동 및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등이 이루어졌다.^{xlvi})

99. 2012년 3월에 도입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 따라, 피해자들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조력을 받게 되었다. 이어 2013년에는 그 지원 대상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로 전면 확대되었고, 2013년 7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만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⁴⁾ 2014년 9월부터는 지원대상이 이동학대 범죄피해자에까지 확대된다.

가정폭력

100. **권고 제24항** 관련, 정부는 2013년 6월 8개 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주요 내용은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초기 대응 및 처벌강화, 피해자 및 가족보호 확대를 통해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 2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기관을 기존 각급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로 확대하였고, 가정폭력사건 신고 시 경찰출동 의무화, 경찰관의 현장출입 및 조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2013년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16,785건으로 전년(8,762건) 대비 91% 증가, 가정폭력 재범률은 11.8%로 전년(32.2%) 대비 대폭 감소하였다.^{xlvi})
101.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족보호시설을 늘리고,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실시·일상 의료비, 직업훈련비 지원 등

24)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원스톱 지원센터 5곳, 법률구조공단 지부 10곳에 배치되었고, 2014년 4월 현재 13,810명의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특히 이주여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이주여성보호시설을 27개소로 확대하였다.

102. 2013년부터 전국 17개 경찰교육센터에 '가정폭력대응 실무과정'을 개설하는 등 현장출동 경찰관 대상 가정폭력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였고, 경찰교육원에는 '가정폭력 강사 양성과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현장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정폭력 사건 처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특히 사건처리 절차와 과정에 관한 교육에 가장 필요하다는 지적이 확인됨에 따라 마련된 프로그램으로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협조하여 지역상담소와 사례 공유 등 전문적이며 현실적 사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처리절차에 관한 '가정폭력사건처리 절차도', '가정폭력현장대응매뉴얼'을 제작·배부하는 등 현장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였다.¹⁾ 검찰 및 검찰수사관에 대해서는 수사전문가 양성을 위해 '여성아동수사전문가', '여성아동학대범죄수사실무', '보호관찰사범별 지도감독' 등 전문 과정을 통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103.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이 강화됨에 따라 2013년부터 경찰의 112 범죄신고센터에서 가정폭력 코드가 부여되었고, 이에 따른 신고사건은 2013년 160,272건, 2014년 10월 현재 129,810건이다.¹⁾

인신매매

104. 권고 제25항 인신매매 근절과 관련, 「형법」을 개정, 인신매매죄를 신설하고 기존의 약취·유인죄를 개정하는 등 「UN 초국가범죄협약 부속 인신매매의정서」 비준 및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를 완료하였다. 즉, 보편적 관할권 규정(형법 제296조의2)을 신설하고, 노동력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 등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상기 의정서 가입에 대한 비준 동의서를 2014년 7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105. 인신매매죄 신설 등을 포함하는 「형법」 개정에 따라 법무부 법무연수원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성폭력, 성매매 사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수강할 수 있도록 사이

- 비교육 4개 과정을 운영하여 2013년 한해 검사, 수사관 등 총 488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lii)}
106. 기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4년 개정되어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에 재유입되지 않고 직업훈련이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 자들을 위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을 신설하였고, 공공기관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시설 또한 운영하면서 숙식, 상담, 의료, 법률,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간 입소가 가능하나, 수사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때에는 그 기간동안 입소기간의 연장과 자활지원센터 일자리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E-6비자 발급 모니터링 강화

107.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예술홍행비자 입국 외국인 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2014년 3월부터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08.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 2013년 개도국 내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ODA사업을 추진 중이며 캄보디아 정부, 현지 민간단체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문맹률이 높고 국경이동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한 이주와 성착취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국제공조를 위한 성착취목적의 인신매매 대응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단체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초국가적 조직범죄 척결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학교 성교육 및 미혼모 지원

109. 위원회의 권고 제31항 관련,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발달 특성에 맞는 학교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들이 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성교육 자료 개발, 교사 전문성 강화, 성에 대한 가치관이 학교교육과정 전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11년 이후 학교성교육의 내용에 청소년기의 미혼모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였

- 으며, 성과 생식, 피임법의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liii)}
110. 양육, 생계유지,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중 13%만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liv)} 2013년부터 아동양육비는 월 7만원으로 인상되었고, 5세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에게는 추가 월 5만원, 중·고생에게는 연 2회, 월 5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 급여를 신설, 추가 지원하며, 생활거주형 임대주택 지원 또한 확대해갈 계획이다. 2014년부터는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위하여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이행받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111. 또한 미혼모 발생의 다수를 차지하는 24세 미만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펼치면서, 2010년부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을 실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철폐하기 위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고교 학비, 자립지원수당 등의 급여 지원, 심리·정서상담, 출산 및 양육용품 지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을 통한 보호 등을 제공한다. 사업 초기에는 미혼모가 노출을 꺼려 수혜대상 범위가 협소하였으나, 홈페이지운영, 리플렛 및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인식개선 홍보노력을 계속하여 사업초기 대비 수혜대상은 약 60% 가까이 증가하였다.^{lv)}

제11조 생활조건의 개선

빈곤대책

112. **권고 제26항**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정책적인 빈곤선인 동시에 공공부조의 기준액이 된다. 산정 방식은 전물량 방식으로,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이다.^{lvi)}
113.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있어 소극적 보호 중심에서 적극적 탈빈곤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장애인연금 도입(2010년), 잠재빈곤층

발굴 및 지원(2011년), 기초연금(2014년) 도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빈곤감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근로와 연계한 복지에 방점을 두어, 매칭펀드(2011년), 수급자의 근로장려금 지급(2014년) 등 저소득층의 탈빈곤 및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매3년마다 빈곤실태 조사를 통해 빈곤계층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였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빈곤층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155만명, 차상위계층 185만명이며, 1~2인 가구가 전체 빈곤층의 약 78.4%~80%이상을 차지하며,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여성가구의 비율이 높았다.^{lvii)}

노숙자 문제 해결

114. 권고 제27항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12년 6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노숙인 쉼터와 부랑인복지시설로 구분되었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입소자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숙인 자활, 재활, 요양시설로 개편하였고, 노숙인 등의 다양한 욕구별로 필요한 주거, 고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노숙인 입소자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숙인전문시설에 입소하여 자활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5. 복지시설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숙인에 대해 임시주거비를 보조하여 지역사회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 등이 포함된 현장대응팀(Assertive Community Treatment)이 만성 중증의 알코올중독·정신질환·결핵 노숙인에 대한 상담 및 진단을 통해 이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도록 병원입원, 시설 연계, 임시주거비 지원 등을 통하여 응급 조치가 필요한 상태의 노숙인이 거리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lviii)}
116. 노숙자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서비스 중심의 정책 추진에 따라 노숙 위기집단

에 대한 예방지원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고용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재정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민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실시 중으로 향후 주거 취약 계층인 노숙인에게 독립 주거를 제공하여 탈노숙 및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노숙인의 실질적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식량권

117. 2007년부터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11년에는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국민의 식생활, 질병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식생활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현재 국민의 체위 및 식사 섭취 수준을 반영한 2015 한국인 영양소 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118.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취약인구에 대해 정기적인 영양교육과 특정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2008년부터 전국대상으로 실시하여 2013년 기준, 전국 252개 보건소에서 시행 중이다.^{lix)}

식수권

119. 먹는 물 오염사고 조기확인 후 취수원 보호, 오염물질 확산방지 등 대응을 위한 오염보시시스템을 전국 69개소에서 운영 중이며,²⁵⁾ 도시와 농촌의 상수도 보급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6)lx)}

주거권

120. 한국의 주택보급률 현황 등은 제3차 보고서 제288항 내지 291항을 참고할 것. 2013년에 주택보급률은 103.0%를 달성하였고,^{lxi)} 1인당 주거면적도 증가하여 2006년 26.2㎡에서 2013년 31.7㎡로 증가하였고, 주거기반이 양호한 아파트 비중이

25) 오염측정항목은 수은, pH, DO, EC, TOC의 기본항목 5종과, TN, TP, NH3-N, NO3-N, PO4-P, 생물감시장치, 페놀, 클로로필-a, 탁도, VOCs 9종, 중금속 4종 등 22개종이다.

26) 도시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99.6%이나, 농어촌지역은 62.2%에 불과함

2010년 58.4%이고 과거 5년간('06.~'10.) 주택건설물량 중 약 79.8%가 아파트 형태로 건설되고 있어 아파트 비중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lxii)}

121. 정부는 공공주거 확대 정책을 지속추진하면서, 인구·가구구조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 도시공간 이용 방식 변화 등 주택 정책의 환경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을 꾀하고 있다.
122. 정부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연 11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공급 수단을 다양화하고, 도시외곽보다는 도심내 공급을 활성화하며, 영구임대주택 등 소득1분위 대상의 임대주택은 약 연 5만호, 국민임대주택 등 소득1~4분위 대상 임대주택은 약 연 3.8만호를 공급 중이다.²⁷⁾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여유자금이 서민용 임대주택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혜택을 확대하고 있고, 주거급여제도를 확대·강화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지원을 실질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있다.^{lxiii)} 주거급여 지원은 개편 후 지급대상이 2013년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 평균금액은 2013년 약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될 계획이며, 15만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2014년 현재 소득 1~5분위 무주택가구(520만 가구) 중 60.2%(313만 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2022년까지 90%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혜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23. 최종건해 제28항에서 위원회는 정부내 전담창구 설립 권고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5년 주거복지본부 내 주거복지지원팀을 신설하였고, 2014년에는 주거급여 업무를 복지부에서 주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여 주거복지기획과 내에 주거급여팀을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기획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도심내 최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사업을 실시하면서,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수준이 갑자기 열악해진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이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시원·여인숙 거주자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부터 주거불안정 저소득층에게 기존 주거급여보다 지급대상을

27) 공공임대주택 준공 계획 (단위 : 만호)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
공공임대주택	7.7	9.0	11.0	11.0	11.0	연 11.0

확대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주택조사를 강화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주거복지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주거와 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복지정책적 수단을 연계하여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주거복지 전담조직 설치를 유도하고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교육하는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124. 최종견해 제28항 권고의 이행 관련,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7년 6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이전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 후 주거지원계획을 추진하였고,²⁸⁾ 2011년 7월에는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을 마련, 노숙인 쉼터·부랑인 시설 거주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lxiv)}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비주택가구 현황을 조사하여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이들을 고용촉진 프로그램의 우선 수혜대상으로 선정하여 취업알선을 지원하며, 주거지원 대상자 특성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종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25. 주거가 취약한 청년층, 특히 학업 때문에 비연고지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기숙사 부족 등으로 인해 인근 원룸형 주택을 고가로 임차하여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을 겪고 있었고,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을 확대하여 2011년부터 대학생들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하고,^{lxv)} 2012년부터는 사립대학이 기숙사를 확충하는 경우 사업비의 90%까지 저리의 공공기금을 융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lxvi)}
126. 장애인, 노인 등 주거 약자의 경우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아 이들을 위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였다.^{lxvii)} 이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2년 제정하여 보다 제도적으로 이들에 대한 주거안정정책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한편 사회취약 아동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8) 2007년 수요조사 시 총 5,130가구가 이주를 희망하여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5,173호에 대하여 '07~'12년까지 매입·전세임대 등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였으나 '11.7월 대상자 확대로 공급계획이 변경되었다.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였는데, 지원대상은 소년소녀 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의 아동·청소년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및 무주택자이다.^{lxviii)}

강제퇴거

127. 위원회의 권고 제29항 관련, 정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합 설립 인가 시에는 각각 과반수 및 3/4이상의 주민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일출 전과 일몰 후, 호우나 대설·태풍·한파 등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어 「기상법」에 따른 특보가 발표된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에는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128. 또한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그 밖의 보상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철거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설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129.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점유를 탈취하는 제도로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되므로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작위의무에 해당하거나 작위의무라 하더라도 대체성이 없는 인도나 퇴거의무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사업지구 내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퇴거요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야만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제12조 건강권

의료보험

130. **권고 제30항 관련**,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62.5%(2012년)이며, 국민의료비 중 공공 지출 비율도 54.5%(2011년)로 다소 낮은 수준이나,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비급여항목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lxix)}

예방프로그램

131. 2010년 수립된 'Health Plan 2020'계획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금연·절주·운동·영양 등 건강생활실천 확산,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및 건강환경 조성의 4대 분야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132.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담배광고 제한 등 금연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감시대상 감염병의 국가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을 충실이 이행하였고 2009년부터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시범사업을 2013년 말 전국 19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도 흡연·음주 등 건강위해요인을 억제하고 건강증진사업 등 예방적 보건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동 및 모성보건

133.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제3차 국가보고서 제323항 내지 제327항을 참고하라. 2011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임신부에 대해서는 주산기 관리 강화로 모성 및 태아의 건강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하고, 영유아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모든 임신 여성에게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하여 산전 관리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lxx)} 이에 따라 2012년 모성사망비는 전년 대비

42.2% 감소하였다.^{lxxi)}

134. 임신부의 조산·유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고, 빈혈 등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영유아·수유부에게 전문가 처방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식생활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모든 출생아 대상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2006년부터 6종으로 확대되었으며 2009년부터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난청 조기진단사업을 실시하였다.^{lxxii)}

제13조 교육권 및 제14조 무상초등교육

교육의 목적 및 무상초등교육

135. 대한민국의 교육이 목적은 최초보고서 제502항-503항에 상술되어 있으며, 초등교육 무상의무화는 최초보고서 제449항-제451항에서 설명하였듯이 완전히 실현되었다.
136. 규약 제13조 제1항의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달성될 수 있도록, 2012. 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하여 총론 및 9개 교과교육과정에 ‘인격존중, 관용의 정신 배양, 교육을 통한 사회 참여’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높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및 공교육 강화와 저소득층 재정지원(권고33항)

137. 사교육 경감을 위해 학교교육에서 인성·실습·체험교육을 강화, 수준별 이동수업 및 성취평가제 확대, 자유학기제 도입 등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4. 2.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없이 학업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료 뿐만 아니라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2013년 한해 총1조760억원을 지원하였다.

경쟁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 대책(권고34항)

138. 권고 제34항 관련, 교육부는 학원의 교습시간이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2시 후에는 학원교습을 할 수 없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고 하고 있다. 교육정책 수립, 학교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국가단위의 평가는 필요하며,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중3학년, 고2학년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학교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학력부진학생 밀집 학교와 학생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하여 도농간 학력격차가 감소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²⁹⁾

139. 또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하여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사립대안학교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대안교육담당자 연수나 콘텐츠 개발, 전문가 포럼 등을 지원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 중등과정

140. 고교 직업교육은 학력이나 학벌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기능역량강화, 취업지도 강화 등 2008년부터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고교 직업교육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졸업 후 선취업 및 기술명장으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마이스터고를 2010년부터 육성하고 있으며,^{lxxiii)} 성장동력산업 분야 및 구조적 인력부족 분야에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소관 부처가 해당 분야 특성화고를 육성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lxxiv)} 특성화고 학생들은 특히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lxxv)}

고등교육: 대학등록금 경감대책

141. 정부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 운영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또한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정해지도록, 「고

29) 기초학력미달학생의 비율은 2008년 7.2%에서 2010년 3.7%, 2013년 3.4%가 되었고, 도·농간 학력격차(기초미달비율)는 2008년 3.3%에서 2013년 0.3%로 감소하였다.

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10년부터 등록금 인상을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였다.³⁰⁾

142.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으로 통합된 이후, 예산 규모 및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되었고, 2014년에는 34,575억원, 총 120만명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 정부재원 장학금 3조 7천억원, 대학 자체 노력 3조 1천억원을 통해 2011년 등록금 총액이었던 14조 원 대비 부담경감 효과는 48%수준에 이른다.^{lxxvi)} 또한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금리는 2.9%로 5년 평균물가상승율인 3.22%에 미치지 않고, 2010년부터는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였다.^{lxxvii)}

평생교육

143. 평생교육에 관해서는 제2차 보고서 제351항-361항, 제3차 보고서 제387항-390항을 참조한다.
144. 한국은 성인문해율이 99%에 달하지만, 기초문해력이 부족한 저학력 성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학령기에 기초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들은 대부분 전쟁, 가난 등 이유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50대 이상 성인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량 많다.^{lxxviii)}

소수자 및 소수아동교육

145. 국제결혼가정의 학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이중언어교육을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고,³¹⁾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활용하여 대학생이 멘토로서 기초학습등

30) 등록금인상 상한제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등록금 인상은 불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 총 수의 3할이상이 학생위원이 되도록 하였고,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책정한다.

31) 언어는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등을 학습할 수 있으며, 이들 국가 출신의 378명이 이 언어를 교육하고 있다(2013년 12월 현재).

학력증진을 돕는 정책, 수학·과학, 언어, 리더십, 예체능 분야의 우수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또한 도입하였다.

146. 부모가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함에 따른 중도입국학생 등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학급을 중심으로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³²⁾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제고, 반편견·반차별교육, 타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중점학교를 운영하며, 학교 부적응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는 학력인정 대안학교를 지원한다.^{lxxix)}
147. 국제결혼 가정 등의 자녀 역량 개발 및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해 2009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언어영재교실 사업을 추진, 2011년 전국단위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일정 자격을 지닌 결혼이민자를 이중언어 강사로 양성하고, 국제결혼가정 등의 자녀(만3세~초등학교 재학생)를 주요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와 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중언어 능력의 효과적 향상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소통하는 환경의 형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 사업은 2014년 하반기부터는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으로 전환되어 시범사업을 거쳐(6개 센터) 2015년에는 전국 확대 실시예정이다.

장애교육

148.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07.5.25)」 제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2012년 기준 1,520학급을 증설하고 특수교육대상 순회교육을 받은 학생도 6,313명이다. 또한 장애인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특별전형제도’라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대학에 입학한 장애대학생은 2010년 88개교 656명에서 2013년 122개교 834명으로 증가하였다. 참고로, 2013년 기준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은 총 337개교 8,012명이다. 아울러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매년 신입생 모집 시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32) 외국인근로자나 난민 등 소수 학생들이 공교육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문화’특별학급 설치근거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2013. 10. 개정하였다.

교육에서 남녀평등

149. 한국은 교육기회에 있어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등교육에서 대학진학률까지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lxxx)} 대학진학률은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높다.³³⁾

제15조 문화적 생활에 관한 권리

문화소외계층·지역 지원

150.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2011년 「방송법」을 개정, 장애인방송의 무제공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자막방송과 화면해설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애인용 방송수신기를 보급하고 있다.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등장하고, 미디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이 약화될 우려를 낳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lxxxi)}
151. 사회양극화로 인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한 문화바우처 사업은 계속 수혜자가 확대되었고, 내용에 있어서도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장애인과 노인 등 여건에 따른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lxxxii)}
152.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주요 스포츠 지원 사업으로는 생활체육 지원 사업과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등이 있다. 1997년부터 노인, 아동시설 등에 운동용품과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보육원 등 소외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나눔 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유·청소년(만5~19세)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매월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관람이용권 등 다양한 체육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3) 대학진학률은 2009년 남성 81.6%, 여성 82%, 2010년 남성 77.6%, 여성 80.5%, 2011년 남성 70.2%, 여성 75%였으며, 2013년에는 여성의 진학률이 74.3%로서 남성진학률 68.6%보다 5.7%포인트 높다.

문화다양성

153. 한국은 2010년 3월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 가입을 위한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7월 1일부로 동협약은 한국에 대해 발효되어, 2014년 현재 최초 보고를 준비 중이며, 협약의 이행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54. 문화다양성정책은 소수 문화의 표출기회를 보장하고 소수 그룹의 문화생활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창조력 및 포용력을 향상시키고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비하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다리 사업은 이러한 정책의 대표 사업으로서, 이주민, 다문화가족,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문화적 표출기회를 제공하고, 주류문화와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다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도서나 영상 등 문화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등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5. 한편 정부는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민자가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역량을 키울 있도록 한국에 정착한 이민자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2009년 발족하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민원안내와 고충상담 등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 외국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2011년부터 ‘이민정책 이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012년부터는 외국인지원단체 종사자, 학생,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강좌를 개설하였다.
156. 또한 다양화된 미디어 환경도 문화다양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특히 2005년 인터넷 신문이 법제화되고,^{lxxxiii)}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국민의 미디어 이용시간 역시 증가하여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문화 생활 향유 환경이 마련되었다.^{lxxxiv)} 2012년에는 인터넷신문의 시장의 외형과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인터넷 자율규제기구인 사단법인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정식 출범하여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향상과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각 신문사 및 방송사는 신춘문예모집, 음악회개최, 미술전시 등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생활 참여 촉

진에 기여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정책

157. 2012년 생활고로 인한 예술인 사망사건을 계기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2012년 11월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들은 법률·심리 상담·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들은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 지급, 직업교육지원, 의료비 지원, 산재 보험료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14년 3월 동법을 개정, 출연료나 원고료 미지급, 불공정한 계약강요 등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와 관련된 소송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학교 및 전문교육

158. 정부는 어려서부터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을 통한 창의성과 인성, 소통과 공감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교육부와 협력하여 실시, 전국 학교에 국악, 연극 등 8개 예술분야 4,735명의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학생은 약 250만명에 이른다. 특히 문화소외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지역문화예술자원과 연계하여 전교생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예술꽃 씨앗학교’사업을 전국 43개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463개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관과 교정시설 재소자, 학교 밖 청소년, 군인, 산업단지 근로자 등 문화사회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또 전국 80여개의 지방문화예술회관과 700여개 문화기반 시설에서 지역주민 참여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점차 지역 중심의 풀뿌리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책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159. **권고 제35항** 관련,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창의적 예술가 양성을 위한 자율적 커리큘럼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교원을 채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율적 커리큘럼으로서 학제간 교육을 위한 예술교양학부를 2011년 설립하였고, 전공간 교육 협동과정을 운영하며, 타 대학교와 공동 교양학부 운영협약 체결 등 노력을 전

개하였고, 교수 채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교원임용규정 및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국제문화교류

160. 최초보고서 제583-588항, 제2차보고서 제450-456항 및 제3차보고서 제463-465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상호호혜의 이념 하에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문화교류 지원을 위한 문화협정은 2014년 현재 101개국과 체결되었으며, 그 중 38개국과 문화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lxxxv)}

과학기술

16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12년 전면 개정, 201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아 및 유전자 등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생명윤리 정책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하였다.³⁴⁾ 이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전에 기관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대상자 등의 인권과 안전을 고려하기 위하여 사전에 연구대상자 등의 자발적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유전자 검사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하여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과 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다.
162.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5년간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되는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지식재산의 관리 및 보호,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지원, 신산업 창출 촉진, 과학기술분야 직접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위한 세부 과제를 수립하고 있다.
163.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대학과,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상호보완하며, 정부는 특히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여 기초연구, 고위험연구, 미래성장분야, 공공수요 대응 분야, 중소기업관련 기술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정부는 연구

34)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개발지원에만 총6조 2,395억원을 투자하였다. 정부가 투자하는 전략기술에는 난치 병극복,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응, 식품안전 등 식량권 확보, 기후변화대응 및 생활공간 편의성 향상 등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과제 또한 포함되어 있다.

164. 과학기술의 국제교류에 관해서는 3차보고서 제466항-472항을 참조하라. ESCAP 지원 금액은 연간 450만 달러로 증대되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과학기술 ODA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과학기술허브 구축, 전략분야 국제공동연구활성화 등 국제적 과학기술교류에 관한 과제도 포함하였다.
165. 한국은 기후변화나 에너지 등 전 지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우주 항공, 해양 등 분야에서 대규모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과학ODA의 일환으로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발전모델을 개발하고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i) 소득그룹별 지원현황(순지출 기준, 백만불) (출처: OECD DAC통계)

2014년 10월 현재 DAC수원국 목록 기준

구분	2009	2010	2011	2012	
총 양자간 원조	581.10	900.61	989.52	1,183.17	
최빈국	161.14	333.29	346.89	417.04	
기타 저소득국	6.54	9.08	12.03	11.91	
하위중소득국	229.57	368.08	372.71	480.93	
상위중소득국	85.30	96.04	113.43	98.21	
소득미배분	98.55	94.12	144.46	175.08	MADCTs포함 (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

ii) 연도별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적

(단위: 건)

구분	2010	2011	2012	2013
모니터링	7,173	20,567	9,764	7,365
적발	218	519	322	248

iii) 최근 5년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 개)

구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계	1,908	2,401	2,954	14,792	20,372
중앙	72	71	129	1,270	1,569
지자체	1,820	2,314	2,810	13,203	18,444
교육청	16	16	15	319	359

※ '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후 주요사업 이외에 제·개정 법령 및 계획까지 확대 실시

iv) 연도별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관 및 규모

(단위 : 개)

구분	' 11회계연도		' 12회계연도		' 13회계연도		' 14회계연도	
	사업수 (기관)	금액	사업수 (기관)	금액	사업수 (기관)	금액	사업수 (기관)	금액
예산	245 (34)	10조1,748억원	254 (34)	11조2,720억원	275 (34)	13조3,067억원	339 (42)	23조 346억원
결산	241 (32)	10조296억원	254 (34)	11조426억원	279 (35)	-	-	-

v)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의 교육 수강 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유아	초등	중등	고등	기타청소년	부모
계	5,985,476	459,994	1,619,781	1,687,507	798,637	714,721	704,836
'09년	812,298	70,000	177,169	247,350	140,180	53,837	123,762
'10년	1,198,788	91,898	320,932	355,385	170,013	137,973	122,587
'11년	1,105,520	92,244	271,451	350,455	128,723	136,739	125,908
'12.년	1,318,423	93,267	407,559	347,585	151,613	178,617	139,782
'13.년	1,550,447	112,585	442,670	386,732	208,108	207,555	192,797

vi) 난민인정관련 통계

(1994. ~ 2013.12.31. 기준, 단위 : 명)

신청	심사결정 종료(4,653)				심사 중
	인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회	
6,643	377	177	2,935	1,164	1,990

※ 난민인정율 : 8.1%(인정자/심사결정종료자), 난민보호율 : 11.9%(인정자+인도적체류자/심사결정종료자)

vii)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행부)

('13. 1.1 기준, 단위 : 명)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결혼이민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국적미취득자			혼인귀화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81,295	45,348	235,947	147,591	20,887	126,704	83,929	4,264	79,665	49,775	20,197	29,578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1.4.4개정, '11.10.5시행)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도 다문화가족에 포함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국적별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행부)

('13.1.1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	기타
계	281,295 (100%)	100,524 (35.7)	67,944 (24.2)	52,323 (18.6)	15,256 (5.4)	12,338 (4.4)	5,684 (2.0)	3,186 (1.1)	2,975 (1.1)	21,065 (7.5)
국적미취득자	147,591 (52.5%)	27,893	35,016	39,004	9,334	11,732	4,523	2,388	2,604	15,097
국적취득자	133,704 (47.5%)	72,631	32,928	13,319	5,922	606	1,161	798	371	5,968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행부 2013)

('13.1.1 기준, 단위 : 명, %)

남녀 현황			연령별 현황				
계	남	여	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191,328	97,724	93,604	191,328	116,696	45,156	18,395	11,081
100%	51.1%	48.9%	100%	61.0%	23.6	9.6	5.8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혼인이혼통계, 통계청 2013)

('12.12.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총 혼인건수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326,104	329,087	327,073
국제결혼건수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29,762	28,326
국제결혼비율	13.5%	11.7%	10.9%	11.0%	10.8%	10.5%	9.0%	8.7%

viii)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실적

('13.12.31 기준, 단위 : 명(연인원))

년도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 교육	자조모임	상담	취창업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기타	계
2006년	39,297	29,171	8,988	6,731	10,090	925		95,202
2007년	143,029	68,538	24,404	21,804	20,151			277,926
2008년	311,555	49,285	25,479	27,818	83,620		118,045	615,802
2009년	395,091	178,399	10,041	19,720	75,630	28,561		707,442
2010년	593,967	274,499	48,525	27,771	137,173	49,242	103,493	1,234,670
2011년	746,541	424,955	80,809	34,616	181,272	55,051	97,999	1,621,243
2012년	773,190	497,091	79,835	58,958	178,509	68,750		1,656,333
2013년	766,992	506,607	105,293	52,835	170,246	82,234		1,684,207

ix) UNDP 정규재원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

(단위: 만불)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액수	300	300	500	500	500	550	650

'한-UNDP MDG 신탁기금'(2010년 설치)을 통한 지원중

연도	2010	2011	2012	2013
액수	390만불	579만불	565만불	550만불

x) 연도별 남녀 임금수준, 근속년수, 평균연령

구분		2012	2011	2010	2009
월급여 총액 (천원, %)	남	2,878	2,750	2,648	2,546
	여	1,958	1,862	1,772	1,693
	여/남	68.0	67.7	66.9	66.5
평균 근속년수 (년, %)	남	7.1	7.0	7.0	7.1
	여	4.4	4.3	4.4	4.4
	여/남	61.9	61.4	62.9	62.0
평균 연령(세)	남	41.0	40.8	40.3	40
	여	37.6	37.2	36.1	35.5

*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월급여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자료: 고용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9~2012)

여성 근로자 비율 및 여성 관리자 비율

구분	여성근로자비율(%)			여성관리자비율(%)		
	전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전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2013	36.04	33.61	36.46	17.02	11.55	17.96
2012	35.24	32.35	35.74	16.62	11.01	17.59
2011	34.87	31.19	35.56	16.09	10.53	17.13
2010	34.12	30.14	34.89	15.09	9.93	16.09

xi) 어린이집 현황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지원 아동수(명)	1,175,049	1,279,910	1,348,729	1,487,361	1,486,980
어린이집(개소)	35,550	38,021	39,842	42,527	43,770
보육교직원(명)	206,912	229,084	248,635	284,237	301,719
예산(국비, 백만원)	1,710,430	2,127,510	2,478,380	3,028,567	4,146,625

* 상기 통계에 가정양육수당, 유치원 등은 제외되어 있음

xii) 연도별 새일센터 취업실적

(2013. 12. 31일 기준, 단위 : 명)

연도	구인	구직 (a)	취업실적				취업률 (b/a)	
			취업(b)	상용 (70.4%)	계약 (23.1%)	일용 (29.6%)		창업 (1.7%)
2009	106,730	130,327	67,519	47,559 (70.4%)	-	19,960 (29.6%)	-	51.8%
2010	148,882	164,294	101,980	48,353 (47.4%)	23,559 (23.1%)	28,382 (27.8%)	1,686 (1.7%)	62.1%
2011	237,133	186,940	117,370	69,240 (59.0%)	20,493 (17.5%)	26,061 (22.2%)	1,576 (1.3%)	62.8%
2012	227,924	194,494	122,610	70,747 (57.7%)	23,851 (19.5%)	26,577 (21.7%)	1,435 (1.2%)	63.0%

연도	구인	구직 (a)	취업자 근로형태					취업률 (b/a)	
			취업 (b)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시간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시간제)		창업
2013	233,115	209,530	107,652	68,218 (63.4%)	5,616 (5.2%)	22,613 (21.0%)	10,143 (9.4%)	1,062 (1.0%)	51.4%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구 상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구 계약, 일용

* '13년 워크넷-e새일시스템 통합으로 '13년부터 취업자의 고용형태 현황 분류체계가 변경됨
(출처: 여성가족부 e새일시스템)

새일여성인턴 운영 실적

(2013. 12. 31일 기준, 단위 : 명)

연도	목표	새일여성인턴 연계현황				인턴종료 후 취업현황			
	인원(a)	연계(b)	종료	중도 탈락	연계율 (b/a)	종료(d)	취업(c)	미취업	취업률 (c/d)
2010	4,620	4,948	4,308	640	107.1%	4,308	3,952	356	91.7%
2011	3,300	4,262	3,518	744	129.2%	3,518	3,390	128	96.4%
2012	4,200	5,363	4,636	727	127.7%	4,636	4,414	222	95.2%
2013	5,040	6,146	5,363	783	121.9%	5,363	5,189	174	96.8%

* '10년 인턴은 최대 3개월까지 연계, '11년부터는 최대 6개월까지 연계

(출처: 여성가족부 e새일시스템)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운영 실적

(2013. 12. 31일 기준, 단위 : 명)

연도	과정	교육(a)	수료(b)	수료율(b/a)	취업(c)	취업률(c/b)
2010	393개	9,256	8,508	91.9%	4,640	54.5%
2011	309개	7,084	6,567	92.7%	3,899	59.4%
2012	410개	9,140	8,412	92.0%	5,143	61.1%
2013	680개	15,145	14,041	92.7%	-	-

* '13년부터 훈련 취업률은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자 수 기준으로 산출(최종 취업률 : '14.6월말 확정)
(출처: 여성가족부 e새일시스템)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운영 실적

(2013. 12. 31일 기준, 단위 : 명)

연도	가사 및 자녀양육(명)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건)					취업강화 및 고용유지 지원(건, 명)				
	계	가사 부담 완화(명)	자녀양육 부담완화(명)	계	협약 기업(건)	강의 지원(건)	환경 개선(건)	기타(건)	계	네트워킹 구축(명)	협의회 개최(건)	취창업 준비단(건)	기타(건)
2011	30,228	14,916	15,312	4,321	2,877	634	263	547	-	-	-	-	-
2012	21,703	11,604	10,099	6,179	3,164	736	228	2,051	1,149	1,109	40	-	-
2013	17,489	7,752	9,737	5,884	4,168	893	291	532	12,735	6,812	944	132	4,847

(출처: 여성가족부 e새일시스템)

xiii) 청년 고용률('08년~'13년)

(단위 : %)

연도	고용률					20-29세
	15-29세	(15-24세)	15-19세	20-24세	25-29세	
2008	41.6	(23.8)	5.9	45.5	68.5	59.1
2009	40.5	(22.9)	5.4	44.6	67.5	58.2
2010	40.3	(23.0)	6.1	44.3	68.2	58.3
2011	40.5	(23.1)	6.8	43.5	69.7	58.5
2012	40.4	(24.2)	7.0	44.5	69.2	58.1
2013	39.7	24.2	6.9	43.2	68.8	56.8

※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인구)×100

청년 실업률('08년~'13년)

(단위 : %)

연도	실업률					20-29세
	15-29세	(15-24세)	15-19세	20-24세	25-29세	
2008	7.2	(9.3)	10.2	9.2	6.0	7.0
2009	8.1	(9.9)	12.2	9.5	7.1	7.9
2010	8.0	(9.8)	11.9	9.5	7.0	7.8
2011	7.6	(9.6)	10.8	9.4	6.5	7.4
2012	7.5	(9.0)	8.8	9.0	6.6	7.5
2013	8.0	(9.3)	10.3	9.2	7.1	7.9

※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xiv)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

	참여자 수(명)		
	총 인원	취약계층	참여비율
2012년	620,881	466,916	75.2
2013년	612,268	447,089	73.0
2014년(목표)	652,179	456,525	70.0

xv) 내일배움카드제 주요 성과

구분	훈련과정(개)	훈련기관(개소)	훈련인원(명)	훈련기간(일)
2007	3,948	740	83,000	102
2011	21,632	3,267	187,000	63

내일배움카드제 연도별 실시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훈련인원(명)	87,181	246,589	232,125	185,381
지원금액(백만원)	57,023	213,268	268,018	231,617

내일배움카드제 연도별 취약계층 참여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3,995	12,655	25,402	41,400	50,671
기초생활수급자	0	773	9,373	17,039	19,471
결혼이민자	1	279	4,905	7,338	7,345
북한이탈주민	0	196	931	1,084	845
여성가장	2,076	9,846	6,327	9,053	11,922
건설일용근로자	0	0	80	287	212
영세자영업자	1,918	1,561	3,786	6,599	10,87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연도별 실시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고시직종(개)	78	103	102	109
훈련기관수(개소)	106	102	198	202
실시인원(명)	20,530	17,348	25,199	28,878
취업인원(명)	14,203	12,084	16,197	17,785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청년층 훈련 비율

구분	전체 실시인원	29세 이하 인원(비율)	34세 이하 인원(비율)
'11	25,199	16,198(64.3)	19,226(76.3)
'12	28,878	19,878(68.8)	23,332(80.8)
'13	38,070	25,492(67.0)	29,902(78.5)

xvi)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도	접수건수		처리내역						
	계(이월포함)	당해년도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3	12,805	11,479	11,509	1,009	195	1,433	687	4,022	4,163
2012	11,444	10,441	10,118	952	154	1,371	563	3,296	3,782
2011	10,848	9,461	9,845	894	125	1,732	538	3,095	3,461
2010	10,969	9,973	9,582	841	187	1,743	797	3,216	2,798
2009.11~ 2009.12	1,401	1,400	1,534	143	19	234	140	553	445

xvii) <재직자 훈련지원 연도별 실시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훈련인원(천명)	4,949	4,243	3,341	3,458	3,601
지원금액(억원)	5,597	4,669	3,704	3,871	4,235

xviii) <대·중소기업간 근로자훈련 참여율 격차>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300인 이하(%)	11.5	13.9	17.0	15.2	12.7	11.3
300인 이상(%)	53.3	45.5	57.2	47.8	37.6	36.7
격차(%p)	41.8	31.6	40.2	32.6	24.9	25.4

주 : HRD-net, 근로자훈련 참여인원(순인원) 기준

xix)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연도별 실시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운영기관(개소)	83	96	102	134	158	168
훈련인원(명)	281,058	230,573	230,982	251,895	271,673	223,186
참여중소기업(개소)	121,874	110,907	105,778	120,950	114,771	99,040
지원금액(백만원)	70,236	78,345	73,691	122,577	85,941	142,525
취업률(채용예정,%)	77.6	79.2	88.0	88.3	84.3	76.9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연도별 실시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훈련인원(명)	71,167	34,960	33,654	37,825	42,871
지원금액(백만원)	34,686	14,393	14,649	15,261	20,556

xx)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연도별 실시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부인원(명)	29,424	25,394	21,507	17,720	15,562
대부금액(백만원)	99,076	90,769	79,786	69,166	62,375

xxi)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연도별 실시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부인원(명)	9,650	6,231	4,163	7,115	9,714
대부금액(백만원)	25,294	15,270	9,891	13,807	19,000

<직업훈련생계비 유형별 대부 현황>

구분	전직실업자		비정규직	
	대부인원(명)	대부금액(백만원)	대부인원(명)	대부금액(백만원)
2010년	5,892	14,758	339	512
2011년	3,952	9,589	211	302
2012년	6,859	13,467	256	340
2013년	9,510	18,726	204	274

xxii) 연도별 최저임금액

(단위: 원, %)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저임금액 (인상율)	4,000 (6.1%)	4,110 (2.75%)	4,320 (5.1%)	4,580 (6.0%)	4,860 (6.1%)	5,210 (7.2%)

xxiii) 최저임금 관련 사업장 감독결과

(단위 : 개소, 건)

구분	감독 업체수	위반 업체수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조치내역 건수			
			계	6조	11조	기타	계	시정 조치	사법 처리	과태료
2013년	13,280	5,467	6,081	1,044	5,035	2	6,081	6,063	12	6
2012년	21,719	8,093	9,051	1,649	7,399	3	9,051	9,039	6	6
2011년	23,760	13,167	14,718	2,077	12,614	27	14,718	14,707	11	-
2010년	20,151	11,200	12,085	1,144	10,939	2	12,085	12,072	10	3

* 출처: 사업장감독 결과 전산입력 집계자료

* 위반사항: 최저임금 미만 지급(제6조), 주지의무 위반(제11조), 기타 - 임금에 관한 사항 미보고(제25조), 서류 미제출(제26조제2항) 등

xxiv) 육아휴직 사용(고용보험 급여 지급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연도	인원		급여 지급액	
		남성		남성
2009	35,400	502	139,724	1,503
2010	41,729	819	178,121	2,539
2011	58,130	1,402	276,261	5,761
2012	64,069	1,790	357,797	9,153
2013	69,616	2,293	420,248	11,691

xxv) 차별시정 접수 및 처리현황(초심 및 재심)

(단위 : 건수)

구분	전체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재심 (중앙노동위원회)						
		소계	인정	기각	각하	취하	조정	중재	소계	인정	기각	각하	취하	조정	중재
총계	512	437	80	46	75	147	87	2	75	33	19	14	9	0	0
2009	95	80	10	5	6	48	11	0	15	8	0	4	3	0	0
2010	152	131	12	19	53	26	19	2	21	12	7	2	0	0	0
2011	88	77	39	4	3	11	20	0	11	2	4	1	4	0	0
2012	78	65	5	6	10	27	17	0	13	2	7	4	0	0	0
2013	99	84	14	12	3	35	20	0	15	9	1	3	2	0	0

xxvi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추이(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상 시간당 임금〉

(단위: 원, %)

구분	시간당 임금총액 ¹⁾				시간당 정액급여 ²⁾			
	2009	2010	2011	2012	2009	2010	2011	2012
임금	7,785	8,236	9,372	10,437	7,586	8,067	9,177	10,212
정규직(=100%)	56.3	57.2	61.3	63.6	65.8	66.3	71.3	72.5

- 1) 시간당 임금총액 = (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총액의 1/12) / 총근로시간
 2) 시간당 정액급여 = 정액급여 / 소정근로시간

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감안한 비정규직 임금수준

연도	2009	2010	2011	201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¹⁾ (정규직=100%)	84.3%	87.4%	90.9%	91.6%

- 1) 상·연령·학력·근속년수·직종 등 인적 특성을 통제한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임금수준

'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구분	전환계획	전환실적
합계 (810개소)	30,904명	31,782명 (103%)
중앙부처 (47개소)	2,499명	3,677명 (147%)
자치단체 (246개소)	2,683명	2,756명 (103%)
공공기관 (302개소)	5,485명	5,726명 (104%)
지방공기업 (138개소)	929명	1,166명 (126%)
교육기관 (77개소)	19,308명	18,457명 (96%)

차별사례 시정지도 조치

연도	적발 사업장수	적발 건수	조치사항
2012	75개소	108건	1,334명에게 237,525만원 지급 지시
2013	113개소	131건	2,015명에게 143,977만원 지급 지시

xxvii) 근속기간별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 현황('14.2분기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결과) (단위: 명, %)

		계약 만료자					
				계약종료	정규직 전환	계속고용	기타(방침미정 등)
'14.1분기	근속 전체	51,272 (100.0)	30,940 (60.3)	10,078 (19.7)	10,231 (20.0)	23 (0.0)	
	1년 6개월 미만	36,376 (100.0)	24,642 (67.7)	5,147 (14.2)	6,587 (18.1)	0 (0.0)	
	1년 6개월 이상	14,896 (100.0)	6,298 (42.3)	4,930 (33.1)	3,644 (24.5)	23 (0.2)	
	1년6개월~2년미만	4,895 (100.0)	2,993 (61.2)	1,132 (23.1)	769 (15.7)	0 (0.0)	
	2년 이상	10,001 (100.0)	3,304 (33.0)	3,798 (38.0)	2,875 (28.7)	23 (0.2)	
2분기	근속 전체	26,327 (100.0)	20,277 (77.0)	3,138 (11.9)	2,910 (11.1)	2 (0.0)	
	1년 6개월 미만	21,811 (100.0)	17,856 (81.9)	1,617 (7.4)	2,337 (10.7)	0 (0.0)	
	1년 6개월 이상	4,516 (100.0)	2,421 (53.6)	1,520 (33.7)	573 (12.7)	2 (0.0)	
	1년6개월~2년미만	1,750 (100.0)	1,166 (66.6)	348 (19.9)	234 (13.4)	2 (0.1)	
	2년 이상	2,766 (100.0)	1,255 (45.4)	1,172 (42.4)	339 (12.3)	0 (0.0)	

주 1) 기간제법 적용자 중 분기별 마지막 월(3, 6, 9, 12월)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한 조치현황임
 2) () : 조치항목별 비율(조치현황별 인원/계약기간 만료자)
 3) 근속기간 전체 및 1년 6개월 미만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현황은 '14.1분기부터 조사('13년까지 근속기간 1년 6개월 이상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사항만 조사)

xxviii)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현황

년도	2013	2012	2011	2010	2009
건수	374	249	201	173	151

* 신고사건 처리절차: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 근로감독관이 직장내 성희롱 여부 조사 → 성희롱에 해당 하는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xxix) 성희롱 구제실적(2009.11.~2013.12.)

	인용			조사중 해결	기각	이송	각하	조사 중지	계
	권고	합의종결	조정						
2009.11~	1	4	-	3	3	-	22	-	33
2010	36	25	-	11	17	-	101	7	197
2011	15	31	1	10	29	-	121	4	211
2012	17	15	2	7	27	1	149	12	230
2013	9	23	2	5	40	-	159	7	245
계	78 (8.5%)	98 (10.7%)	5 (0.5%)	36 (3.9%)	116 (12.7%)	1 (0.1%)	552 (60.3%)	30 (3.3%)	916 (100%)

* 권고에는 징계권고 포함

xxx)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원 실적

(단위 : 명)

년도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3,692,174	687,086	963,041	768,713	652,321	621,013
기초교육(중간관리자)	241,512	31,294	73,876	71,570	52,865	11,907
지역특성화교육(근로자)	312,982	105,467	41,959	70,933	50,347	44,276
사내교육	1,519,949	259,499	506,771	288,580	238,014	227,085
이동안전교육	317,140	80,495	67,822	61,734	55,734	51,355
외국인근로자 교육	219,422	49,492	34,398	50,021	41,464	44,047
일반교육 등	1,081,169	160,839	238,215	225,875	213,897	242,343

xxxi) 사고성재해 기술지도사업 추진실적

(단위 : 개소, 회, 억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안전	참여기관	406	105	98	77	55	71
	사업장수	213,422	30,549	48,736	51,342	41,602	41,193
	지원금액	388.02	76.9	75.8	105.78	64.77	64.77
위험 기계	참여기관	138	40	51	28	8	11
	사업장수	42,880	10,439	10,000	10,941	6,500	5,000
	지원금액	53.67	12.21	12.86	12.86	7.87	7.87
건설	참여기관	161	54	32	24	25	26
	사업장수	120,400 (240,000)	10,400	25,000	25,000	30,000 (120,000)	30,000 (120,000)
	지원금액	239.34	12.44	37.1	37.1	76.35	76.35
서비스	참여기관	33	-	6	6	9	12
	사업장수	80,000 (1,050,000)	-	250,000	250,000	340,000 (40,000)	290,000 (40,000)
	지원금액	188.6	-	29	30.5	67.7	61.4

* 건설업 240,000개소, 서비스분야 1,050,000개소는 감성지원(재해예방대책 매뉴얼, 리플렛 등 배부 및 홍보 등) 사업 실적임

xxxii) 조선업 재해율

연도	사업장 수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사망자 수	사망만인율
2013	6,774	186,226	1,598	0.86	37	1.99
2012	6,633	180,661	1,760	0.97	51	2.82
2011	6,196	168,114	1,820	1.08	44	2.62
2010	4,938	177,433	2,122	1.20	45	2.54

xxxiii) 연도별 안전인증 실적

(단위: 건수)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46,090	57,356	71,386	75,784	84,120
프레스	279	529	832	804	1,099
전단기	39	51	106	83	138
절곡기	-	-	-	-	98
크레인	23,750	25,440	28,416	28,961	29,380
리프트	6,298	5,522	5,194	6,032	8,099
압력용기	14,967	23,293	33,705	35,638	37,631
롤러기	14	4	21	34	31
사출성형기	450	824	448	984	1,129
고소작업대	293	1,694	2,664	3,248	4,281
곤돌라	-	-	-	-	2,098
기계톱	-	-	-	-	136

연도별 안전검사 실적

(단위: 건수)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178,348	177,493	209,697	203,262	249,499
프레스	33,029	26,949	33,958	28,760	34,691
전단기	4,150	3,676	3,996	3,421	4,169
크레인	76,716	51,610	79,643	59,561	86,908
리프트	5,013	13,135	6,426	9,195	9,396
압력용기	43,994	51,557	64,394	73,206	91,450
곤돌라	4,173	901	4,095	902	4,119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국소배기장치	2,175	2,151	1,935	1,752	1,426
원심기	712	746	797	815	1,053
화학설비	143	401	189	265	122
건조설비	1,364	1,101	1,528	1,123	1,597
틀러기	1,347	865	1,359	989	1,440

xxxiv)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발생현황

(단위 :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재해자수	97,821	98,645	93,292	92,256	91,824
	사망자수	1,916	1,931	1,860	1,864	1,929
외국인	재해자수	5,233	5,599	6,509	6,404	5,586
	사망자수	98	92	103	106	88

xxxv)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사건 처리 현황

(단위: 개소, 건, 명, 백만원)

연도별	구분	신 고			처 리		
		계	신규	이월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2009	사업장수	4,061	3,919	158	3,923	2,505	1,501
	건수	5,234	5,036	198	5,041	3,025	2,016
	근로자수	9,452	9,146	306	9,108	5,458	3,650
	체불금액	23,685	22,879	806	22,807	13,728	9,078
2010	사업장수	3,829	3,697	162	3,682	2,422	1,343
	건수	4,925	4,732	193	4,719	2,920	1,799
	근로자수	9,145	8,801	344	8,768	5,287	3,481
	체불금액	21,747	20,868	879	20,919	11,594	9,325
2011	사업장수	3,562	3,418	168	3,419	2,391	1,085
	건수	4,452	4,246	206	4,232	2,818	1,414
	근로자수	8,759	8,382	377	8,333	5,403	2,930
	체불금액	21,190	20,363	827	20,119	12,321	7,798
2012	사업장수	3,685	3,546	161	3,541	2,232	1,381
	건수	4,738	4,519	219	4,551	2,657	1,894
	근로자수	9,378	8,953	425	8,976	4,873	4,103
	체불금액	23,998	22,928	1,070	22,844	11,314	11,530

연도별	구분	신 고			처 리		
		계	신규	이월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2013	사업장수	3,940	3,800	168	3,816	2,358	1,526
	건수	5,047	4,860	187	4,867	2,913	1,954
	근로자수	9,625	9,223	402	9,276	4,877	4,399
	체불금액	28,100	26,946	1,154	27,204	12,480	14,725

* '13.12월 노사누리시스템 통계

xxxvi) 연도별 노동조합 조직현황

구분 년도	노동조합수		조 합 원 수 (명)			조직대상 근로자(천명)	조직률 (%)
	연합단체	단위노조	계	남	여		
2009	53	4,689	1,640,334	1,285,965	354,369	16,196	10.1
2010	54	4,420	1,643,113	1,272,274	370,839	16,804	9.8
2011	64	5,120	1,719,922	1,328,055	391,867	17,090	10.1
2012	66	5177	1,781,337	1,358,699	422,638	17,338	10.3

xxxvii)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E나라지표 활용 www.index.go.kr)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급자 수(천명)	1,569	1,550	1,469	1,394	1,351

xxxviii)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급자 수(천명)	1,677	1,674	1,609	1,507	1,458

※ 출처 : 의료급여통계 제2편-제1표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경상보조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상보조(백만원)	3,509,884	3,499,540	3,671,814	3,981,229	4,393,447

xxxix) 긴급복지지원 실적

(단위 : 가구, 백만원)

구 분	지원 가구	지원 금액
2010	45,278	50,473
2011	42,057	45,743
2012	38,857	34,675
2013	83,205	53,626

xl) 연도별 지원근로자수 추이, 당월기준

(단위: 개소,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3월말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	262,618	530,771	304,810	611,726	305,271	635,640
국민연금	333,315	671,461	406,563	783,639	410,762	814,637

xli) 산재보험 적용 확대 현황

연도	적용 사업장수	근로자수 (천명)	적용 확대 업종 및 규모
2010	1,608,361	14,199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및 연면적 200㎡이하의 대수선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2009.1.1. 시행)
2011	1,738,196	14,362	·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파견된 해외근로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2012	1,825,296	15,54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기사)적용확대 · 중소기업사업주(퀵서비스업자, 비전속퀵서비스기사)적용확대(2012.5.1 시행) ·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확대(2012.11.18)
2013	1,977,057	15,449	

xlii) '12.5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개소, %)

구분	전체	'08.7월부터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5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계 (4개직종)	보험 설계사	콘크리트 믹스트럭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소계 (2개직종)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록 종사자	442,925	428,428	334,444	11,260	58,574	24,150	14,497	11,937	2,560
적용제외 종사자	399,591	391,263	306,419	7,848	53,837	23,159	8,328	7,208	1,120
	90.22	91.33	91.62	69.70	91.91	95.90	57.45	60.38	43.75
실 적용 종사자	43,334	37,165	28,025	3,412	4,737	991	6,169	4,729	1,440
	9.78	8.67	8.38	30.30	8.09	4.10	42.55	39.62	56.25
가입 사업장수	7,135	4,586	2,445	874	862	405	2,549	2,132	417

* 택배·퀵기사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42.55%로 기존 4개 직종의 적용률(8.67%)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xliv) 국민연금 가입자 수 : 2,074만명('13년 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10	'11	'12	'13
총가입자		19,228,875	19,885,911	20,329,060	20,744,780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1,031,358	1,103,570	1,196,427	1,290,557
	가입자	10,414,780	10,976,501	11,464,198	11,935,759
지역가입자 등		8,814,095	8,909,410	8,864,862	8,809,021

출처 : 국민연금공단, 「월별 통계자료('13.12월)」

국민연금 수급자 수 : 363만명('13년 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13년 12월 ¹⁾		총계 ²⁾ ('88년 ~ '13년)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계		3,633,770	13,112,752	13,034,493	91,131,364
연금	소계	3,440,693	12,361,973	3,811,144	74,940,654
	노령	2,840,660	10,705,594	3,101,435	61,983,854
	장애	75,041	326,168	133,548	3,163,431
	유족	524,992	1,330,211	576,161	9,793,369
일시금	소계	193,077	750,779	9,223,349	16,190,710
	장애	2,993	38,737	62,538	513,689
	반환	179,440	679,145	9,047,721	15,413,132
	사망	10,644	32,897	113,090	263,889

주 1) 수급자이었던 자(소멸자)를 포함한 2013년 12월 수급자 수 및 급여 지급액

2) '88년~'13년까지의 수급자이었던 자(소멸자)를 포함한 누계기준 수급자 수 및 급여 지급액

출처 : 국민연금공단, 「월별 통계자료('13. 12월)」

xliv) 어린이집 현황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지원 아동수(명)	1,175,049	1,279,910	1,348,729	1,487,361	1,486,980
어린이집(개소)	35,550	38,021	39,842	42,527	43,770
보육교직원(명)	206,912	229,084	248,635	284,237	301,719
예산(국비, 백만원)	1,710,430	2,127,510	2,478,380	3,028,567	4,146,625

* 상기 통계에 가정양육수당, 유치원 등은 제외되어 있음

어린이집·유치원 및 가정양육 이용 인원

(‘13. 12월, 단위: 천명)

계(0~5세)	어린이집(0~5세)			유치원 (3~5세)	가정 양육(0~5세)		
	계	소계	영아		유아	소계	영아
3,188	1,477	875	602	658	1,053	872	181

xlv)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사용(고용보험 급여 지급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구분	인원	급여지급액
’09년		70,560 (203)	178,477 (407)
’10년		75,742(219)	192,564 (457)
’11년		90,290 (213)	232,915 (445)
’12년		93,394 (281)	241,900 (527)
’13년		90,507 (336)	235,105 (448)

육아휴직 사용(고용보험 급여 지급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구분	인원		급여 지급액	
			남성		남성
’09년		35,400	502	139,724	1,503
’10년		41,729	819	178,121	2,539
’11년		58,130	1,402	276,261	5,761
’12년		64,069	1,790	357,797	9,153
’13년		69,616	2,293	420,248	11,69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고용보험 급여 지급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구분	인원		집행액	
			남성		남성
’11년		39	2	18	0.9
’12년		437	22	733	50
’13년		736	44	1,567	102

xlvi)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집단		전체
		진학	비진학	
최근 1년동안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없다	1,961 (72.6%)	54 (38.0%)	2,015 (70.9%)
	있다	739 (27.4%)	88 (62.0%)	827 (29.1%)
전체		2,700 (100.0%)	142 (100.0%)	2,842 (100.0%)

출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고용노동부(2011)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종류

(단위: 명, %)

종류	집단		합계
	진학	비진학	
전단지 돌리기	225(25.2%)	35(22.3%)	260(24.8%)
배달	67(7.5%)	14(8.9%)	81(7.7%)
카운터 및 서빙	482(54.0%)	52(33.1%)	534(50.9%)
주유소 주유원	33(3.7%)	17(10.8%)	50(4.8%)
건설 공장노동	47(5.3%)	18(11.5%)	65(6.2%)
제한업종	7(0.8%)	8(5.1%)	15(1.4%)
기타	32(3.6%)	13(8.3%)	45(4.3%)
합계	893(100.0%)	157(100.0%)	1,050(100.0%)

주) 복수 응답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총수인 830명보다 합계의 인원수가 많음

출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고용노동부(2011)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 실적

(단위: 사업장, 건수)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점검업체	1,641	1,545	2,711	1,940	3,057
법위반 업체	1,408	1,300	2,384	1,780	2,572
시정조치(건수)	4,746	4,977	9,676	7,581	8,374

xlvi) 가족결합 관련 외국인 체류현황

('13. 12월말 기준)

구분	가족결합 관련 외국인 체류현황(결혼이민자 가족 체류현황)
합계	123,047명(28,923명)
방문동거(F-1)	60,927명(26,316명)
거주(F-2)	39,704명(2,474명)
동반(F-3)	20,150명
영주(F-5-3, F-5-4)	2,266명(133명)

※ F-5-3 : 국민의 자녀, F-5-4 : 영주권자의 가족

xlvi)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발생 추이(대검찰청)

(단위 : 건)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성폭력 범죄	형 법		9,849	10,298	10,601	11,044	12,88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6,671 (4,029)	3,626 (2,048)	843 (604)	752 (555)	603 (379)
	성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473 (2,330)	7,460 (3,425)	8,187 (3,660)	10,488 (3,65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63	2,644	3,005	3,219	3,297
	기타(특가법)			75	11	1	5
	합 계		18,283 (4,029)	21,116 (4,378)	21,920 (4,029)	23,203 (4,215)	27,279 (4,033)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2,699	3,725	3,978	4,215	4,431
13세 미만자 대상 성폭력특별법위반			774	880	816	868	1,027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239	350	408	727	1,000

※ 괄호는 검사의 국선변호사 의무적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내지 제9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죄

xlix) 가정폭력사건 발생 현황(출처 : 경찰청)

연도	발생건수(검거건수)	검거인원	재범인원	재범률(%)
'09년	11,025	12,493	1,315	10.5
'10년	7,359	7,992	1,619	20.3
'11년	6,848	7,272	2,395	32.9
'12년	8,762	9,345	3,011	32.2
'13년	16,785	18,000	2,131	11.8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현황

연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개소수	275	251	244	228	196
상담실적(건)	307,009	296,686	288,751	272,580	260,452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 현황

연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개소수	66	64	65	66	70
입소정원(명)	1,094	1,114	1,046	1,075	1,133

l) <'12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전문강사를 경찰서별 직무교육에 초청 교육

단 위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 인원
경찰서(206개)	인식개선 및 처리절차 교육	직무교육(2시간)	27,751명

○ <'13년> 「가정폭력 대응 전문교육과정」 신설 및 전 경찰서 직무교육으로 확대

단 위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 현황('13년)
경찰교육센터(17개)	가정폭력 대응 심화교육	2일 과정	21회 707명
경찰교육원	가정폭력 강사 양성과정	5일 과정	4회 120명
경찰서	인식개선 및 처리절차 등 직무교육	직무교육(2시간)	- 전문강사 : 76회(22,271명) - 자체교육 : 2,548회
지구대파출소	처리 및 연계절차 등 현장교육	근무교대시간(1시간)	- 전문강사 : 668회(8,807명) - 자체교육 : 53,125회

li) 경찰 가정폭력 신고율 관련 통계

구분	112신고접수(전체)	가정폭력 112신고접수	가정폭력 검거건수
'13년	19,115,619건	160,272건	16,785건
'14.10월	15,887,380건	129,810건	14,580건

가정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대검찰청)

기간	접수	처리					
		처분계	기소		불기소	가정보호 사건송치	기타
			구공판	구약식			
2009(11~12)	1,624	1,779	43	130	785	805	16
2010	5,185	5,240	112	465	2,715	1,908	40
2011	2,939	2,942	94	435	1,997	384	32
2012	3,154	3,159	116	353	2,006	629	55
2013	17,194	17,069	969	1,607	10,015	4,239	239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증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lii) 인신매매사범 접수 처분 현황(검찰 통계)

연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2009	459	445	158	4	150	133
2010	366	359	110	4	121	124
2011	344	342	111	7	124	100
2012	428	445	175	3	128	139
2013	404	387	107	3	128	149

※ 인신매매 관리죄명 : 형법(영리등을 위한약취등, 부녀매매, 국외이송약취, 추행등목적약취·유인등, 인신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매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간음약취, 간음유인, 국외이송약취, 국외이송유인, 부녀매매, 영리약취, 영리약취·유인등, 영리유인, 추행약취, 추행유인)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증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liii) 연간 성교육 경험률

(단위: %)

구 분	'10			'11			'12			'13		
	분석대상자수	분율(표준오차)										
전체	73,238	68.9	(0.5)	75,643	66.1	(0.4)	74,186	68.0	(0.5)	72,435	71.6	(0.5)
학교급												
중학교	37,570	76.4	(0.5)	38,474	74.2	(0.5)	37,297	73.7	(0.6)	36,530	78.1	(0.6)
고등학교	35,668	61.3	(0.8)	37,169	58.1	(0.7)	36,889	62.5	(0.7)	35,905	65.5	(0.7)
일반계고	26,845	60.0	(1.0)	27,278	56.9	(0.8)	28,443	61.8	(0.7)	29,120	65.3	(0.7)
특성화계고	8,823	65.4	(1.4)	9,891	61.9	(1.1)	8,446	65.0	(1.6)	6,785	66.4	(1.7)

<자료출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liv) 전체가구 대비 한부모 가구 현황

(단위 : 천가구, %)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가구	16,289	16,543	16,791	17,052	17,339	17,687	17,951
한부모가구	1,426	1,468	1,509	1,551	1,594	1,639	1,677
비율(%)	8.75	8.87	8.99	9.09	9.2	9.3	9.3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2005~2030 장래가구추계”

※ 한부모가구 :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조손가구 제외)

연도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현황

(단위 : 세대)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율
합계	66,163	73,305	81,792	94,487	107,775	115,382	130,509	100
모자가정	53,120	57,757	63,469	71,775	81,299	86,809	98,209	75.3
부자가정	13,043	15,548	18,150	22,532	26,112	28,167	31,781	24.3
조손가정	-	-	173	180	364	406	519	0.4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에 대한 현황임

연도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현황

(단위: 명)

연도	계(인원)	아동양육비	교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10년	117,000	66,122	50,878	-	-	-
'11년	129,471	71,493	57,978	-	-	-
'12년	174,140	72,536	-	1,848	99,486	270
'13년	182,134	73,020	-	2,323	106,511	280

lv) 양육 미혼모 추계('10.11월 기준)

(단위 : 명)

모연령	합계	자녀 연령			
		만 2세 이하	만 5세 이하	만 12세 미만	만 18세 이하
계	36,263	8,260	5,332	7,974	14,697
만 18세 이하	606	602	4	-	-
만 24세 이하	2,168	1,464	566	138	-
만 25세 이상	33,489	6,194	4,762	7,836	14,697

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함

자료 : 통계청, 2015년 등록센서스 추진을 위해 구축한 2010년 등록센서스 인구·가구DB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연도별 지원 실적

(단위 : 가구)

연도	계	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검정고시·고교 학비
	가구(순계)	가구	가구	가구
'11년	1,620	1,286	197	180
'12년	1,829	1,607	151	146
'13년	2,063	2,005	133	220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13.12월 말 기준)

시설유형		시설수 (59개소)	입소대상	보호기간 (연장가능기간)	입소 정원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기본생활 지원	33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1년(6월)	784명
	공동생활 지원	25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2년(1년)	220세대
		1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2년(6월)	10명

lvi) 최저생계비

(단위: 천원/월)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인가구	491	504	532	553	572	603
2인가구	836	858	906	942	974	1,027
3인가구	1,081	1,110	1,173	1,218	1,260	1,329
4인가구	1,327	1,363	1,439	1,495	1,546	1,630
5인가구	1,572	1,615	1,705	1,772	1,832	1,932
6인가구	1,817	1,867	1,971	2,048	2,118	2,234

* 자료 : e-나라지표 <최저생계비 및 빈곤율 추이> (<http://www.index.go.kr>)

빈곤율 추이(2인 이상 전가구 기준)

(단위: %)

	2009	2010	2011	2012
절대적빈곤율	7.0	6.4	6.3	6.0
상대적빈곤율	12.8	12.1	12.3	12.0

* 자료 : e-나라지표 <최저생계비 및 빈곤율 추이> (<http://www.index.go.kr>)

lvii) 거주지역별 가구분포

(단위: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인정액 120% 이상 ~ 소득 120% 미만	소득 120% ~ 150%	소득 150% ~ 180%	소득 180% 이상	계
	1	2	3	4	5	6	7	
대도시	51.68 (5.40)	39.24 (3.55)	48.46 (2.00)	37.97 (4.72)	39.79 (5.97)	45.00 (7.28)	47.18 (71.08)	45.89 (100.0)
중소도시	27.07 (3.66)	25.42 (2.97)	21.93 (1.17)	30.61 (4.92)	29.66 (5.76)	31.48 (6.59)	38.41 (74.92)	35.46 (100.0)
농어촌	21.25 (5.47)	35.34 (7.86)	29.61 (3.00)	31.42 (9.61)	30.55 (11.28)	23.52 (9.36)	14.41 (53.42)	18.65 (100.0)
계	100.0 (4.80)	100.0 (4.15)	100.0 (1.89)	100.0 (5.70)	100.0 (6.89)	100.0 (7.43)	100.0 (69.15)	100.0 (100.0)

○ 가구규모별 가구분포

(단위: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인정액 120% 이상 ~ 소득 120% 미만	소득 120% ~ 150%	소득 150% ~ 180%	소득 180% 이상	계	
	1	2	3	4	5	6	7		
평균 가구원수	1.77	1.66	1.81	2.23	2.36	2.50	2.93	2.69	
가구규모	1인	60.66 (12.18)	58.62 (10.18)	48.59 (3.84)	25.84 (6.17)	29.88 (8.61)	27.12 (8.43)	17.48 (50.58)	23.89 (100.0)
	2인	17.71 (3.51)	28.24 (4.83)	33.38 (2.60)	46.14 (10.86)	34.68 (9.85)	30.63 (9.38)	20.68 (58.99)	24.25 (100.0)
	3인	10.56 (2.38)	5.86 (1.14)	9.6 (0.85)	13.46 (3.60)	16.11 (5.21)	17.4 (6.06)	24.89 (80.76)	21.31 (100.0)
	4인	7.42 (1.58)	4.2 (0.78)	6.21 (0.52)	9.83 (2.49)	11.11 (3.40)	17.3 (5.71)	27.8 (85.51)	22.48 (100.0)
	5인	2.38 (1.83)	1.88 (1.26)	1.65 (0.50)	3.65 (3.35)	5.48 (6.06)	5.59 (6.68)	7.22 (80.32)	6.22 (100.0)
	6인	0.9 (2.81)	1.13 (3.06)	0.57 (0.70)	0.78 (2.89)	2.5 (11.24)	1.81 (8.78)	1.56 (70.52)	1.53 (100.0)
	7인 이상	0.38 (5.85)	0.05 (0.70)	-	0.31 (5.72)	0.24 (5.25)	0.15 (3.55)	0.35 (78.95)	0.31 (100.0)
계	100.0 (4.80)	100.0 (4.15)	100.0 (1.89)	100.0 (5.70)	100.0 (6.89)	100.0 (7.43)	100.0 (69.15)	100.0 (100.0)	

○ 가구유형별 가구분포

(단위: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인정액 120% 이상~ 소득 120% 미만	소득 120%~ 150%	소득 150%~ 180%	소득 180% 이상	계
		1	2					
단독가구	60.66 (12.18)	58.62 (10.18)	48.59 (3.84)	25.84 (6.17)	29.88 (8.61)	27.12 (8.43)	17.48 (50.58)	23.89 (100.00)
모자가구	7.93 (32.41)	1.45 (5.12)	2.38 (93.83)	0.57 (2.76)	1.72 (10.09)	1.99 (12.56)	0.56 (33.23)	1.17 (100.00)
부자가구	1.18 (18.04)	-	0.74 (4.47)	0.38 (6.82)	0.44 (9.74)	0.41 (9.67)	0.23 (51.27)	0.31 (100.00)
소년소녀 가장가구	1.77 (21.50)	1.35 (14.24)	0.75 (3.62)	1.02 (14.74)	1.16 (20.36)	0.77 (14.47)	0.06 (11.06)	0.39 (100.00)
기타가구	28.46 (1.84)	38.57 (2.16)	47.53 (1.21)	72.2 (5.55)	66.79 (6.20)	69.72 (6.97)	81.66 (76.08)	74.23 (100.00)
계	100 (4.80)	100 (4.15)	100 (1.89)	100 (5.70)	100 (6.89)	100 (7.43)	100 (69.15)	100 (100.00)

○ 가구주 성별 가구분포

(단위: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인정액 120% 이상~ 소득 120% 미만	소득 120%~ 150%	소득 150%~ 180%	소득 180% 이상	계
		1	2					
남성	40.42 (2.51)	44.12 (2.37)	47.06 (1.15)	73.33 (5.42)	65.48 (5.85)	67.33 (6.48)	85.01 (76.21)	77.13 (100.00)
여성	59.58 (12.50)	55.88 (10.14)	52.94 (4.38)	26.67 (6.65)	34.52 (10.40)	32.67 (10.61)	14.99 (45.33)	22.87 (100.00)
계	100 (4.80)	100 (4.15)	100 (1.89)	100 (5.70)	100 (6.89)	100 (7.43)	100 (69.15)	100 (100.00)

○ 가구주 학력별 가구분포

(단위: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인정액 120% 이상~ 소득 120% 미만	소득 120%~ 150%	소득 150%~ 180%	소득 180% 이상	계
		1	2					
무학	23.76 (16.90)	36.52 (22.45)	25.52 (7.15)	12.91 (10.92)	13.32 (13.60)	9.96 (10.97)	1.76 (18.01)	6.74 (100.00)
초등학교	27.97 (8.64)	31.55 (8.43)	34.17 (4.16)	35.67 (13.10)	32.76 (14.53)	23.75 (11.36)	8.93 (39.78)	15.53 (100.00)
중학교	17.71 (7.10)	10.97 (3.80)	13.12 (2.07)	13.39 (6.38)	16.57 (9.53)	16.54 (10.26)	10.53 (60.85)	11.97 (100.00)
고등학교	25.87 (3.80)	13.96 (1.77)	17.37 (1.01)	22.88 (4.00)	27.54 (5.81)	32.81 (7.46)	35.95 (76.15)	32.64 (100.00)
전문대학	0.71 (0.55)	1.51 (1.00)	1.28 (0.39)	3.9 (3.57)	2.73 (3.02)	4.85 (5.78)	7.73 (85.70)	6.24 (100.00)
대학교	3.78 (0.79)	5.05 (0.91)	6.62 (0.54)	9.78 (2.43)	5.71 (1.71)	11.4 (3.69)	29.88 (89.93)	22.98 (100.00)
대학원	0.2 (0.24)	0.43 (0.46)	1.92 (0.93)	1.47 (2.15)	1.37 (2.41)	0.68 (1.29)	5.22 (92.51)	3.9 (100.00)
계	100 (4.80)	100 (4.15)	100 (1.89)	100 (5.70)	100 (6.89)	100 (7.43)	100 (69.15)	100 (100.00)

○ 가구주 장애여부

(단위: %)

구분	수급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인정액 120% 이상~ 소득 120% 미만	소득 120%~ 150%	소득 150%~ 180%	소득 180% 이상	계
		1	2					
비장애인	66.38 (3.50)	81.43 (3.71)	84.03 (1.74)	88.05 (5.51)	85.03 (6.43)	90.15 (7.35)	94.54 (71.76)	91.1 (100.00)
장애인	33.62 (18.12)	18.57 (8.65)	15.97 (3.39)	11.95 (7.66)	14.97 (11.58)	9.85 (8.21)	5.46 (42.40)	8.9 (100.00)
계	100 (4.80)	100 (4.15)	100 (1.89)	100 (5.70)	100 (6.89)	100 (7.43)	100 (69.15)	100 (100.00)

lviii) 연도별 노숙인 등 현황

(단위 : 명)

연 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합 계	15,785	15,173	14,266	14,288	13,930	13,152	13,145	12,391	12,656
노숙인(재활·요양시설)	11,063	10,317	9,722	9,492	9,266	8,958	8,742	8,569	8,520
노숙인(자활시설·일시보호)	3,763	3,563	3,363	3,479	3,404	3,117	3,282	2,741	2,939
거리 노숙인	959	1,293	1,181	1,317	1,260	1,077	1,121	1,081	1,197
쪽방주민	-	-	-	6,119	6,394	6,232	5,991	5,891	5,992

lix) 국민건강영양조사 영양부문 주요결과(2009~2012)

표준화율, %, (SE)

영역	산출지표	'09	'10	'11	'12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14.2(0.5)	10.1(0.5)	10.6(0.5)	11.9(0.7)
	에너지/지방 과잉섭취자 분율	4.9(0.3)	7.6(0.4)	7.3(0.5)	7.7(0.5)
식생활 행태	아침식사 결식률	20.6(0.6)	21.3(0.7)	21.3(0.7)	22.5(0.8)
	저녁식사 가족동반식사율	68.1(0.8)	68.0(0.9)	66.1(1.0)	66.4(0.9)
	식이보충제 복용경험률	33.8(0.8)	40.0(0.9)	39.8(0.9)	43.0(1.1)

* 만 1세 이상,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 표준화

영양플러스사업 현황(2008~2013)

구 분	'08	'09	'10	'11	'12	'13
예산(백만원)	10,850	16,080	17,480	17,480	17,634	14,100
연간 수혜자수(명)	46,047	74,406	86,605	87,449	91,597	88,861
빈혈감소율(사업전후 빈혈유병률, %)	47.8	48.1	65.0	75.8	69.9	59.6

* 자료출처 : 2008~2013년 시도 영양플러스사업실적, 보건복지부

도시/농어촌간 상수도 보급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									
전국	50,644	47,994 (47,336)	94.8 (93.5)	51,435	50,264 (48,395)	97.7 (94.1)	51,717	50,638 (48,938)	97.9 (94.6)	51,881	50,905 (49,354)	98.1 (95.1)
특 ·광역시	23,380	23,268 (23,241)	99.5 (99.4)	23,645	23,625 (23,526)	99.9 (99.5)	23,658	23,639 (23,558)	99.9 (99.6)	23,624	23,609 (23,532)	99.9 (99.6)
시지역	18,206	17,973 (17,952)	98.7 (98.6)	18,555	18,373 (18,310)	99.0 (98.7)	18,833	18,657 (18,608)	99.1 (98.8)	19,072	18,909 (18,863)	99.1 (98.9)
읍지역	4,033	3,657 (3,582)	90.7 (88.8)	4,115	3,896 (3,696)	94.7 (89.8)	4,210	3,994 (3,825)	94.9 (90.9)	4,202	4,014 (3,858)	95.5 (91.8)
면지역	5,024	3,096 (2,561)	61.6 (51.0)	5,119	4,371 (2,863)	85.4 (55.9)	5,016	4,348 (2,947)	86.7 (58.8)	4,983	4,374 (3,101)	87.8 (62.2)

※ 2009~2012, 상수도통계

※ ()안 수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인구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

lxi) 주택보급률(전국)

(단위 : %, 천호, 천가구)

구분	'85	'90	'95	'00	'05	'06 (추계)	'07 (추계)	'08 (추계)	'09 (추계)	'10	'11 (추계)	'12 (추계)	'13 (추계)
가구수	8,750	10,167	11,133	11,928	12,491	12,634	12,760	12,891	13,025	12,995	13,136	13,262	13,395
주택수	6,105	7,357	9,570	11,472	13,223	13,534	13,793	14,169	14,456	14,677	15,007	15,306	15,628
보급률	69.8	72.4	86.0	96.2	105.9	107.1	108.1	109.9	111.0	112.9	114.2	115.4	116.7

* '13년 신주택보급률(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하고, 가구수는 1인가구를 포함하는 일반가구로 산정)은 103.0%임

lxii) 전국 유형별 주택재고 현황

(단위 : 천호)

구 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영업용 건물내 주택	빈집
		소계	단독	다가구	영업 겸용					
'85 (구성비)	6,104 (100%)	4,719 (77.3)	-	-	-	822 (13.5)	350 (5.7)	-	213 (3.5)	213
'95 (구성비)	9,205 (100%)	4,337 (47.1)	-	-	-	3,455 (37.5)	734 (8.0)	336 (3.7)	343 (3.7)	365
'05 (구성비)	13,223 (100.0%)	4,264 (32.2%)	3,277 (24.8%)	763 (5.8%)	223 (1.7%)	6,963 (52.7%)	559 (4.2%)	1,229 (9.3%)	209 (1.6%)	728
'10 (구성비)	14,677 (100.0%)	4,089 (27.9%)	2,845 (19.4%)	886 (6.0%)	358 (2.4%)	8,576 (58.4%)	536 (3.7%)	1,314 (9.0%)	161 (1.1%)	794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비교

구분	건설임대			매입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5·10년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급 목적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 지원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전용 면적	23.1~39.6㎡	36.3~59.4㎡	85㎡이하	85㎡이하	85㎡이하
임대 기간	영구	30년	-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 장기전세(20년) - 분납형(10년)	10년	
입주 자격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전국평균소득 50% 이하(사실상 불가) (3순위) 청약저축가입자(사실상 불가)	도시근로자 전국평균소득 70%이하 무주택세대주 ※ 50㎡이하 주택은 전국평균소득 50% 이하에 우선 공급 ※ 50㎡ 초과 주택은 청약저축가입 필요	도시근로자 전국평균소득 100% 이하 무주택세대주 ※ 청약저축 가입 필요 ※ 60㎡ 초과 주택은 소득 요건 없음	영구임대와 동일	
	소득1분위	소득2~4분위	소득4~5분위	소득1~2분위	
채원 구성	- 재정 85% - 입주자 15%	- 재정 32% - 기금 39% - 사업자 10% - 입주자 19% ※ 35~45㎡ 기준	- 기금 100%	- 재정 45% - 기금 50% - 입주자 5%	- 기금 95% - 입주자 5%
임대료 수준 ('10)	시세의 30%	시세의 50~80%	시세의 80~100%	시세의 30%	
재고 ('12년 말)	190,774호	455,382호	356,142호	51,493호	85,625호
신규 공급 ('13년)	0.5천호	2.33만호	1.81만호	1.28만호	2.57만호

비주택거주자 연도별 주거지원 현황

(단위 : 호)

년도	계	국민			매입				전세			
		소계	쪽방	비닐	소계	쪽방	비닐	기타	소계	쪽방	비닐	기타
~'09	1,018	9		9	432	407	25		577	117	460	
'10	603				393	360	7	26	210	11	199	
'11	844	8		8	652	523	15	114	184	4	165	15
'12	521				314	172	10	132	207	13	96	98
'13	584				306	131	8	167	278	42	57	179
계	3,570	17	-	17	2,097	1,593	65	439	1,456	187	977	292

※ 기타 :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거주자

비주택거주자 유형별 주거지원 현황

(단위 : 호)

구분	계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여인숙			범죄피해자			노숙인·부랑인		
		매입임대		전세 임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국민 임대	매입임대		전세 임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국민 임대	매입임대		전세 임대
		직접 계약	운영 기관					직접 계약	운영 기관					직접 계약	운영 기관	
계	3,570	217	1,376	187	65	977	17	138	210	242	17	34	-	13	61	16

lxv)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공급실적

(단위 : 호)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획	-	-	시범사업	10,000	3,000
실적	-	-	107	10,349	3,713

lxvi) 행복(공공)기숙사 지원 실적(약정 기준)

(단위 : 개교,명,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학교	-	-	-	4	7
사업				6	8
수용인원				3,096	4,311
공공기금 지원액	-	-	-	668	971

lxvii) 저소득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실적

(단위 : 호)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공급량	169,572	53,895	48,350	26,786	20,550	19,991
고령자용 주택공급량	8,417	2,726	2,588	1,217	944	942
비율	5.0%	5.1%	5.4%	4.5%	4.6%	4.7%

저소득 장애인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실적

(단위 : 호)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공급량	169,572	53,895	48,350	26,786	20,550	19,991
장애인용 주택공급량	7,262	1,830	2,308	1,216	958	950
비율	4.3%	3.4%	4.8%	4.5%	4.7%	4.8%

lxviii)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공급 실적

(단위 : 호)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급량	3,880	1,065	809	603	658	745

lxix) 최근 5년 보장율 통계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건강보험 보장률	64.6	62.2	64.0	63.6	63.0	62.5

*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건강보험공단, 2014. 2월)

○ 공공지출 확대를 위한 보장성 확대 계획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보장성 (억원)	13,164	7,520	5,609	1,749	7,582	6,490	2,719	3,888	13,040

lxx)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인원	223,009	453,569	499,106	479,225	492,714	468,769

lxxi) 모성사망비 현황

(단위 : 명, 출생아 10만명, %)

연도	2010	2011	2012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모상사망자수	74	81	48	-33.0	-40.7
모성사망비	15.7	17.2	9.9	-7.3	-42.4

* 출처 : 2010~2012년 모성사망 통계(통계청) <http://www.kosis.kr>

lxxii)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 현황	8,041	8,267	7,571	8,454	14,231
지원자 수	13,367	12,231	10,656	9,743	13,548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현황

(단위: 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선별검사자 수	439,387	467,957	465,171	483,510	429,759
환아발견	397	422	482	486	378

모유수유율

(단위 : %)

구분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6개월 완전모유수유율	9.5	29.5	26.8	36.2	32.3

* 출처 :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kihasa.re.kr>

lxxiii)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지장개교 현황

(단위 : 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2차 개교	-	10	10	10	10
3·4차 개교	-	-	7	7	7
5·6차 개교	-	-	-	7	7
7차 개교	-	-	-	-	2

lxxiv)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 연도별 현황

(단위 : 교,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참여 부처수	3부2청	3부2청	3부2청	4부3청	5부3청
지원 학교수	106	104	102	123	201
총 예산 규모	25,500	23,664	20,829	24,870	37,676
교당 지원 금액	241	228	204	199	180

lxxv)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현황

(단위 : 교, 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 학생수(A)	-	-	379,608	359,184	346,407
지원 학생수(B)	-	-	210,458	204,823	212,183
비율(B/A)	-	-	55.4%	57%	61%
1인당 지원액	-	-	1,148	1,145	1,145

lxxvi) 저소득층장학금,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천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700 (-)	2,062 (195%)	2,460 (19%)	3,313 (35%)			
	인원	18	68	80	74			
국가 장학금	예산					17,500 (428%)	27,750 (59%)	34,575 (25%)
	인원					1,000	1,170	1,200

* 하단 괄호는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 저소득층 장학금은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으로 통·폐합

lxxvii) 학자금 대출 현황(일반상환학자금+ICL)

(단위 : 건, 억원)

구분	대출 건수	대출 금액
2011년	733,534	26,853
2012년	727,667	23,265
2013년	784,800	25,521

lxxviii) 20세 이상 저학력 성인 학습자 현황(2010년 기준)

구분	초등학교 졸	초등학교 중퇴	중학교 중퇴	미취학	계
계	3,604,887	329,986	244,290	1,592,888	5,772,051
남자	1,253,426	91,883	132,727	306,058	1,784,094
여자	2,351,461	238,103	111,563	1,286,830	3,987,957

(출처: e-나라지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 재정리)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현황(2013년 기준)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남자	0.8%	0.6%	0.6%	1.1%	0.8%	0.2%	4.8%
여자	3.6%	2.6%	3.2%	15.2%	29.9%	33.9%	95.0%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lxxix) '11-'13 다문화학생 학업 중단율

(단위 : 명, %)

연도	구분	초	중	고	계
'11년도 ('10.3~'11.2)	재학생 수	24,701	5,260	1,827	31,788
	학업중단자 수	97	83	35	215
	학업중단률(%)	0.4	1.6	1.9	0.7
'12년도 ('11.3~'12.2)	재학생 수	28,667	7,634	2,377	38,678
	학업중단자 수	157	114	48	319
	학업중단률(%)	0.5	1.5	2.0	0.8
'13년도 ('12.3~'13.2)	재학생 수	33,792	9,647	3,515	46,954
	학업중단자 수	292	112	73	477
	학업중단률(%)	0.8	1.2	2.1	1.0

* 재학생수는 2014년 4월1일 기준, 학업중단자수는 해당 기간동안 학업을 중단한 학생수

lxxx)

	인구수 (명)		학생수 (명)		취학율 (%)	
	남	여	남	여	남	여
초등학교	1,491,597	1,380,989	1,448,059	1,335,941	97.0	96.7
중학교	985,070	899,859	944,683	859,506	95.9	95.5
고등학교	1,073,874	974,390	992,590	900,713	92.4	92.4

* 인구수 : 2013. 3. 31. (안전행정부 2013년 통계자료)

초등학교(만6세~만11세), 중학교(만12세~만14세), 고등학교(만15세~17세)

* 학생수 : 2013. 4. 1. (2013년 교육통계연보자료)

lxxxii) 시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현황

(단위: 대)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보급대수	4,000	4,000	4,300	7,500	7,083
누적보급대수	22,376	26,376	30,676	38,176	45,259

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현황

(단위: 대)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보급대수	7,373	7,505	8,134	9,175	5,247
누적보급대수	37,460	44,965	53,099	62,274	67,521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현황

(단위: 대)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보급대수	5,276	5,672	3,000	3,084	2,568
누적보급대수	59,187	64,859	67,859	70,943	73,511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사업자수

(단위: 개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자수	-	-	-	50	153

lxxxii) 문화이용권 수혜자 수(2009년~2013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년
수혜자 수(명)	296,279	469,369	1,208,685	1,605,115	1,638,737

* 2011년에 카드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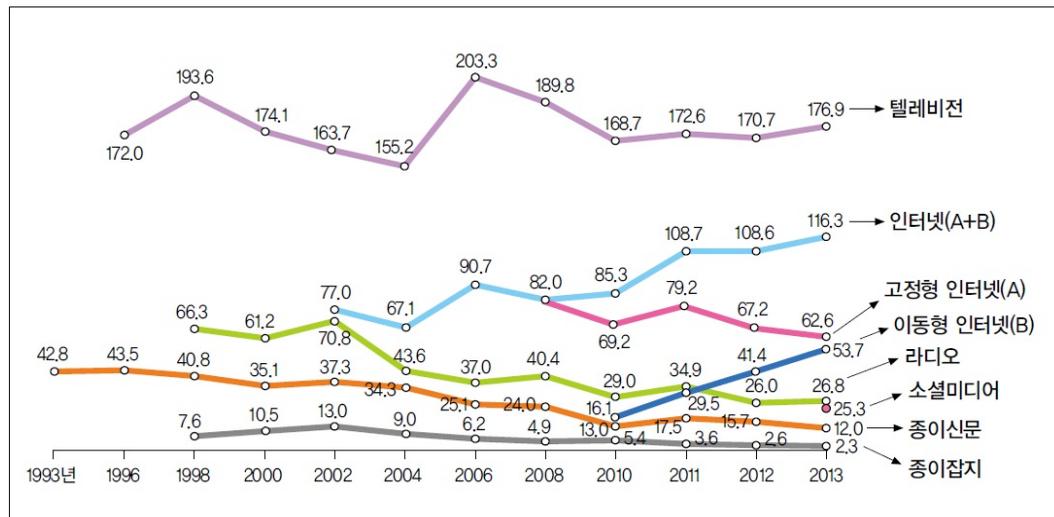
lxxxiii) 연도별 인터넷신문 등록추이

(2013.12.31 현재)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등록개수(개)	626	901	1,315	1,698	2,484	3,193	3,914	4,780

lxxxiv) 연도별 하루평균 미디어 이용시간 (2013.12.31 현재)

(단위: 분)



* 출처 : 「2013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재구성

lxxxv) 문화협정 체결 현황(자체통계: 2014년 5월 현재)

- 서명국(101개국), 발효국(98개국), 미발효국(3개국)

아주 서명국 : 18 발효국 : 18			미주 서명국 : 23 발효국 : 23		
국명	서명	발효	국명	서명	발효
일 본	65.06.22	65.12.18	브라질	66.02.27	67.10.20
말레이시아	65.09.30	65.12.31	니카라과	68.04.30	69.02.20
호 주	71.05.11	72.07.09	멕시코	66.04.29	69.03.17
필리핀	70.08.08	73.04.27	도미니카공화국	68.04.09	69.11.21
인 도	74.08.12	74.08.12	아르헨티나	04.11.15	07.11.22
스리랑카	78.01.20	78.12.11	(구협정)	(68.08.08)	(70.01.04)
방글라데시	79.06.14	79.06.14	엘살바도르	70.06.26	70.11.01
몰디브	84.10.31	85.08.15	코스타리카	66.07.29	71.07.04
파키스탄	85.05.09	86.08.27	볼리비아	71.09.07	72.01.19
몽 골	91.03.25	91.04.30	온두라스	70.12.15	74.04.01
중 국	94.03.28	94.04.27	우루과이	71.05.14	74.09.13
베트남	94.08.30	94.09.29	파 나 마	74.06.03	75.01.17
싱가포르	95.08.16	95.09.16	파라과이	73.06.28	75.07.31
인도네시아	00.11.26	07.09.28	콜롬비아	67.07.27	76.07.14
태 국	04.08.25	04.08.25	과테말라	78.05.11	78.09.18
네 팔	05.03.30	05.04.29	수리남	78.11.18	81.02.05
캄보디아	06.07.31	06.08.24	바베이도스	81.09.18	82.02.02
(구협정)	(73.1.29)	(73.1.29)	자메이카	81.10.10	82.02.02
홍 콩	04.08.24	04.11.7	칠 레	83.12.07	84.09.21
(양해각서)			에쿠아도르	85.05.14	86.06.18
※ 대만(폐기)	65.05.15	66.10.17	페 루	83.12.06	88.09.14
			캐나다	90.09.19	90.09.19
			(양해각서)		
			아이티	84.07.26	85.03.13
			베네수엘라	94.11.17	95.03.10

구주 서명국 : 29 발효국 : 27			아프리카 서명국 : 13 발효국 : 12		
국명	서명	발효	국명	서명	발효
프랑스	65.12.28	68.05.08	시에라리온	77.12.22	79.02.24
이탈리아*	05.10.21	미발효(상대)	세네갈	80.04.24	80.08.04
(구협정)	(65.3.9)	(70.6.16)	케냐	80.11.06	80.11.21
그리스	67.02.28	70.07.03	코트디부아르	80.02.28	80.12.10
독일	70.05.16	72.08.16	라이베리아	81.02.06	81.05.07
터키	72.08.04	74.05.03	자이르	81.11.20	82.08.11
영국	82.04.21	82.08.11	가나	87.05.22	87.05.22
벨기에	80.03.21	82.10.19	모리셔스	87.08.03	91.04.08
헝가리	89.02.01	89.03.29	가봉	75.07.07	80.11.18
포르투갈	90.11.21	91.06.19	이디오피아	98.10.26	98.10.26
루마니아	91.10.28	92.06.01	탄자니아	98.12.18	06.03.19
러시아	92.11.19	92.12.19	리비아	99.09.06	미발효(상대)
폴란드	93.06.09	94.10.03	나이지리아	12.08.09	13.07.17
핀란드	93.10.21	94.01.26	중동 서명국 : 18 발효국 : 18		
스페인	94.01.17	94.04.28	국명	서명	발효
(구협정)	(77.2.7)	(77.6.6)	튀니지	69.07.18	70.05.14
불가리아	94.01.17	94.04.06	이란	74.07.16	75.03.20
우즈베키스탄	94.06.06	94.10.10	사우디아라비아	75.04.19	75.08.04
체코	94.10.06	94.10.24	아프가니스탄	76.11.22	76.11.22
카자흐스탄	95.05.16	95.06.15	모로코	77.09.10	79.07.20
슬로베니아	95.07.05	97.06.14	요르단	77.10.26	78.01.28
키르기스스탄	97.06.04	97.06.04	수단	77.11.22	79.10.14
에스토니아	01.06.25	01.07.20	쿠웨이트	82.10.27	83.02.06
우크라이나	04.06.07	09.08.03	모리타니아	83.09.17	89.06.10
아제르바이잔	06.05.11	06.10.04	이라크	85.09.02	86.03.18
세르비아	06.05.16	09.06.05	바레인	87.01.28	87.03.18
몬테네그로	06.05.16	미발효(상대)	카타르	87.07.12	88.06.01
슬로바키아	07.10.30	07.11.27	이집트	88.08.30	89.06.13
벨로루시	07.11.05	08.03.13	오만	94.02.02	95.07.01
라트비아	11.10.19	11.11.21	알제리	97.04.03	97.04.10
크로아티아	12.6.15	13.01.08	이스라엘	94.12.16	95.07.18
			아랍에미리트	07.5.22	08.02.26
			레바논	12.9.25	13.02.01

(* 이탈리아는, 구협정 발효/신협정 미발효상태로 서명국 숫자에는 포함, 발효국/미발효국 숫자에는 불포함)

○ [표2] 문화공동위원회 운영 현황 (자체통계: 2014년 5월 현재)

지역	국 가	문화공동위 (or 문화외교국장회의) 최종 개최실적
아주(9)	몽골	○ 제3차 문화공동위 : '11.11.23, 울란바타르
	베트남	○ 제3차 문화공동위 : '04.12.21-23, 하노이
	싱가포르	○ 제2차 문화공동위 : '05.3.30, 서울
	인도	○ 제7차 문화공동위 : '09.9.2, 서울
	인도네시아	○ 제1차 문화공동위 : '08.5.14, 족자카르타
	일본	○ 제15차 문화국장회의 : '10.3.12, 서울
	중국	○ 제8차 문화공동위 : '11.11.18, 제주도
	파키스탄	○ 제1차 문화공동위 : '01.9.15, 이슬라마바드
	호주	○ 제4차 문화공동위 : '03.5.30, 캔버라
미주(7)	멕시코	○ 제2차 문화외교국장회의 : '10.11.9, 멕시코 ○ 제5차 문화공동위 : '12.9.19, 멕시코
	칠레	○ 제2차 문화공동위 : '11.11.10, 산티아고 ○ 제1차 문화외교국장회의 : '05.11월, 산티아고
	브라질	○ 제1차 문화공동위 : '06.9.26, 서울 ○ 제3차 문화국장회의 : '11.11.8, 브라질리아
	아르헨티나	○ 제2차 문화공동위 : '07.7.6, 부에노스아이레스 ○ 제2차 문화국장회의 : '11.11.11,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콰도르	○ 제1차 문화공동위 : '09.7.9, 서울 ○ 제1차 문화외교협력회의 : '11.6.14, 키토
	콜롬비아	○ 제1차 문화공동위 : '11.6.13, 보고타
	쿠바	○ 제1차 문화국장회의 : '08.3.28, 아바나
구주(14)	그리스	○ 제4차 문화공동위 : '06.5.23, 아테네
	독일	○ 제9차 문화공동위 : '04.9.21-22, 베를린
	러시아	○ 제5차 문화공동위 : '03.12.16, 모스크바
	루마니아	○ 제1차 문화공동위 : '95.7.5-6, 부카레스트
	벨기에	○ 제3차 문화공동위 : '89.2.13-17, 브뤼셀
	스페인	○ 제5차 문화공동위 : '09.6.25, 마드리드
	영국	○ 제6차 문화공동위 : '96.10.10, 런던
	우즈베키스탄	○ 제2차 문화공동위 : '06.7.21, 서울
	이탈리아	○ 제7차 문화공동위 : '98.11.10-11, 로마
	카자흐스탄	○ 제2차 문화공동위 : '13.11.22, 아스타나
	포르투갈	○ 제2차 문화공동위 : '13.11.18, 리스본
	프랑스	○ 제11차 문화과학기술혁신위원회 : '02.9.26, 파리
	핀란드	○ 제4차 문화공동위 : '05.10.18, 서울
	헝가리	○ 제1차 문화공동위 : '90.11.5-6, 부다페스트

지역	국 가	문화공동위 (or 문화외교국장회의) 최종 개최실적
아중동(8)	모로코	○ 제5차 문화공동위 : '12.6.25, 서울
	사우디아라비아	○ 제12차 경제공동위 : '02.4.2-3, 서울
	수단	○ 3차 문화공동위 : '03.10.14, 서울
	알제리	○ 제2차 문화공동위 : '06.5.20-21, 알제 ○ 제1차 문화정책협의회 : '09.12.1, 알제
	이란	○ 제3차 문화공동위 : '13.10.7, 서울
	이스라엘	○ 제6차 문화공동위 : '12.12.3, 텔아비브
	이집트	○ 제3차 문화공동위 : '07.9.16, 카이로
	튀니지	○ 제4차 문화공동위 : '14.2.19, 튀니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자료집

2.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정부보고서(초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아 래

I. 의견표명의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유엔 사회권규약 제16조에 따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라 한다)에 사회권규약의 이행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지난 2007년 제3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뒤 동 보고서에 대하여 2009년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이하 ‘제3차 최종견해’라 한다)를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권규약 이행상황에 대한 제4차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 안'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여 온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7호, 제21조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 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및 유엔 사회권규약을 판단기준으로, 유엔의 사회권규약 국가보고서 작성지침(HRI/GEN/2/Rev.2, pp.5~26),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E/C.12/KOR/CO/3),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1. 당사국의 의무(E/1989/22)를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III. 의견

1. 국가보고서 안에 대한 총평

가. 사회권규약 실현의 장애 및 어려움에 대한 기술 부족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당사국들이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이유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당사국의 국민들이 사회권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을 어느 정도로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국이 사회권규약 실현의 장애 및 어려움에 대한 언급 없이 긍정적 발전의 측면만을 보고하는 것은 국가보고서 작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이번 국가보고서 안은 사회권에 대한 정부

의 개선된 정책과 시행 제도 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체적인 조망 및 사회권규약위원회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어렵게 하고, 나아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통한 사회권규약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법·제도 시행결과 및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

국가보고서 안은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설명을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실제 이러한 법과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론적 효과만을 언급한 것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제도들의 이행방법 및 문제점, 한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제3차 최종견해에 대한 기술 미흡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제3차 최종견해에서 지적된 우려 및 권고사항들에 대한 진척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차 최종견해에서는 빈곤퇴치를 위한 충분한 예산의 반영 및 정책시행, 의료서비스에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 공공보육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서비스 연계망의 확장,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등을 권고하면서 채택된 조치들의 결과 및 성별, 연령, 거주지 등에 따라 상세하게 구분된 관련 통계자료를 제4차 국가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보고서 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라.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기술 부족 및 전체적인 조망의 어려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은 각 항목별로 상세한 답

변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보고서 안은 일반현황만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한 사회권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관련된 행정·입법·사법부의 정책, 법률, 판결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규약의 이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소관법령 및 정책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전체적인 사회권 이행상황을 조망하기 어렵다.

2. 세부조항별 의견

이하에서는 국가보고서 안의 목차순서를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세부조항별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 일반적 사항

(1) 제2조 규약의 효력

제3차 최종견해 6항 및 국가보고서 안 4항에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규약보다 협소하지 않으며 오히려 「헌법」 제37조에 따라 범위가 더 넓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의 결정례, 법원의 판례 등에서 「헌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사회적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도출된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상 바로 인정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범위가 사회권규약에 비하여 넓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가 헌법 규정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 등 적극적 권리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2) 국가인권기구

제3차 최종견해 8항 및 국가보고서 안 6 내지 8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 9. 22. 및 2015. 1. 12.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

성 보장을 위한 예산편성의 독립, 인권위원의 선출 또는 지명절차의 투명성·공정성 보장에 관한 명시적 규정, 인권위원 선출·지명시 심사기준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차 최종견해 8항 (a) 및 (c)와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인이 직접 진정을 제기하려면,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서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된 것을 더욱 확대하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제2조 규약이행을 위한 일반 의무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국가보고서 안 10항, 11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정책협의회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방안 등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시민사회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추진체계에서 어떠한 자격과 절차를 통하여 협력하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차별금지

국가보고서 안 14항과 관련하여, 제3차 최종견해 9항에서 차별의 모든 근거들을 분명하게 적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으므로, 차별금지법 제정 동향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 정부안이 폐기된 이후, 2013년 2월 구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안

을 다시 발의하였으나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들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사실, 2012년 11월 구 통합진보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실 등 구체적인 현황에 관하여 보고함과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국가보고서 안 15, 16항과 관련하여, 성인지 관점 적용과 관련한 주요한 성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도화 되어 있는 국가가 없다는 점 및 입법에 있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제도 명칭만을 나열하고 있어 제도 시행의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4) 인권교육

국가보고서 안 17, 18항과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 제26조, 「비엔나 선언」 제33조 및 2011년 제66차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은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제7조는 국가 및 관련 정부부처가 인권교육훈련의 개발, 실행, 증진을 보장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는 인권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아직 인권교육을 위한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아 종합적, 체계적 인권교육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5) 난민

국가보고서 안 19, 20항과 관련하여, 제3차 최종견해 10항은 난민 및 망명신청과 관련하여 채택한 조치 및 관련 정보를 제4차 국가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난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 주거시설 지원 등 난민법상의 제도만을 추상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제도 운영 내용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난민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주거시설·의료 등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의 보장 등에 관한 현황을 보완하여 구체적인 제도 실시 현황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6) 결혼이주여성

국가보고서 안 21 내지 23항과 관련하여, 2014년 통계청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고용률은 47.2%로 나타났지만, 취업한 결혼이주여성의 48.6%는 임시·일용직에서 일하고 있고, 남성에 비해 임금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정부에서 양성·알선하고 있는 일자리마저도 비정규직이거나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고용조건 및 임금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보완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

다. 제3조 양성평등

(1) 양성평등조치

국가보고서 안 26, 92항과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1년간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 및 육아휴직급여의 상향 조정,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파트타임일자리 확산정책의 추진 등으로 답변하고 있

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2014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 휴직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대비 41.2%에 불과하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자료에 의한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을 살펴 보면 출산휴가자수는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육아휴직자 중 남성근로자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2014년 기준으로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성평등적인 일·가정 양립이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파트타임 일자리의 저임금,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 등을 함께 지적하는 추가적 기술이 요구된다.

(2) 공공보육, 학교급식, 아동양육시설 등 사회서비스 확장

국가보고서 안 28, 89항과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의 통계자료(미주 xi. 어린이집 현황)는 전체 어린이집 현황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발표 「2014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4. 12. 31. 기준 전체 43,742개소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 2,489곳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5.7%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각 어린이집의 종류에 따른 어린이집 현황, 이용 아동수 현황 및 각 어린이집 종류별로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수 등에 관한 자료를 보완하여 구체적인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보육교사 양성체계와 처우개선 문제 등 제도의 한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만 0세~5세까지 모든 아동에 대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급 및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3~5세 유아누리과정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2015년 5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한도를

증가시켰으나 이를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등 예산 관련 현
황이 변경된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

라. 제6조 노동할 권리

(1) 여성노동시장 참여 증대 및 청년고용촉진

국가보고서 안 29 내지 32항과 관련하여, 제3차 최종건해 14항에 따
라 국가보고서에는 일·가정 양립이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이후 여성의 경
제활동 유지 효과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인지 등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실업감소대책

국가보고서 안 33 내지 36항과 관련하여, 국가보고서에서는 실업감
소대책의 효과를 알 수 있도록 고용이 6개월 또는 1년 이상 장기간 유지된
비율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업감소대책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 설명
과 정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어야 하고, 제3차 국가보고 이후 전체
실업률의 증감추이, 연령·성·지역·학력별 실업률의 증감 추이 등 실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통계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3) 부당해고

국가보고서 안 37항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의 이행강제금이 2천만원 이하로 비교적 높지 않고,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
벌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구제명령의 이
행강제금 관련 통계와 불이행시 형사처벌에 관한 통계를 함께 제공할 필요

가 있다.

마. 제7조 근로조건

(1) 최저임금

국가보고서 안 43 내지 45항과 관련하여, 2009년 3월 이후로 감소 하던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013년 8월 209만 명(11.4%)에서 2014년 8월 227만 명(12.1%)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에서 보고되고 있으므로, 국가 보고서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근로자에 관한 현황,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관한 현황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근로조건 및 일·가정 양립

국가보고서 안 46 내지 51항과 관련하여, 정부는 일·가정양립 및 여성의 고용율 제고를 위하여 시간제일자리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 8월 통계청 발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기준 15세 이상의 시간제근로자는 203만 2천명(15-64세 152만5천명)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10만 명 내외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여성취업자 비중이 71.1%이다. 시간제근로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위해서는 시간제근로자의 임금, 사회보험 등 근로조건, 차별시정제도 등 기본 고용통계 및 제도에 대한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3)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및 비정규직 대책

국가보고서 안 52 내지 55항, 57, 58항과 관련하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로 확인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추이,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이, 고용형태별 임

금·근로시간·휴일 등 근로조건,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 적용 관련 통계 등 제3차 국가보고 이후의 기본적 통계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차별시정제도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2014년 9월부터 노동위원회 차별시정명령의 효력이 사업장 내 유사 사례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병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점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효과가 사업장 내 다른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게도 효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차별시정제도를 이용하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이 매우 적고 인용률도 낮다는 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부재한 점 등 현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2014. 8. 27 발표 “2013~2014년 상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실적”에 의하면 동 전환기준에 의한 전환 대상자(26%, 65,711명)보다 제외자(74%, 185,878명)가 많은 점, 통계청이 발표하는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하면 2011년 5.9%(99,643명)에서 2013년 6.4%(111,940명)로 지난 몇 년 동안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한 점 등에 대한 현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4) 산업환경

국가보고서 안 62 내지 66항과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의 내용만으로는 산업안전과 관련한 법·제도상 변화 및 그 효과를 전체적으로 파악

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3차 국가보고 이후 산업안전 관련 법령의 강화내용, 정부정책 등을 보완하고, 그간의 추이를 살필 수 있도록 산업재해율, 산업별·규모별 재해율, 산재보험 신청 및 인정 건수, 산업안전감독관수, 지도·감독건수, 적발 및 처리현황 등 산업안전 관련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감독관 전담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도입 후 사고성 재해가 2013년 한해 약 25.7%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의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 도입 후 감독관 1인당 관리사업장수 및 감독건수, 감독내용 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현황, 적발 내용, 사후 처리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2010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해본 적이 없다는 외국인근로자가 73%에 달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바. 제8조 노동3권

(1) 노조결성권 및 노사교섭

국가보고서 안 69, 70항과 관련하여, 노동3권 보장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3권의 주요 항목별 이행사항, 현재의 법제도 및 법집행과정에서 노동3권이 제한되는 실태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 있다.

제3차 국가보고 이후 공무원, 교원, 교수의 노조결성권의 보장 현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제3차 최종견해에 따라 상세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13. 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2013. 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및 2014. 9.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효력정지 처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2015. 5. 28.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등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결성권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2) 쟁의행위보장

국가보고서 안 71 내지 73항과 관련하여, 제3차 최종견해는 당사국이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권고한 바, 국가보고서 안과 같이 업무방해죄 적용기준을 추상적으로 기술함에 그치지 말고, 파업으로 인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건수에 대한 변화추이,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차 최종견해에 권고한 ILO 협약 제87호, 제98호의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 또는 계획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고용허가제 제고 및 이주노동자 노조결성권

국가보고서 안 74항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최초 3년의 취업활동 기간 내에 3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될 경우 2회 총 5회의 사업장 변경 기회 및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이주노동자에게 있고 입증 과정이 까다로워 실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보완하여 고용허가제의 운용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 최초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인 Migrants' Trade Union 결성과 관련하여, 2007년 서울고등법원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를 다시 노동부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동 사건이 대법원에 8년째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사. 제9조 사회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국가보고서 안 76, 77항과 관련하여, 2014. 12. 30. 개정되어 2015.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된 수급자 선정 기준, 개편된 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추가적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위 법 개정으로 인하여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한 제도적 성과를 국가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하는 2014년도 「한국빈곤통계연보」에 의하면 2009년 대비 2013년 빈곤율은 크게 변동이 없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 2013년 기준 수급률이 2.7%에 불과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에서 활용한 통계자료(미주 xxxvii, xxxviii.)는 단순히 각 수급자 수 및 그 추이만 보여주

는 것으로 빈곤층 규모 및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해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규모, 각 비수급의 추정 원인, 전체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제시가 필요하다.

더불어, 국가보고서 안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추어 개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수급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 제도 완화의 한계를 기술함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의 소득환산율과 추정소득 제도 관련 규정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제도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노숙인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실제 거주 사실을 보장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여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나,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상 실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보건복지부 통계인 각 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주거미입력이나 비닐하우스 가구의 수의 합계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이에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의료급여

국가보고서 안 78항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의 절대 빈곤층의 비율은 7%가 넘는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2013년 기준 전체 인구의 3%에 그치고 있고, 국민건강보

협공단의 「2012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도 1종의 경우 본인 부담금 비율이 전체 의료비의 5.9%, 2종의 경우 7.6%로 보고되고 있어 빈곤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의료보장은 빈곤층의 복지욕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절박한 욕구라는 점에서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정에서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 및 보호대상 확대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진전상황이 있었는지를 보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3) 긴급복지지원제도

국가보고서 안 79항과 관련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긴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빈곤층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국가보고서 안에서 제시된 자료(미주 xxxix. 긴급복지지원 실적)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가구수와 지원금액을 총액으로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지난 2014년 12월 개정된 내용을 보완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지원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사회보험지원 및 고용보험 확대

국가보고서 안 80, 81항과 관련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만을 기술하고 있는바, 고용보험에서 적용제외 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농어민 등 적용대상이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규모 등에 대한 통계를 보완하여 기술할 것이 요구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

국가보고서 안 56, 82, 83항과 관련하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

도 상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운데 약 40% 정도만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고 있고, 산재보험적용대상이 되는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한 적용제외신청제도 및 보험료 부담(1/2)으로 인해 실제 적용률은 10%에 불과하다. 실제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2014. 10. 26.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6개 직종(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록종사자수는 2014년 8월 기준 435,186명이고, 이 가운데 실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종사자수는 42,387명으로 전체 등록종사자의 9.73%만이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6) 국민연금 및 노인에 대한 보편적 최소연금 등 정책

국가보고서 안 84 내지 86항, 94항과 관련하여, 제3차 최종건하는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안적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현행 기초연금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기초연금제도로 바뀌면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선정기준액을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인에게 지급시 수급액이 감액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유기적으로 설명하여 개편된 제도에 관한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 2,218만 2천명 중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가입자 통계자료에 의할 때 국민연금 적용대상자는 1,982만 3천명이고, 이 가운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

하거나 납부예의자는 541만 7천명, 경제활동인구 중 비적용자는 82만 8천명, 비경제활동인구로서 비적용자는 1,061만 1천명에 이를 정도로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다.

(7) 장애인 소득보장

국가보고서 안 87항과 관련하여, 장애인연금의 대상범위는 2014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은 현재 월 최대 20만원으로 근로능력 저하로 인한 소득보전이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인 23만 5천원(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한 중증장애인 기준)의 보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국가보고서에는 장애인연금의 대상범위 확대 및 소득보전이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수준에 근접하기 위한 급여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기술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보고서 안에는 장애수당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는데,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은 2015년 4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12만 4,700원(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 소득보장의 현실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아. 제10조 가족에 대한 보호

(1)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

국가보고서 안 91항과 관련하여, 장애인 지원 정책 중, 교통 요금 감면 및 무료승차, 전화요금 감면, 대학입학 특례 등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닌 민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교통요금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관련

되어 있는 것은 철도와 지하철이며, 항공과 선박은 민간 지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지원이 없다는 점을 정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2) 아동 보호 및 지원

국가보고서 안 93항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근로 보호정책과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에는 연소자 근로 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등의 정부 조치만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근로기준법」 개정, 청소년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사업주 대상 교육, 손님 이 적은 시간에 휴식을 지시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꺼기’ 실태에 대한 파악 및 이의 근절방안 마련,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 필수화 등 정책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게 권고하였지만, 이러한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한국의 연소자 근로실태, 처우 수준,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해 보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21.6%에 불과하고,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경우가 27.2%, 성희롱·성추행 등 성적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5.6%인 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현황이 열악함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3) 이민자의 가족결합

국가보고서 안 95, 96항과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은 일정한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족재결합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히

고 있으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최장 9년 8개월 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가족결합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 기술이 필요하다.

(4) 가정폭력

국가보고서 안 100 내지 103항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쉼터에서 퇴소한 후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독립하려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폭력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 9. 29.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에 관한 추가적 기술이 필요하고,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율,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상담실적 및 확정판결 실적 등 가정폭력 실태 및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5) 인신매매 및 E-6 비자 발급 모니터링 강화

국가보고서 안 104 내지 108항과 관련하여, 예술홍행비자 소지 이주여성들이 인신매매나 성매매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201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인신매매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2012년 여성부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술홍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 조사」 등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므로 예술홍행비자

소지 여성들의 인신매매·성매매 등 인권침해 사례 관련 자료 및 정부차원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보완하여 설명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예술홍행비자 발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는 제3차 최종견해 대하여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예술홍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50%가 근로조건 위반을 경험하였고, 46%가 여권을 압류 당하였으며, 23%가 성매매를 강요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부의 합동점검이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와 사후처리 등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 필요하다.

자. 제11조 생활조건의 개선

(1) 빈곤대책

국가보고서 안 112, 113항과 관련하여, 2014. 12. 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전물량방식으로 산출하지 않고,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었고 최저생계비 개념은 더 이상 급여의 보장수준이나 실질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변화된 현행 제도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필요하다.

제3차 최종견해에서 요청한 바에 의하여, 성별, 연령, 가구당 아동수, 미혼모 가구수, 농촌·도시 인구 및 소수민족 그룹 등으로 분류된 매년 빈곤생활인구의 비율에 관한 최신통계자료를 포함하여, 빈곤정책의 시행결과에 관한 상세한 보고가 보완되어야 한다.

(2) 노숙자 문제해결

국가보고서 안 114 내지 116항과 관련하여, 제3차 최종견해는 노숙인에 대한 원인분석, 적정한 사회보장전략의 수립 및 성, 연령, 도시·농촌 지역통계의 집계를 요청하였으나,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법 제정, 기초수급 제도의 탄력적 적용, 주거, 의료 및 자활 등 종합적인 조치 수립 등 그 동안의 진전사항을 단순히 기술하는데 그치고 있어 노숙인 관련 현황에 관하여 제3차 최종견해에 요청한 내용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보고할 필요가 있다.

(3) 주거권

국가보고서 안 120 내지 126항과 관련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지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2014년 '주택기금포털'을 신설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실시간 입주 정보 및 입주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대주택포털'과 같은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진전된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제3차 최종견해에서 취약·소외 계층에게 임대안전성의 보장 및 적정수준의 주거를 제공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 충분한 예산 배분을 권고하였으므로, 전체 청년 주거취약계층 대비 수혜대상 비율 등의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정책 효과를 제시함이 바람직하다.

제3차 최종견해에서는 성별, 연령 및 가구별로 세분화된 연간 통계 자료를 포함하여 주거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국가보고서 안에서 활용한 통계자료는 권고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 총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 실태 조사」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도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추이 등

보다 상세한 통계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4) 강제퇴거

국가보고서 안 127 내지 129항과 관련하여, 주거이전비 지급, 철거민에 대한 임시거주지가 제공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 현황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차 최종견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시 수행된 강제퇴거의 범위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보고서 안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하여 기술이 필요하다.

차. 제12조 건강권

국가보고서 안 130 내지 132항과 관련하여, 제3차 최종견해에서는 의료서비스에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모든 종류의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를 하였으나,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 또한 위축되고 있는 한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사업' 및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여전히 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높고 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보편적 의료서비스 구축 및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설명과 빈곤층의 의료이용 현황과 문제점, 의료급여 사업의 성과 및 효과, 한계점 및 향후 개선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카. 제13조 교육권 및 제14조 무상초등교육

(1) 경쟁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 대책

국가보고서 안 138, 139항과 관련하여, 2015.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아동의 주관적 웰빙수준과 정책과제」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 학업스트레스 지수가 50.5%로 유니세프 조사대상 29개국 중 1위(평균은 33.3%), 생활만족도는 18.5%로 30개국 중 26위(평균은 26.7%, 1위 아일랜드는 42.5%)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과 학생 개인의 적성이나 개성과 특기 등을 존중하고자 마련된 여러 정책과 예산배분 등 진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이 필요하다.

(2) 고등교육 : 대학등록금 경감대책

국가보고서 안 141, 142항과 관련하여 대학등록금 경감대책의 핵심은 이른바 반값등록금인바, 국가보고서 안에는 이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어 있다. 대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은 근본적으로 대학등록금을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유예하는 것으로, 이를 대학등록금 경감의 진전상황으로 기술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지급총액으로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기 보다는 전체 학생 중 수혜자 비율의 증감추이를 함께 보여주는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

(3) 소수자 및 소수아동교육

국가보고서 안 145 내지 147항과 관련하여, 다문화 가족의 증가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등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권에 대해서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들 아동들의 동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및 교육 실태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고 정부의 대책 및 제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4) 장애교육

국가보고서 안 148항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학급당 학생정원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사 배치 기준 등을 설명하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및 수혜자 총수만을 나열하고 있어 개선 정도 및 정확한 실태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 수요 전체대상자와 실제 수혜자를 대비한 통계자료, 장애 종류별 수혜 비율의 변화, 각급 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개선 투자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013년 교육부가 발간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학교들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 장애 학생들의 교육여건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

타. 제15조 문화적 생활에 관한 권리

(1) 문화소외계층·지역 지원

국가보고서 안 150항과 관련하여,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만 기술되어 있고, 장애인방송의 편성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술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지상파의 경우 2016년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은 목표치가 10%, 청각장애인

을 위한 자막방송은 100%, 수화방송은 5%이고, 케이블 유료방송은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을 하고 있다면서 연도별 보급대수만 통계치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 보급대상 장애인 중에서 연도별 보급률이 몇 퍼센트인지에 대한 비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2) 예술인 복지

국가보고서 안 157항과 관련하여, 「예술인 복지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단순히 제도에 대한 나열보다는 2년간 예술인들에게 지급된 각종 지원금 수혜자 및 지원 금액, 상담 건수와 상담 후 조치 내용, 출연료 미지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통계, 소송비용 지원 사례 등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구체적인 성과와 실태를 보여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3) 과학기술

국가보고서 안 161항과 관련하여,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아 및 유전자 등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생명윤리 정책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확대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법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생명윤리 정책의 구체적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권 규약 이행상황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 안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7호, 제21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5. 5. 26.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유 영 하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한 위 수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이 선 애

위 원 최 이 우

위 원 이 은 경

위 정본입니다.

2015. 6. 19.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사무관 최진열 (인)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자료집

3. 유엔 사회권규약 이행에 대한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대한 제4차 국가보고서

2016. 5.

대한민국 정부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1.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함)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동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보고서 작성 지침(E/C.12/2008/2), 유엔총회 결의 62/268 및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최종견해(E/C.12/KOR/CO/3)를 참고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취한 규약 이행 조치를 기술하였다.
2. 특히 유엔총회 결의 62/268에 따른 분량의 제한에 따라, 규약의 이행조치는 제3차 보고서 심의 후 위원회가 채택한 최종견해 권고의 이행에 관한 사안을 주로 제시하였다.
3. 보고서는 관계 부처의 자료를 토대로, 규약위원회 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법무부가 총괄하여 초안을 작성하였고, 초안에 대해 2015년 4월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거쳤다. 한편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따라, 작성한 초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6월, 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시민단체의 의견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 초안을 수정, 정부의 최종보고서를 마련하였다.

일반 사항

규약의 효력

4. 위원회의 최종견해 제6항과 관련하여, 헌법은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권리의 속성상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는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및 학계의 태도이다. 또한 우리 헌법에는 규약 상 권리가 모두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37조에서는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권리라 하더라도 경시될 수 없다고 하여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보며 헌법상의 사회보장권도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는 권리라고 보고 있다.

5. 국내법원이 규약 상 권리를 원용해 내린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대우에 관한 결정’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4헌마670 결정)에서 동 규약 제2조 제2항의 차별금지원칙과 제2조 제1항 및 제4조를 원용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 근로자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의 주요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노동부 예규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법 규정이 동 규약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7. 8. 30 2003헌바51결정).

셋째, 이주노동위원장이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명령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하급심 법원은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세계인권선언」 제2조 제1항 및 제23조 제4항,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1항 및 제26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의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우리 사회에 편입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인정된다고 봄이 옳다”고 하여 동 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한 판결을 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1. 9. 15. 2011 구합 5094 판결).

국가인권기구

6.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된 권고 8항과 관련하여 2012. 3. 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이 확대되어, 각급 학교와 공직유관단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인권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원장의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7. 2009년 당시 인권위 직원 정원 164명은 2014년 현재 191명으로 확대되었고, 인권전문성을 감안하여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직원을 선발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9. 및 2015. 1.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 위원에 대한 심사기준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하는 한편, 인권위 임명에 관여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인권위원 선출·지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권고하면서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 규칙(2014. 12. 22. 제정)에 따라 위원 중 공석이 발생되기 3개월 전, 공석을 알리고 일반 대중

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임명권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인권위가 권고한 법안은 2016년 1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8.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정책권고('10. 7.), HIV감염인 수용자 관리에 관한 의견표명을 통한 감염인 차별금지('13. 1.), 여군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에서 일가정양립을 위한 모성보호제도 여건개선과 의료서비스 체계 보완, 성희롱 예방, 차별금지 등을 권고하였으며('13. 10.), 비정규직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학교비정규직 처우향상 정책개선권고('13. 3.) 및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정책개선 권고('13. 8.),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개선 권고('12. 5.), 최저임금준수를 제고 방안 마련에 관한 정책권고('13. 5.) 등 근로조건에 관한 권고, 노령연금 확보와 노인친화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노인의 건강권 보장 권고('13. 1.),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인권상황 정책권고('13. 11.), 노숙인 주거권 및 의료권 보장과 일자리 정책 추진 권고('13. 1.)등의 권고를 통해 규약상 권리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가입

9. 위원회는 최종견해 제36항 및 제38항에서 각기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비준을 고려할 것을 독려했다. 정부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가 개인진정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사회권규약상 규정된 권리에 대한 국내구제절차의 현황과 국내법적 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경우는 외국인의 출입국, 사회복지제도, 고용제도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비준을 추진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 정부의 관할 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차별을 금지하고, 외국인들의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강화해가고 있다.

제2조 규약이행을 위한 일반 의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국가인권정책협의회

10. 위원회의 권고 이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07년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5년간의 1차 계획 이행이 종료된 후 2012~2016년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는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 및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등에서 우리 정부에 권고한 사안을 검토하여 정책과제에 반영한다.
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행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2012년 이행상황평가 시부터 국민평가단이 보다 객관적이며 직접적인 정책수혜자의 시각에서 이

행상황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모든 조약 이행 국가보고서 심의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결과를 국가인권정책 협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협의회에서는 유엔 권고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인권정책과 실효성있는 권고 이행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시민사회와 협의를 강화하는 등 인권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발원조(ODA)

12. 권고 제7항 이행 관련, 개발원조 수혜국에서 지원국이 된 대한민국은 보다 체계적인 개발원조사업을 위한 기본법을 지난 2010년 제정하고, OECD DAC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그 지원규모를 계속 증대해가고 있다. 2014년에는 GNI 대비 0.13%를 지원하였으며, 양자·다자원조의 배분 비율은 75.2:24.8,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비율은 36.7:63.3 수준을 기록하였다. 소득그룹별로는 2014년 기준, 총 양자원조의 34.8%가 하위중소득국에 배분되었으며, 최빈국에 38.8%, 상위중소득국에 10%가 지원되었다. 2013년 우리정부의 ODA 규모는 약 2조 411억원이고,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한 약 2조 2,666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현재에는 GNI 대비 0.7%에는 미치지 못하나 그 증가추세는 2003년 4,357억원에서 10년 후인 2012년에는 1조 7,986억원으로 약 312.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차별금지

13.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모집·채용 분야는 2009년 3월, 그 외 분야는 201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연령차별적인 모집·채용 관행 개선을 위해 2013년 관련 광고 7,365건에 대해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48건의 위반사례를 발견하여 134건에 대한 경고, 11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였다.
14. 위원회의 권고 제9항 관련, 정부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관련된 입법사례 및 적용실태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새정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 중인데, 차별금지 사유 등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어 입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15. 위원회의 권고 제11항의 이행 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 운영되었다. 201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제·개정,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 제도는, 2006년도에 국가재정법 제정 시 근거를 마련하여, 2010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업 수 및 예산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어, 대상 사업 수가 2010년 195개에서 2015년 343개로, 그리고 예산규모도 같은 기간 7조 3,144억원에서 26조 626억원으로 18조 7,482억원(정부안 기준) 증가하였고, 이는 2015년 전체 정부 총지출의 6.9%에 해당된다. 이러한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작성 기관의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이에 기반한 성과목표 설정,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변경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연계 강화, 그리고 작성 담당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 및 작성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작성내용을 내실화하였으며, 그간 성인지 예산을 총괄하는 추진주체가 불명확하여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4년에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성인지 예·결산 관계부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2012년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사업을 시행하였고, 그해 최초의 지방 성인지 예산인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가 지방의회에 제출되었다. 2015년 제출된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43개 중앙행정기관의 332개 사업, 예산규모는 27조 7,602억원으로서 2015년 대비 예산규모는 5.8% 증가하였다.

16.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정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정책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해당 기관에 개선 권고를 함으로써 정책개선 효과를 높이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분석평가책임관을 두어 체계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인권교육

17.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교육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희롱(1999년), 성매매(2008년) 예방교육에 이어 성폭력(2013년), 가정폭력(2014년) 예방교육에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민간사업장 종사자, 농산어촌 주민 등 일반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강사 파견을 통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에게는 학교에서 성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8. 인권교육은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에서 각 소관 사항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법원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결성하여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2013년에는 법무부의 국제인권법 연구회와 공동으로 국제인권법과 차별금지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법무부는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인권 모의재판” 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난민

19. 권고 제10항 이행조치로서, 정부는 2012년 2월 난민인정절차의 효과성, 공정성, 신속성을 기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상 난민 등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 7월부터 시행중이다. 동법의 집행 및 난민정책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 내 난민과를 신설하였고,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 심의를 위해 공무원 및 난민신청이 많은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난민인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20. 또한 「난민법」에 생계비 지원,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보장 등 난민신청자와 그 가족들의 처우를 규정함에 따라, 난민신청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경제적 여건, 부양가족 유무 등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일정금액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취업을 허가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 2월부터 초기 난민신청자의 주거와 생계지원을 위한 난민지원시설을 운영하여 이들에게 주거와 국적·종교를 고려한 식사 제공, 언어교육, 법제도 등 국내적응교육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 건강검진과 응급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21. 권고 제12항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힘써왔다. 2014년 1월 현재 결혼이주여성은 24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가족갈등·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인종적·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정착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06년에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갖추었다.
22. 결혼이주여성이 처음 입국할 시에는 2009년 7월부터 영주권·국적취득절차, 가정폭력예방 및 구제기관 등을 안내하고 있고, 기초법률 및 생활지식 등 한국사회 정착

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2010년 10월부터는 국제결혼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상대국가의 제도·문화, 국제결혼 관련 법령 등을 교육하고 있다.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한국어교육, 통·번역 서비스, 한국인 예비배우자 사전교육, 가족통합 교육, 취업교육을 제공한다.

23. 2011년 4월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규정을 신설,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 후에도 피해회복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동년 12월에는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을 신설하여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및 이혼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허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더불어,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였다.
24. 한편, 결혼이민자의 장기체류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교육 등 초기적응지원에서 취업지원으로 주된 정책 수요가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결혼이민자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아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직장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취업훈련정보 제공, 일자리 발굴 및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기준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1,460개의 교육 및 연계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참가자 수는 13,858명이었다. 또한 여가부, 고용노동부 등이 협력하여 결혼이주여성 집중거주 지역 고용센터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담당자를 지정하고 결혼이주여성에게 적합한 근무처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사회권 향유를 위한 국제협력

25. 2009년, 한국은 OECD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원조공여국으로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과학기술분야를 비롯, 다양한 분야에서 개도국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권 신장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6. 2006년 4월 ‘한-UNDP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한 것에 이어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11월 UNDP서울정책센터 설립 및 한-UNDP MDG신탁기금 설치에 합의하였다. 이어 2013년 9월에는 ‘한-UNDP 새마을운동 글로벌 이니셔티브 협력협정’을 체결, 보편적인 개도국

농촌개발 모델을 마련하여 이를 적용한 공동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UNDP 양성평등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양성평등제고를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여성권리 증진과 양성평등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제3조 양성평등

양성평등조치

27. 권고 13항 관련,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평등 조치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가) 가족등록제도의 보완

신분정보에 관한 증명서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쉽게 공개되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각 증명서별로 최소한의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를 기본증명서로 하고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기재한 특정증명서제도를 신설하는 등 신청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공개될 수 있도록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4. 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2016. 4.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한부모가정, 이혼·입양경력자 등 신분관계의 노출을 꺼리는 이들의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그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와 고통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일가정 양립, 남성육아휴직, 유연한 근로스케줄 관련 조치

불합리한 성차별적 인사 관행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 3월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적용대상은 계속 확대되었으며, 2013년 5월 전체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어 2013년 12월에는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고용기준을 확대(동종 업종 평균의 60%→70%미달)하고, 2014년 10월에는 업종별 고용특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이행계획을 제출한 기업들 중 미이행사업주에 대한 명단공표제도를 2015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더불어 승진 및 채용 현황을 분석, 결과적 차별이 발생하는 기업 등에 대한 양성평등컨설팅을 확대하였다. 또한 가족친화 인증기업제도를 활성화하고,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일가정 양립, 남성육아휴직 확산 등은 제7조 이하 제46항 내지 제51항에서 기술)

(다) 공공보육, 학교급식, 아동양육시설 등 사회서비스 확장

정부는 결혼,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서비스를 총망라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마음더하기’ 포털 서비스를 2012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보고기간 동안 아동양육 및 보육서비스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3월부터 만0세~5세까지 모든 아동에 대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2003년부터 모든 초·중·고에서 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인프라를 대폭 증대하여 영유아 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에게 접근성 및 편리성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시간제일자리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따라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시간연장형 보육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6조 노동할 권리

여성노동시장참여 증대 및 청년고용촉진(권고 14항)

28. 권고 14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는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음은 아래 46항 이하에서 설명한다.
29. 정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을 확충, 2015년 6월 기준 147개소를 운영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직무적응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15년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를 확대(3→7개)하고, 전문기술·기업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여성근로자의 출퇴근 시간과 비용을 줄여 육아나 자기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센터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등에게 장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30. 또한 청년층의 고용률은 전체고용률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과는 달리 진학과 취업준비 등을 위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며 하락하고 있다. 청년과 기업이 요구하는 학력·자격 격차 등으로 인해 취업난과 구인난이 함께 발생하는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청년층 고용 문제의 특성이다.
31. 정부는 2014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하여, 교육·훈련, 구직·취업, 근속·전직의 단계별 맞춤형 청년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업감소 대책

32. 정부는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2012년부터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취약계층 목표채용비율을 정해 매년 70%이상을

취약계층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특히 연령, 지역, 장애여부 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와 복지사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33. 특히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하였고, 2010년부터 취약계층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사업초기에는 1만명 규모로 시작하였으나 참여자가 급증하여 2014년에는 약 32만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2014년 기준, 동 사업 참여자 중 약 77.9%가 취업에 성공하였다.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하던 제도를 개선하여 2011년부터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취업지원과 직업훈련서비스를 연계하였다.
34. 또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2013년 개정하였고, 법 시행 이전 60세 정년제 조기도입과 함께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확대하였다. 퇴직한 장년근로자가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장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취업이 어려운 장년층에게는 임시직·일용직 중심의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고학력·대기업 등 퇴직 전문인력에게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전문성 및 경험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지원하는 한편 중장년 인턴제를 통해 장년층에게 중소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년층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50세 이상 장년 재직자에 대한 근로자 개인훈련지원을 허용하고,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대상을 기존 90일 이내 이직 예정자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시범사업 실시, 폴리텍 대학의 베이비 부머 특화과정 등 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35. 구직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실업자 및 영세사업자에게 1인당 200만원 범위에서 실훈련비를 지원하고, 단기·서비스 직종 중심으로는 실업자 계좌제를, 장기 훈련으로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7개월 이상 참여한 사람들은 2014년 기준 75%이상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36.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고용률은 2012년 64.6%에서 2014년 65.6%로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동 기간 3.2%에서 3.5%로 소폭 증가하였다. 대상별로 보면 동 기간 동안 고용정책의 핵심 대상인 장년층(55~64세)은 2.6%p, 여성이 1.4%p의 고용률 상승을 보였다.

부당해고

37.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일방적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동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다. 2007년 이전까지는 구제절차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이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일원화하고,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구제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업훈련

38. 정부는 낮은 청년 고용률의 원인 중 하나는 현장과 괴리된 직업교육훈련이라고 보고, 인력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체계로 전환하는 한국형 일학습 병행제를 2013년 9월부터 추진 중이다. 이는 기업이 청년 취업희망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실무·이론 교육을 병행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학습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으며, 이외 근로조건 및 산재적용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39. 또 사업주가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 근로자가 본인의 능력개발을 위해 참여하는 훈련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기업 자체 또는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소속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연간 4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40. 그러나 중소기업의 근로자 훈련 참여율이 대기업에 비해 낮아 이러한 훈련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등 중소기업 특화사업을 도입하였고, 2014년에는 훈련격차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41. 한편, 근로자에 대한 직접 훈련 지원은 근로자가 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사업주로부터 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근로자이다. 또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를 대부하는 사업을 2013년까지 추진하였고, 2014년부터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부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장기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으로 인해 단기훈련에 치중할 경우에 장기적이며 양질의 훈련을 받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정규직 및 전직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대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2. 향후 직업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이직·전직 지원이 필요한 중장년층에 대한 훈련,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청년층 근로자 지원훈련, 고숙련 훈련 등을 우대 지원하면서, 재

직자 직업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특히 그 훈련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토대로 개편하여, 직업훈련과 직무의 연관성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제7조 근로조건

최저임금(권고 16항)

43. 최저임금 결정절차는 3차 보고서 제121항을 참고바람. 최저임금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그 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3년부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므로 숙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히 권고 제16항에 언급된 2009년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하는 의원발의 법안은 폐기되었다.
44.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사업장 근로감독 시 필수점검항목이며, 특히 위반사례가 많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 교사, 기업노무담당자, 공인노무사 등 민간퇴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를 구성하고, 또래 청소년을 ‘알바지킴이 청소년 리더’로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업종별 협회·프랜차이즈 업체와의 간담회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고등학교, 대학교, 청소년 단체 등에 알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모바일 웹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운영 등 다양한 신고체계도 마련하였다.
45. 한편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법처리 절차가 상당한 기일동안 진행되고 실제 부과되는 벌금액 수준도 낮아 현장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적발되면 시정한다는 관행이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최저임금법 위반 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여 사업주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근로조건 및 일·가정양립(권고 13항)

46. 한국의 고용상 남녀격차는 출산·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어 여성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경력단절을 겪어 질 낮은 일자리에 근무하게 되는

데 주요 원인이 있다.

47. 지난 보고서에 제출한 바와 같이 2007년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확대하고, 2014년 2월 범정부 차원의 여성의 경력유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가정 양립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48.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1년간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2010년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 3세 이하에서 만 6세 이하로, 2014년에는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여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2011년에는 육아휴직 시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40%(월 50~100만원)로 상향하였다. 또한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고용유지비용 지원금을 상향하여, 대기업은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 중소기업은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을 지급한다.
49. 일과 육아의 병행을 위하여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2008년 도입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2011년 시작하였다.
50. 또한 직장의 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특히 중소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형, 산업단지형 어린이집에 대해 최대 1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51. 이러한 정책의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9년 53.9%에서 2015년 57.9%로, 여성고용률은 52.2%에서 55.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임으로써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2014년 10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 1개월분을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하였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및 비정규직 대책(권고 15항)

52. 남녀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으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여성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남녀의 임금격차는 2014년 기준으로 37%로서 그 격차가 점차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53. 위원회의 권고 제15항과 관련, 정부는 차별시정제도를 활성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54.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피해 근로자가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차별시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차별시정제도를 이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적고 인용률도 낮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12년 8월부터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하여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후 절차는 근로자가 신청한 사건 처리 절차에 준한다. 또한 2014년 9월부터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시정명령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은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외에도 해당 사업 내 동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유무를 확대·조사하여 차별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차별이 제도적 요인에 기인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에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 등의 제도개선명령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정규직(주로 기간제) 다수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2년에는 108건, 2013년에는 131건, 2014년에는 60건의 차별사례를 적발하여 시정지도를 하였다.
55. 2011년 9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업의 인력 운용의 유연성은 보장하되, 비정규직이 동종·유사 업무를 하면서도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복지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 8개 법률 개정안이 2012년 2월 공포되었다.
56. 또한 2012년부터는 퀵서비스기사·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으며,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3만1천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2011년 11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비정규직 다수 활용 사업장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12년 2월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125만원 미만 보수를 받는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57. 이러한 차별시정제도와 지속적 지도·감독의 결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비율과 성·연령·학력·근속년수·직종 등 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감안한 시간당 임금총액 비율은 최근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다.
58.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자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후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과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하고, 기간제·파견·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2015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50%(월 60만원 한도, 공모사업)를 1년간 지원하게 된다.

59. 한편 법원은 2년간 근로계약 종결 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사건에 있어 기간을 정하는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판결),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원에의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작업장 내 성희롱(권고 17항)

60. 직장내 성희롱을 처벌하는 것은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여타 범죄행위의 유형과 처벌 등에 견주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으로 성희롱 금지 및 사업주의 예방교육 의무 등을 규정하고 근로감독관을 통한 진정사건 처리 및 여성고용환경개선 지도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사업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화하였으며 2012년에는 직장 내 성희롱신고 대표전화를 개설하였고, 모바일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61.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업무를 수행하며, 성희롱사건으로 인정하는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게는 특별인권교육, 행위자 소속기관에게는 징계 및 인사조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행위자 소속기관 또는 유관부처에게는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권고 조치를 취하여 실질적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권위의 성희롱 구제권고가 불수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언론에 공표하거나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성희롱 진정사건 사례집(2007, 2009, 2010, 2011)과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2012)를 발간, 배포하여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과 요건을 정립하고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산업환경

62.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 권고 제18항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였다. 2009년 이후 꾸준한 증원 결과 2014년 산업안전감독관 수는 22% 증가, 산업재해율은 24% 감소하였다.

63.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해 지역특성화교육, 사내안전보건교육, 이동안전보건교육,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지난 5년간 4,300,317명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2011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2014년 말까지 총 1,449,364명의 건설근로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론위주에서 실습과 사례 중심 교육으로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50인 미만 서비스업종 중 재해다발 6대 업종에 대해 교육실시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 3억 미만 건설현장, 서비스업 중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지도사업을 통해 재해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64. 산업 분야별로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2011년에 근로자 100인 이상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이행계획서를 사업장특성에 맞게 작성·이행토록 하고 고용부는 이들의 이행수준을 확인·평가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원청업체를 통해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재해 위험성이 높은 위험기계·기구를 제도단계와 사용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 안전성을 확보하는 안전인증, 안전검사 제도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를 도모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고위험·중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관 전담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대상사업장은 화학물질 다수 취급 사업장, 건설현장, 크레인 등 사망사고 유발위험 사업장, 기계 설비 다수 보유 사업장 등 1만개소이다. 전담관리사업장에 대한 재해현황 분석결과, 사고성 재해가 2014년 한해 약 13.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65. 외국인근로자는 소규모업체에 주로 취업해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산업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12년 산업안전공단은 “외국인근로자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주로 취업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안전보건 자료 보급,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고용허가제 및 시행기관과 연계가 미비하여 사업 효과성이 저하되고, 안전보건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고용허가제와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연계·통합하고 각 제도 운영기관을 연계하는 정부차원의 산재예방대책을 2014년 5월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기술지원대상 선정 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우선 지원기준에 반영하여 기술 및 재정지원 사업을 집중하고 있으며, 실습형 안전보건교육 실시, 교육운영의 현장성을 강화하였고, 안전보건 미디어자료 50여종을 13개국 언어로 개발하여 외국인 고용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건강센터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
66. 또한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강제근로금지, 중간착취의 배

제, 금품청산 등의 근로자 권리구제 조항이 존재하며, 이러한 규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들도 이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고 있다.

제8조 노동3권

67. 근로자의 근로3권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되고 있으며,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결성권 및 노사교섭 등에 대해서는 3차 보고서 제149항-160항에 설명한 바와 같다.
68. 위원회의 최종견해 제19항 및 제20항의 권고와 관련, 2010년 1월 1일부터 교원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여 교원노조별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위원회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등을 비준할 것을 고려하라는 권고를 하였는데, 여전히 공무원 노조가입범위·실직자 노조가입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현행 법제도가 ILO협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와 ILO의 이견이 존재하므로 비준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조결성권 및 노사교섭

69.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여 2011년부터 사업장 단위의 복수 노조설립이 허용되었으며, 사업장 내에서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였다. 교섭창구단일화는 1차적으로 자율적 단일화를 시도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공동교섭 대표단을 결성한다. 교섭대표 노조 및 사용자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하여 소수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2012년 헌법재판소는 동 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2012. 4. 24. 결정 2011헌마338).
70. 노조설립 및 운영 관련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및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으며 2011년 9월 ‘부당노동행위 사이버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1월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중대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시정지시를 생략하고 즉시 수사를 개시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조치기준을 개정하였다.

쟁의행위보장

71. 권고 제20항 관련, 2008년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을 사전적으로 금지하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어 원칙적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서도 파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관계 당사자는 자율교섭을 통해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최소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교섭 결렬 시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72.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며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개인에 대한 압류는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
7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쟁의행위가 목적, 절차, 방법에 있어 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각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는 경우에 국한된다.

고용허가제 제고 및 이주노동자 노조결성권

74. 권고 제21항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보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2009년 12월부터 사업장 변경 신청 후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기까지의 기간이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었고, 임신·출산·질병 등 사유로 새 사업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더 연장해주고 있다. 2012년 7월부터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기산되지 않는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대,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부당처우 등을 이와 같은 사업장 변경 사유에 포함하였다.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다. 한편, 2015. 6. 25. 대법원은 정부가 불법 체류외국인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한 사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불법체류 외국인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판결 이후 2015년 8월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받아들였다.

제9조 사회보장

75. 사회보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는 3차 국가보고서 제176항 내지 제219항 참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76. 권고 제22항의 부양의무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검토와 관련하여,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인식과 현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해당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수급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였고, 이 정책은 2013년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에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2013년에는 부양의무자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는 기본재산액을 대도시는 약 1.7배, 중소도시는 약 1.25배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재산 중 주거를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약 4배 완화하였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개별 지원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하여 2014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하였다. 개편된 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소득기준이 4인가구 기준 297만원에서 485만원으로 대폭 완화되어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단일 선정기준이 급여별 계단식으로 변경되어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77. 권고 제22항 관련, 노숙인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없어 일반 수급자와 같은 기준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도 실제 거주 사실을 해당 지역 보장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여 다른 수급자와 같이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대신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다.

의료급여

78.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는 제3차보고서 제 197항~198항을 참조할 것. 2010년에는 고가의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 진료에 대

한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인정대상 질환을 확대하였으며, 2012년에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상향 조정, 75세 이상 노인들니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노숙인에 대한 의료급여 제공을 실시하였다. 2013년에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급여를 실시하였고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혜택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일원화하여 의료급여1종 자격을 부여하고 본인부담을 면제하였다. 2014년에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고가 항암제 등 급여 확대), 비급여 부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선택진료 비용 축소·4·5인실 상급병실 급여화) 및 선별급여를 도입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인정질환을 확대하였다. 또한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급여를 적용하였고 2015년 70세, 2016년 65세까지 대상연령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노인들니의 급여대상 연령도 동일하게 확대 예정). 기초생활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2015년 7월부터 13만7천명이 국민기초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되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79.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서 「긴급복지지원법」을 2005년 제정, 2006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제도에 따라 일정 소득 및 재산기준 이하인 저소득가구의 주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가정폭력 등을 위기상황으로 보아 우선 생계·주거·의료지원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지원 후 사후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사회보험지원

80.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업주의 경우 비용부담, 소득노출, 복지혜택축소 우려 등으로 사회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실업에 대한 대비나 노후준비가 되지 않아, 취약계층을 사회안전망 속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가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2012년 시범사업 도입 후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약 140만 명의 저임금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 확대

81.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이들 상당수가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며, 자영업자의 폐업 시 안정적으로 재취업·재창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2012년 1월부터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및 전직 지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2013년 말 현재 30,649명이 가입하였고, 이 중 17,908명이 가입유지 중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

82.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산재보험은 2013년 말 현재 적용사업장수 1,977,057개소, 근로자 15,449,228명이 적용을 받고 있다.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증가하는 등 종사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특히 재해발생위험성이 높은 택배·퀵서비스 사업의 경우 종사자 규모가 급증하여 이들에 대해서도 2012년 5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83. 또,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진폐장해인에게는 2010년 11월부터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2013년 7월에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직업성 암 발암물질 14종 등 신규 유해요인 35종, 직업성 암 12종 및 신규질병 3종을 추가하였다. 정부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요양, 보상 중심에서 재활복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9-2011년 2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완료하고, 2012-2014년 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

84.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었고 2014년 현재 21,125천명이 가입하고 있고, 가입자소득 9% 납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비의 4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가입자 중 농어민과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4년 말 기준 470조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2008년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평균소득의 50%였으나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하, 2014년 현재에는 47%이다.
85. 국민연금은 2012년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하였고, 2014년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나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면서 국민연금 자격이 상실된 전업주부 등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격상실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15년 내 국회에서 관련 법개정이 이루어져 2016년부터 전업주부 등 463만 명이 추가로 노후에 국민연금 급여혜택을 받기

쉬워진다.

86. 국민연금 은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기여부분을 인정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분할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 관련법을 개정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수급권을 강화하였다.

장애인 소득보장

87.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체계로는 사회보험 방식의 소득보장정책인 국민연금제도와 공공부조 성격에 가까운 정책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이 있다. 장애수당은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1990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10년 7월 장애인연금 도입 이전까지는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수당과 경증장애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장애인연금 도입 이후 중증장애인에겐 종전 중증장애수당 대신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경증장애인에겐 경증장애수당 대신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장애수당 지급 대상은 만18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증장애인(3~6급)이다. 2014년 장애수당 월 급여액은 2~3만원('14)으로서 경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실제추가비용인 월 13만원(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대비 미흡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년에는 장애수당을 1만원 인상하여 매월 2~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증장애인에 대한 현실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급여 인상을 추진 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을 위해 '13년에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을 2만원 인상(0~6만원 → 2~8만원)하였고, '14.7월부터는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여 대상을 확대(소득하위 63% → 70%)하고 기초급여를 전년대비 2배수준 인상(96,800원 → 200,000원)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실제 추가비용은 월 23만원(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이며, '15년 6월 현재 월 4만원~28.3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

88. 2011년 9월 이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국내체류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 10월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난민인정자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자에게도 수급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2013년 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주거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약 3,000명에 이른다.

제10조 가족에 대한 보호

보육지원

89. 2013년부터 5세 이하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내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보육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양질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확대하였고, 특히 영유아 지원 취약지역인 농어촌 지역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그간 양적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정부 보육정책이 추진되었으나 향후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맞춤형 보육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에 힘을 계획이다.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

90. 장애인에 대해서는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소득지원으로는 장애인연금지급,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시행, 주거지원으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서 가산점 부여, 의료지원으로는 국립재활원 확대개원, 의료비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가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으로는 교통요금 감면 및 무료승차, 전화요금 감면, 차량 등록세 등 면제, 대학입학 특례 등이 있다.

모성 보호

91. 임신·출산 여성의 보호를 위하여 출산전후휴가가 90일 보장되며,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다. 무급 30일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월 135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고,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모든 남녀근로자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2014년 7월부터 출산전후휴가를 120일로 확대 적용하였다.

아동 보호 및 지원

92. 연소자의 근로는 헌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되고 있음은 제3차 보고서 제248항 내지 제250항과 같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함에 따라 연소자 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운영, 연소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보편적 최소연금 등 정책

93. 권고 제23항 관련,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부터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된 후 같은 해 7월부터는 65세 이상에게 매월 월 8.4만원의 연금을 지급하였다. 연금액은 대상자의 재산, 근로 및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뒤 기준에 따라 월별 소득인정액을 산출, 수급대상자를 결정하였다. 이후 노인에게 보편적인 최소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5월 제정·7월부터 시행한 「기초연금법」에 따라 만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이 금액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산정된다. 무연금자는 월 20만원,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월연금액에 따라 10만원~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금액은 물가상승분과 연동된다.

이민자의 가족결합

94.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족재결합을 위한 체류자격은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자격이 있는데, 거주자격은 국민의 미성년 자녀 또는 영주(F-5)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고, 동반자격은 특정한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방문동거자격은 거주 및 동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3년 또는 4년10개월(재고용 시)의 취업활동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종료 후 원칙적으로 자국으로 귀국하도록 함으로써 정주화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초청에 의한 가족동거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가족이 관광 및 단기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외국인과 같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95.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자녀양육 지원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2011년 7월부터 결혼이민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등의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최장 4년10개월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2011년 3월부터 국민의 미성년 외국

인 자녀에 대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2년 체류 후에는 영주 자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적 변경이 없이도 국내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도 가족재결합은 보장되고 있다.

성폭력

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은 수차례 개정되었다.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였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감경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도록 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인터넷 등록·공개를 성인대상 성범죄자에까지 확대·시행하였다.
97. 2011년 11월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유형화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한 강간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어 2013년 6월에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유사강간죄 신설,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범위 확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규정 적용 배제 범위 확대, 법정형 상향, 신상공개범위 확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제도 적용 범위 확대, 아동 및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등이 이루어졌다.
98. 2012년 3월에 도입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 따라, 피해자들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조력을 받게 되었다. 이어 2013년에는 그 지원 대상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로 전면 확대되었고, 2013년 7월 성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만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폭력

99. 권고 제24항 관련, 정부는 2013년 6월 8개 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주요 내용은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초기 대응 및 처벌강화, 피해자 및 가족보호 확대를 통해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을 10.4%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기관을 기존 각급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로 확대하였고, 가정폭력사건

신고 시 경찰출동 의무화, 경찰관의 현장출입, 조사 거부 및 긴급입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2012년 8,762건 → 2013년 16,785건 → 2014년 17,557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2년 32.8% → 2013년 11.8% → 2014년 11.1%로 감소하고 있다.

100.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 9월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에서는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신설하여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01.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족보호시설을 늘리는 한편,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실시, 일상 의료비·직업훈련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특히 이주여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이주여성보호시설을 27개소로 확대하였다. 2014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율은 77.6%이며,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율은 104.3%이었다. 또한 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원을 확대하여, 2014년 기준 총 203호의 임대주택에 239가구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아울러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립을 위해, 주거를 제공하는 그룹홈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성행교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참여 건수는 2014년 12,023건으로 2013년 11,451건 보다 5% 증가하였다.
102. 2013년부터 전국 17개 경찰교육센터에 ‘가정폭력대응 실무과정’을 개설하는 등 현장출동 경찰관 대상 가정폭력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교육원에는 ‘가정폭력 강사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2014년에는 이를 ‘가정폭력 대응 전문과정’으로 확대·개편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정폭력 사건 처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특히 사건처리 절차와 과정에 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프로그램으로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협조하여 지역상담소와 사례 공유 등 전문적이며 현실적 사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처리절차에 관한 ‘가정폭력사건처리 절차도’, ‘가정폭력현장대응매뉴얼’을 제작·배부하는 등 현장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검찰 및 검찰수사관에 대해서는 수사전문가 양성을 위해 ‘여성아동수사전문가’, ‘여성아동학대범죄수사실무’, ‘보호관찰사범별 지도감독’ 등 전문 과정을 통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103.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이 강화됨에 따라 2013년부터 경찰의 112 범죄신고센터에서 가정폭력 코드를 추가·관리하고 있고, 신고활성화 홍보에 따라 가정폭력 신고사건은 2013년 160,272건, 2014년 227,60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신매매

104. 권고 제25항 인신매매 근절과 관련, 「형법」을 개정, 인신매매죄를 신설하고 기존의 약취·유인죄를 개정하는 등 「UN 초국가범죄협약 부속 인신매매의정서」 비준 및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를 완료하였다. 즉, 보편적 관할권 규정(형법 제296조의2)을 신설하고, 노동력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 등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상기 의정서 가입에 대한 비준 동의서를 2014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15년 5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105. 인신매매죄 신설 등을 포함하는 「형법」 개정에 따라 법무부 법무연수원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성폭력, 성매매 사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수강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 4개 과정을 운영하여 2013년 한해 검사, 수사관 등 총 488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10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2014년 개정하여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에 재유입되지 않고 직업훈련이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 자들을 위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을 신설하였고, 공공기관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하면서 숙식, 상담, 의료, 법률,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간 입소가 가능하나, 수사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입소기간의 연장과 자활지원센터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6비자 발급 모니터링 강화

107.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예술홍행비자(E-6)입국 외국인 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2014년 3월부터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정부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2007년 5월부터 외국인 여성이 업주로부터 성매매 강요 등 인신매매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경우 권리 구제 시까지 체류할 수 있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2014년 5월부터는 예술홍행비자로 입국하는 연예인에 대해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초 생활정보, 출입국관련법령 정보, 권리침해 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등을 교육하는 조기

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08.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 2013년 개도국 내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ODA사업을 추진 중이며 캄보디아 정부, 현지 민간단체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문맹률이 높고 국경이동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한 이주와 정착 취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기본교육과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국제공조를 위해 성착취목적의 인신매매 대응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단체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초국가적 조직범죄 척결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학교 성교육 및 미혼모 지원

109. 위원회의 권고 제31항 관련,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발달 특성에 맞는 학교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들이 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성교육 자료 개발,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성에 대한 가치관이 학교교육과정 전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11년 이후 학교성교육의 내용에 청소년기의 미혼모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성과 생식, 피임법의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0. 양육, 생계유지,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중 13%만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가족에게는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원, 중·고생에게는 연 5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급여를 신설, 추가 지원하였고, 아동양육비의 경우 2013년에는 월 7만원, 2015년부터는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거주형 임대주택 지원 또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위하여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이행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관한 법률”을 제정(2014.3.24.)하였고 2015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원스탑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다.
111. 또한 미혼모 발생의 다수를 차지하는 24세 미만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펼치면서, 2010년부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을 실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철폐하기 위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고교 학비, 자립지원수당 등의 급여 지원, 심리·정서상담, 출산 및 양육용품 지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을 통한 보호 등을 제공한다. 사업 초기에는 미혼모가 노출을 꺼려 수혜대상 범위가 협소하였으나, 홈페이지운영, 리플렛 및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인식개선 홍보노력을 계속하여 사업초기 대비 수혜대상은

약 71.5% 가까이 증가하였다.

제11조 생활조건의 개선

빈곤대책

112. 권고 제26항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정책적인 빈곤선인 동시에 공공부조의 기준액으로 활용되었다. 산정 방식은 전물량 방식으로,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생계비에는 경제적 발전에 따른 상대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2014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었고,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이 도입될 예정이다. 국가의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나열하였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려하는 상대적 빈곤개념이 적용되고, 구성원의 소득 수준에 맞춰 기준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다.
113.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있어 소극적 보호 중심에서 적극적 탈빈곤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장애인연금 도입(2010년), 잠재빈곤층 발굴 및 지원(2011년), 기초연금(2014년) 도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빈곤감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근로와 연계한 복지에 방점을 두어, 매칭펀드(2011년), 수급자의 근로장려금 지급(2014년) 등 저소득층의 탈빈곤 및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빈곤계층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제4차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며, 제3차 실태조사(2010년)에 따르면 빈곤층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155만명(2014년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33만명), 차상위계층 185만명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가 전체 빈곤층의 약 78.4~80% 이상을 차지하며,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여성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수급자 가구의 22.8%는 아동이 있고, 차상위계층 가구는 아동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90% 내외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47.6%는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며, 차상위계층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았다. 2014년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수급자가 전체의 56%로 남성 수급자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중년기(40~64세)가 37%로 가장 높았으며, 노년기(65세 이상) 29.9%, 청소년기(12~19세) 15.3% 순으로 나타났다.

노숙자 문제 해결

114. 권고 제27항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12년 6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노숙인 쉼터와 부랑인복지시설로 구분되었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입소자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숙인 자활, 재활, 요양시설로 개편하였고, 노숙인 등의 다양한 욕구별로 필요한 주거, 고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노숙인 입소자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숙인전문시설에 입소하여 자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5. 복지시설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숙인에 대해 임시 주거비를 보조하여 지역사회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 등이 포함된 현장대응팀(Assertive Community Treatment)이 만성 중증의 알코올중독·정신질환·결핵 노숙인에 대한 상담 및 진단을 통해 이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도록 병원입원, 시설 연계, 임시주거비 지원 등을 통하여 응급 조치가 필요한 상태의 노숙인이 거리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116. 노숙자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서비스 중심의 정책 추진에 따라 노숙 위기집단에 대한 예방지원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고용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재정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민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실시 중으로 향후 주거 취약 계층인 노숙인에게 독립 주거를 제공하여 탈노숙 및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노숙인의 실질적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식량권

117. 2007년부터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11년에는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국민의 식생활, 질병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식생활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현재 국민의 체위 및 식사 섭취 수준을 고려한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안과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마련 중이다.
118.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취약인구에 대해 정기적인 영양교육과 특정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2008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15년 기준,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시행 중이다.

식수권

119. 먹는 물 오염사고 조기확인 후 취수원 보호, 오염물질 확산방지 등 대응을 위한 오염경보시스템을 전국 70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도시와 농촌의 상수도 보급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거권

120. 한국의 주택보급률 현황 등은 제3차 보고서 제288항 내지 291항을 참고하라. 2014년에 주택보급률은 103.5%를 달성하였고, 1인당 주거면적도 2006년 26.2㎡에서 2014년 33.5㎡로 증가하였고, 주거기반이 양호한 아파트 비중이 2010년 58.4%이고 과거 5년간('06~'10) 주택건설물량 중 약 79.8%가 아파트 형태로 건설되고 있어 아파트 비중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121. 정부는 공공주거 확대 정책을 지속추진하면서, 인구·가구구조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 도시공간 이용 방식 변화 등 주택 정책의 환경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꾀하고 있다.
122. 정부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연 11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공급 수단을 다양화하고, 도시외곽보다는 도심내 공급을 활성화하며, 이후로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선진국 수준에 근접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여유자금의 서민용 임대주택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혜택을 확대하고 있고, 주거급여제도를 확대·강화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지원을 실질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주거급여 지원은 개편 후 지급대상이 2013년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 평균 금액은 2013년 약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될 계획이며, '15년에는 13만 가구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4년 현재 소득 1~5분위 무주택가구(520만 가구) 중 60.2%(313만 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2022년까지 90%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23. 최종견해 제28항에서 위원회는 정부내 전담창구 설립 권고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5년 주거복지본부 내 주거복지지원팀을 신설하였고, 2014년에는 주거급여 업무를 복지부에서 주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여 주거복지기획과 내에 주거급여팀을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기획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도심내 최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사업을 실시하면서,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수준이 갑자기 열악해진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사업,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이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시원·여인숙 거주자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 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부터 주거불안정 저소득층에게 기존 주거급여보다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주택조사를 강화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주거복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거와 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복지정책적 수단을 연계하여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124. 최종건해 제28항 권고의 이행 관련,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7년 6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이론회담자에 대한 수요조사 후 주거지원계획을 추진하였고, 2011년 7월에는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을 마련, 노숙인 쉼터·부랑인 시설 거주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비주택가구 현황을 조사하여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이들을 고용촉진 프로그램의 우선 수혜대상으로 선정하여 취업알선을 지원하며, 주거지원 대상자 특성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종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25. 주거가 취약한 청년층, 특히 학업 때문에 비연고지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기숙사 부족 등으로 인해 인근 원룸형 주택을 고가로 임차하여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을 겪고 있었고, 이에 대해 정부는 2011년부터 대학생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하고, 2012년부터는 사립대학이 기숙사를 확충하는 경우 사업비의 90%까지 저리의 공공기금을 융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는 출산율을 높이고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혼인한 지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126. 장애인, 노인 등 주거 약자의 경우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아 이들을 위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였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2년 제정하여 보다 제도적으로 이들에 대한 주거안정정책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한편 사회취약 아동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였는데, 지원대상은 소년소녀 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의 아동·청소년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및 무주택자이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포털을 통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의 지원요건 등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강제퇴거

127. 위원회의 권고 제29항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

른 정비사업에서의 철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주민의 이주가 완료되면 진행되며, 철거 단계에서는 보상 등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 정부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비사업 시행 시 주민동의요건을 규정하였고, 철거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철거시기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설명회개최,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합 설립 인가 시에는 각각 과반수 및 3/4이상의 주민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일출 전과 일몰 후, 호우나 대설·태풍·한파 등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법」에 따른 특보가 발표된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에는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128. 또한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그 밖의 보상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철거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설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129.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점유를 탈취하는 제도로써 인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되므로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작위의무에 해당하거나 작위의무라 하더라도 대체성이 없는 인도나 퇴거의무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사업지구 내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퇴거요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야만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제12조 건강권

의료보험

130. 권고 제30항 관련,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2013년 기준 62%이며,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도 54.5%(2011년)로 다소 낮은 수준이나,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비급여항목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을 완화시켜나갈 계획이다.

예방프로그램

131. 2010년 수립된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 등 건강생활실천 확산,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및 건강환경 조성의 4대 분야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132.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2015년도부터 담배가격을 인상하고, 흡연 경고그림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금연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감시대상 감염병의 국가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2009년 광명시를 시작으로 2015년 6월 현재 전국 11개 시도(19개 시군구)에서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도 흡연·음주 등 건강위해요인을 억제하고 건강증진사업 등 예방적 보건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동 및 모성보건

133.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제3차 국가보고서 제323항 내지 제327항을 참고바람. 2011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임신부에 대해서는 주산기 관리 강화로 모성 및 태아의 건강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하고, 영유아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모든 임신 여성에게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하여 산전관리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모성사망비는 전년 대비 42.2% 감소하였다.
134. 임신부의 조산·유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고, 빈혈 등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영유아·수유부에게 전문가 처방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식생활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모든 출생아 대상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2006년부터 6종으로 확대되었으며 2009년부터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난청 조기진단사업을 실시하였다.

제13조 교육권 및 제14조 무상초등교육

교육의 목적 및 무상초등교육

135. 대한민국 교육의 목적은 최초보고서 제502항-503항에 상술되어 있으며, 초등교육

무상의무화는 최초보고서 제449항-제451항에서 설명하였듯이 완전히 실현되었다.

136. 규약 제13조 제1항의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달성될 수 있도록, 2012년 7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하여 총론 및 9개 교과교육과정에 ‘인격존중, 관용의 정신 배양, 교육을 통한 사회 참여’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높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및 공교육 강화와 저소득층 재정지원(권고33항)

137. 사교육 경감을 위해 학교교육에서 인성·실습·체험교육을 강화, 수준별 이동수업 및 성취평가제 확대, 자유학기제 도입 등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4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없이 학업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료 뿐만 아니라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2014년 한해 총 9,259억원을 지원하였다.

경쟁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 대책

138. 권고 제34항 관련, 교육부는 학원의 교습시간이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2시 후에는 학원교습을 할 수 없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하고 있다. 국가단위의 평가는 학생 개인 및 단위학교의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하여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결손을 보충하고,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중3학년, 고2학년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4단계 수준으로 성적결과표가 배부되며 점수, 등수 등이 표기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게 보정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139. 또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하여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공/사립 대안학교의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안교육 담당자 연수, 교육콘텐츠 개발, 운영컨설팅, 전문가 포럼 등을 지원하여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기술 및 직업교육 중등과정

140. 고교 직업교육은 학력이나 학벌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기능역량강화, 취업지도 강화 등 2008년부터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고교 직업교육 정책을 추진해오

고 있다.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졸업 후 선취업 및 기술명장으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마이스터고를 2010년부터 육성하고 있으며, 성장동력산업 분야 및 구조적 인력부족 분야에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소관 부처가 해당 분야 특성화고를 육성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특히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

고등교육: 대학등록금 경감대책

141. 정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010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2년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 통합·확대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정해지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11년부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였다.
142. 2012년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도입 이후, 정부재원장학금 예산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2014년도 국가장학금 수혜인원은 122만 2천명에 이른다. 2015년에는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원 장학금 3조 9천억과 대학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확충) 3조 1천억원으로 ‘11년 총 등록금 14조원 대비 7조원을 마련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50%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금리는 2.7%로 5년 평균물가상승율인 3.22% 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였다.

평생교육

143. 평생교육에 관해서는 제2차 보고서 제351항-361항, 제3차 보고서 제387항-390항을 참조바람.
144. 한국은 만 18세 이상 성인비문해율이 1.7%에 불과하지만, 기초문해력이 부족한 저학력 성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학령기에 기초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들은 전쟁, 가난 등 이유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50대 이상 성인이 대부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량 많다.

소수자 및 소수아동교육

145. 다문화가정 학생(국제결혼 가정의 국내출생 자녀, 국제결혼 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이중언어교육을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고,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활용하여 대학생이 멘토로서 기초학습등 학력 증진을 돕는 정책, 수학·과학, 언어, 리더십, 예체능 분야의 우수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또한 도입하였다.

146. 부모가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함에 따른 중도입국학생, 외국인학생 등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학급을 중심으로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제고, 반편견·반차별교육,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중점학교를 운영하며, 학교 부적응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는 학력인정 대안학교를 지원한다.
147. 국제결혼 가정 등의 자녀 역량 개발 및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해 2009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언어영재교실 사업을 추진, 2011년 전국단위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일정 자격을 지닌 결혼이민자를 이중언어 강사로 양성하고, 국제결혼가정 등의 자녀(만3세~초등학교 재학생)를 주요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와 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중언어 능력의 효과적 향상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소통하는 환경의 형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 사업을 2014년 하반기부터는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시범사업을 거쳐(6개 센터)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장애교육

14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07. 5. 25.)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15년 4월 현재 88,067명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의 장애영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정신지체, 자폐성장애, 발달지체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이나 교원 수도 증가하였는데, 2015년 4월 현재 특수학교 167개교, 특수학급 9,868개 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19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교육교원은 18,339명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2015년에는 121개 대학에 807명의 장애학생이 입학하였으며, 대학 및 대학원의 장애학생을 위해 221교에 도우미 2,750명을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2015년 4월 현재 468개 대학에 8,598명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이다. 향후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특수학교(급) 신·증설,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증원 등 장애학생 교육여건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교육에서 남녀평등

149. 한국은 교육기회에 있어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등교육에서 대학진학을 까지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대학진학률은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높다.

제15조 문화적 생활에 관한 권리

문화소외계층·지역 지원

150.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2000년부터 자막방송과 화면해설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애인용 방송수신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2011년 「방송법」을 개정하여, 중앙/지역 지상파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방송사 등이 자막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 5%를 제공하도록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등장하고, 미디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이 약화될 우려를 낳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
151. 사회양극화로 인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한 문화바우처 사업은 계속 수혜자가 확대되었고, 내용에 있어서도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장애인과 노인 등 여건에 따른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152.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주요 스포츠 지원 사업으로는 생활체육 지원 사업과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등이 있다. 1997년부터 노인, 아동시설 등에 운동용품과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보육원 등 소외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나눔 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유·청소년(만5~19세)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매월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관람이용권 등 다양한 체육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153. 한국은 2010년 3월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 가입을 위한 비준서를 기탁하여 7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2014년 현재 최초 보고를 준비하면서, 협약의 이행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154. 문화다양성정책은 소수 문화의 표출기회를 보장하고 소수 그룹의 문화생활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창조력 및 포용력을 향상시키고 다문화사회의 이행을

에 대비하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다리 사업은 이러한 정책의 대표 사업으로서, 이주민, 다문화가족,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문화적 표출기회를 제공하고, 주류문화와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다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도서나 영상 등 문화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등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55. 한편 정부는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민자가 사회참여를 통해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국에 정착한 이민자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2009년 발족하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민원안내와 고충상담 등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 외국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2011년부터 ‘이민정책 이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012년부터는 외국인지원단체 종사자, 학생,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강좌를 개설하였다.

156. 또한 다양화된 미디어 환경도 문화다양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특히 2005년 인터넷 신문이 범제화되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국민의 미디어 이용시간 역시 증가하여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문화생활 향유 환경이 마련되었다. 2012년에는 인터넷신문의 시장의 외형과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인터넷 자율규제기구인 사단법인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정식 출범하여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각 신문사 및 방송사는 신춘문예모집, 음악회개최, 미술전시 등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생활 참여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정책

157. 2012년 생활고로 인한 예술인 사망사건을 계기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2012년 11월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들은 법률·심리 상담·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들은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 지급, 직업교육지원, 의료비 지원, 산재 보험료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14년 3월 동법을 개정, 출연료나 원고료 미지급, 불공정한 계약강요 등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와 관련된 소송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학교 및 전문교육

158. 정부는 어려서부터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을 통한 창의성과 인성, 소통과 공감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여, 전국 학교에 국악, 연극 등 8개 예술분야 4,735명의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학생은 약 250만명에 이른다. 특히 문화소외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지역문화예술자원과 연계하여 전교생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을 전국 43개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463개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관과 교정시설 재소자, 학교 밖 청소년, 군인, 산업단지 근로자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또 전국 80여개의 지방문화예술회관과 700여개 문화기반 시설에서 지역주민 참여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점차 지역 중심의 풀뿌리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다.
159. 권고 제35항 관련,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창의적 예술가 양성을 위한 자율적 커리큘럼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교원을 채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율적 커리큘럼으로서 학제간 교육을 위한 예술교양학부를 2011년 설립하였고, 전공간 교육 협동과정을 운영하며, 타 대학교와 공동 교양학부 운영협약 체결 등 노력을 전개하였고, 교수 채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교원임용규정 및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국제문화교류

160. 최초보고서 제583-588항, 제2차 보고서 제450-456항 및 제3차 보고서 제463-465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상호호혜의 이념 하에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문화교류 지원을 위한 문화협정은 2014년 현재 101개국과 체결하였으며, 그 중 38개국과 문화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

16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2012년 전면 개정, 2013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배아 및 유전자 등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생명윤리 정책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대상자 등의 인권과 안전을 고려하기 위하여 사전에 연구대상자 등의 자발적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유전자 검사 기관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과 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다.

162.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5년간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되는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기술 이전 및 실용화 촉진, 지식재산의 관리 및 보호,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지원, 신산업 창출 촉진, 과학기술분야 직접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위한 세부 과제를 수립하고 있다.
163.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대학과,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상호보완하며, 정부는 특히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여 기초연구, 고위험연구, 미래성장분야, 공공수요 대응분야, 중소기업관련 기술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정부는 연구개발지원에만 총 17조 6,395억원을 투자하였다. 정부가 투자하는 전략기술에는 난치병극복,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식품안전 등 식량권 확보, 기후변화대응 및 생활공간 편의성 향상 등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과학기술의 국제교류에 관해서는 3차보고서 제466항-472항을 참조바라며, ESCAP지원 금액은 연간 450만 달러로 증대되었다. 과학기술 ODA 확대, 국제과학기술허브 구축, 전략분야 국제공동연구활성화 등 국제적 과학기술교류에 관한 과제를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다.
164. 한국은 기후변화나 에너지 등 전 지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우주항공, 해양 등 분야에서 대규모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과학ODA의 일환으로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발전모델을 개발하고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자료집

4.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회기전 실무그룹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쟁점목록 의견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회기전 실무그룹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쟁점목록 의견서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목 차

서론

쟁점 1 : 규약의 국내 이행 및 국가인권위원회

쟁점 2 : 차별금지법

쟁점 3 : 선택의정서

쟁점 4 : 여성 및 청년 고용

쟁점 5 : 성희롱, 여성차별 및 혐오표현

쟁점 6 : 노인빈곤과 연금제도

쟁점 7 : 난민

쟁점 8 : 예술홍행비자(E-6 사증) 및 인신매매 관련

쟁점 9 :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자

쟁점 10 : 비정규직과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쟁점 11 : 최저임금

쟁점 12 : 노동3권

쟁점 13 : 교육불평등과 극심한 학업 경쟁

쟁점 14 : 아동학대

쟁점 15 : 아동의 빈곤

쟁점 16 : 주거권(노숙인 및 강제퇴거)

쟁점 17 : 건강권

쟁점 18 : 문화 향유권

쟁점 19 : 기업과 인권

서론

1.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이행 관련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사회권규약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동 사회권규약위원회 회기 전 실무그룹 회의의 쟁점목록 작성을 위하여 본 의견서를 제출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사회권규약 이행상황과 관련하여 질의가 필요한 19개 쟁점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쟁점목록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쟁점 1 : 규약의 국내 이행 및 국가인권위원회

현황

3.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3차례의 최종견해에서, 사회권규약 권리들이 국내법에서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적 판단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도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의 기본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권(제31조), 노동권(제32조 및 제33조), 사회보장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모성보호 등(제36조)과 같이 사회권규약에서도 주요하게 다루는 주요 권리들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2013. 5. 5.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고,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진정 사건 결정례도 축적되고 있으므로, 사회권규약의 국내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권 보장을 위한 권고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질의

6. 사회권과 관련된 판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당사국의 국내 사법현실을 보건대 헌법 규정만으로는 사회권규약의 내용이 실현되기 힘든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한 사회권규약위원회의 3차례에 걸친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유의미한 개선은 없어 보인다. 사회권규약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내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당사국은 이에 대한 상세한 의견과 향후 계획을 제출하시오.
7.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 침해 주장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쟁점 2 : 차별금지법

현황

8. 2006. 7. 24.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2008년 제17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정부안이 폐기되었다. 이후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7.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 NAP) 권고 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정부에 재차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 11.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최종견해에서 아래와 같은 우려와 권고를 한 바 있다.
 - a.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다수의 개별법이 시행 중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부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현재 인종차별이나 성적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법안이 없다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제12항).

- b. 당사국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종, 성적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포함하여 이유를 막론한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민관 구분 없이 자행되는 직간접적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과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제13항).

- 9. 한편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0호 제32항에서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이 사회권규약에 의해 금지되는 차별사유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마련 시 성적지향 등을 차별사유로 열거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것이다.

질의

- 10. 2008년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고 향후 계획을 밝히시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기 NAP 권고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상세히 밝히시오.

쟁점 3 : 선택의정서

현황

- 11. 2012. 10. 유엔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결과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하였으며, 당시 정부는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였고, 제2기 NAP(2012-2016)에서도 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다.

질의

12. 당사국은 스스로 마련한 제2기 NAP 및 지난 제2기 UPR 권고에 대한 입장 표명 시 선택의정서 가입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으므로, 지금까지 검토한 구체적인 결과물(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기타 상세한 검토 문서) 및 향후 계획을 제출하시오.

쟁점 4 : 여성 및 청년 고용

현황

13. 현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설정하고 여성 고용률 10%p 제고를 목표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였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2013년 정부 출범 이후 2016년 현재 여성 고용률 상승은 2.3%p에 불과하며, 남성 고용률과의 차이는 여전히 약 20%p로서 크게 차이 나고, 여성 고용률은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9위에 불과하다.

〈2011년 이후 성별(15~64세) 고용률 추이〉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1.
남자	74.5	74.9	74.9	75.7	75.7	75.8
여자	53.1	53.5	53.9	54.9	55.7	56.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14. 사회 전반의 일자리의 질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비정규직 비율 분석 결과, 남녀 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는 2011년 이후 점차 줄어들었으나, 2016년 상반기 현재 2012년 수준 이상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성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 %p)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전체	34.2	33.3	32.6	32.4	32.5	32.8
남자	27.8	27.2	26.5	26.6	26.5	26.4
여자	42.8	41.5	40.6	39.9	40.2	41.0
남녀 격차	15.0	14.3	14.1	13.3	13.7	14.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6. 8.)

15. 20~29세 남녀의 고용률은 59% 내외로 거의 비슷하거나 여성이 높지만, 30세 이후 남녀 간 격차는 급속도로 커진다. 이는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 20대에 비해 30대 고용률은 90% 수준으로 급증하지만, 여성의 경우 반대로 30대 고용률이 감소하고, 40대 여성 고용률은 20대, 30대에 비해 높아 전형적인 M자형 경향을 보이지만 이 때의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서 일자리의 질이 20대나 남성에 비해 낮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통계청 자료¹⁾에 따르면, 2015년부터 30대 여성 고용률 최저점이 30대 초반(34세 이하)에서 후반(35세 이상)으로 이동하였었는데, 이는 20대에 좋은 일자리를 확보한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연도별 성별 고용률〉

구분		연도별 고용률(%)						
성별	연령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남자	20~29	59.2	58.4	58.2	58.3	57.3	55.7	55.8
	30~39	90.3	89.1	89.5	89.8	90.3	90.2	90.9
	40~49	91.8	90.9	91.2	91.6	91.7	92.0	92.7
여자	20~29	59.1	58.0	58.3	58.7	58.8	57.8	59.0
	30~39	54.7	52.7	53.7	53.7	54.5	55.5	56.3
	40~49	64.7	64.1	64.2	64.9	64.6	64.6	65.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1) 통계청,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6. 6. 28.

16. 2013년 현 정부 출범 이후 15~29세 청년 고용률은 39.7%(2013), 40.7%(2014) 및 41.5%(2015)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실업률도 동시에 증가하여 8.0%(2013), 9.0%(2014) 및 9.2%(2015) 수준이다. 2015년 청년 실업률 9.2%는 최근 10년간 최대치이며 상승추세에 있으므로,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²⁾
17. 2016. 5.에 발간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여성 고용 및 취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하였다.
- 노동시장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시간당 소득은 정규직 노동자의 62%)로 분화되면서,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으로 더 많이 고용됨에 따라 여성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p.12).
 - 출산 및 육아 휴직 사용이 제한적이고 양질의 육아 서비스가 부족하여 여성의 취업이 제약되고 있다. 여성의 경력 단절로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육아 휴직 제도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고, 육아 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출산 및 육아 휴직 사용율을 높이고, 의무 인증제를 도입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육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p.13).

질의

18. 정부는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 증진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였으나, 지난 십의 이후, 특히 최근 3년간 각종 통계지표상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성 및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평가와 향후 재정투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19. 상대적으로 근로 환경이 좋다고 평가받는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상 근로시간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공공기관부터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사회 전반의 일자리 양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육서비스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자료 (공공·민간 등 사업체 규모별, 성별 육아휴직 사용 현황 자료 등)와 개선 계획을 제시하시오.

쟁점 5 : 성희롱, 여성차별 및 혐오표현

현황

20.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성희롱 진정사건은 총 173건이었고,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진 사건은 총 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사건 구제 현황〉

계	구제(인용 + 해결)								미인용			
	소계	권고	징계권고	조정	수사의뢰	고발	합의종결	조사중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173	38	16	3	4	1	1	4	9	135	114	2	19

21. 성희롱은 고용주, 상급자 등이 권력관계를 악용해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고, 피해자들은 피해 후유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등 심리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상용메신저를 통한 여성 성적비하 표현 등에 대해 장소, 시간, 대화의 대상, 근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피해자 사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22. 국가인권위원회의 2015년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근로자 450명) 중 40.2%(181명)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는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94명, 51%)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65명, 36%) 등 문제제기로 인한 2차 피해를 우

려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에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상시 근로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피해 예방과 구제절차 규정 제정을 의무화하고,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구체적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3.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SNS 등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고,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온라인 성폭력 등은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법적 처벌이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의 성폭력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24.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12%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경찰청장에게 여성의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2014. 9.)한바 있으나, 경찰청은 2017년 신입생 모집시에도 여전히 12%로 제한하고 있으며, 「2014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여성 경찰은 경사, 경장, 순경을 합한 약 82%가 대부분 하위직에 몰려 있다.
25.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 혐오 등을 포함한 혐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국회는 혐오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포함한 입법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다. 현재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뿐이다.
26.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위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약 1,000명)인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모두 혐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이로 인해 범죄피해에 위협을 느끼고, 정체성을 숨기는 사

례도 있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혐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혐오에 대한 두려움〉

(단위 : %)

구분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여성	16.8	19.2	49.0	14.9
성소수자	4.7	10.5	52.2	32.5
장애인	8.0	21.5	45.5	25.0
이주민	27.0	20.6	33.3	19.0

〈온라인 혐오에 대한 대응방안〉

(단위 : %)

구분	잘 알고 있다	정확히 모른다	잘 모르겠다
여성	7.2	34.1	58.7
성소수자	7.1	34.6	58.3
장애인	14.5	39.0	46.5
이주민	24.6	29.4	46.0

〈오프라인 혐오에 대한 대응방안〉

(단위 : %)

구분	잘 알고 있다	정확히 모른다	잘 모르겠다
여성	7.7	33.2	59.1
성소수자	9.8	32.9	57.3
장애인	17.5	37.0	45.5
이주민	31.0	29.4	39.7

질의

27. 직장 및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개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생명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인권문제이다. 직장 및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대책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SNS 등 온라인에서의 성희롱 및 성희롱 2차 피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시오.

28. 경력단절(career breaks)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교육 등 취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직장 내 여성이 급여, 승진 등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국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추가로 제출하시오.
29. 한국 사회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문제, 특히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이 겪는 혐오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당사국이 파악하고 있는 실태와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쟁점 6 : 노인빈곤과 연금제도

현황

30. 2014년 대한민국의 실질은퇴연령은 평균 72.9세로 OECD 최고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7~8년 더 일하는 상황(OECD, *Pension at a Glance* 2015)이다. 통계청의 <2016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노인의 기대여명 20.9년 중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인 기간은 9.1년으로, 기대여명 절반 이상 동안 질병을 앓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건강상황도 열악하다.
31. 2013년 기준³⁾ 66세 이상 한국 노인의 상대빈곤률은 49.6%로 OECD 국가 중 최고(전체 평균 10.6%의 4.4배, 2위인 이스라엘 24.1%의 2배 이상)이고, 전체 인구의

3) 가장 최근 통계는 2014년이지만, 이 경우 한국, 호주 등 8개국만 제출되어 있으므로 거의 모든 회원국이 비교 가능한 2013년 통계 수치 사용(31개국)

상대빈곤률은 14.6%(2013)로 OECD 평균(11.9%)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화가 진행되는 속도도 상당히 빠른 것으로 예상된다.⁴⁾

32. Help Age International의 ‘2015년도 노인복지 지표(Global AgeWatch Index 2015)’ 순위에서도 조사대상 96개국 중 2013년 67위, 2014년 50위, 2015년 60위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일본(8위), 이스라엘(18위), 베트남(41위), 필리핀(50위), 키르기스스탄(51위), 중국(52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열악하며, OECD 국가 중 터키(75위), 그리스(79위)를 제외하고 열악한 상황에 있다.
33.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2015년 기준 여전히 42.3% 수준에 불과하다. 55~79세 연령대의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약 51만원이고, 특히 월 100만 원 이상 연금 수령자(공무원 연금 등)는 12.5%에 불과한 반면, 75.2%는 50만원 미만 수령자이고, 25만원 미만 수령자도 49.5%에 이른다(이상 통계청, <2016 고령자 통계>). 따라서 대부분의 연금수령자들은 별도 근로소득, 가족 지원, 기초생활수급 등 다른 소득이나 지원이 없을 경우 절대빈곤 탈출이 어렵다.
34. 한편,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최대 월 약 20만원이 지급되지만,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기초생활수급 금액만큼 덜 받으므로 이들 최빈곤층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질의

35. 한국 노인의 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09년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우려스럽다. 연금제도 개혁 등 소득 면에서 안정적인 노후 진입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및 향

4) OECD (2017), Poverty rate (indicator), doi: 10.1787/0fe1315d-en (Accessed on 10 February 2017)

후 개선 방향을 제출하시오.

36. 빈곤 노인의 지출 관련 상세한 통계 수치(소득 중 주거비, 의료비 비율 등)를 제시하시오.
37. 현재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대한민국의 경제수준과 물가를 고려했을 때 부족한 측면이 있다. 향후 기초연금액 인상 등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쟁점 7 : 난민

현황

38. 난민심사 기간이 길고, 신청 후 6개월간은 취업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난민신청자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정부는 2013. 7.부터 시행하고 있는 「난민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14년부터 편성된 예산도 신청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39.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16. 4까지 국내 난민신청자 17,523명 중 난민 인정자는 592명⁵⁾으로 2014년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른 세계평균 난민 인정을 받은 27%⁶⁾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체류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⁷⁾
40. 2016. 8. 25.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난민법」 제6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시 불회부 사유는 형식적 요건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명백히 난민이 아닌 경우가 아닌 한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5) 1994년 이후 2016년 4월까지 난민신청자 17,523명, 인정자 592명, 인도적체류허가자 932명(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6년 4월)

6) UNHCR Statistical Yearbook 2014

7) 2016. 6. 20.자 '세계 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권고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불회부 사유를 형식적 요건 위주로 최소화 할 경우 적법한 방법으로 입국이 어려운 자들이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하여, 국경 관리 시스템을 무용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하였다.

질의

41. 「난민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주거시설·의료 등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의 보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실시 현황을 제출하십시오.
42.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관련한 2016. 8. 25.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불수용한 이유를 상세히 밝히고 향후 이 권고 수용 가능성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제출하십시오

쟁점 8 : 예술홍행비자(E-6 사증) 및 인신매매 관련

현황

43.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 「예술홍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홍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50%가 근로조건 위반을 경험하고 있으며, 46%가 여권을 압류당하고 있고, 23%는 성매매를 강요받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4. 2016. 6.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권고’에서 유엔 인신매매방지협약의정서 및 유엔 인신매매 일반적 지표 등을 참조하여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행위·수단·목적 등으로 구성된 27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및, 경찰·출입국 관련 조치 등을 포함한 15개 보호지표를 개발하여 정부에 제시하였다.

질의

45. 예술홍행비자로 입국한 여성의 성매매 노출 등의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점검이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와 사후 처리 등이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통계 자료를 제시하시오.
46. 예술홍행비자로 입국하여 성매매 등의 범죄 상황에 자의에 반하여 노출되고 처벌 받는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피의자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예술홍행비자로 입국자 중 성매매 피의자 입건 관련 통계자료를 제출하고 이들이 피해자로 구제받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쟁점 9 :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자

현황

47.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보완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2012. 8.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지침』을 개정했는데, 개정 전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받아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부터는 구인업체의 사용주에게만 이주노동자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고 사용주의 선택을 통해서만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2014.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개정하여, 이주노동자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대비해 가입한 보험금을 이주노동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서 출국 후 14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국내에서 퇴직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

48.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업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전에는 과도한 송출비용을 지불하고, 입국 후에는 사용자 또는 관리회사로부터 여권 등 신분증 압류, 임금체불,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외국인 선원제도>가 민간에 이양되어 있어, 어업 이주노동자들은 착취, 차별,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관계당국으로부터 권리를 구제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다.
49.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의 14.3%가 취업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현장에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포괄(산정)임금에 대한 구두계약이나 이면 계약에 따라 한국어가 서툰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50. 정부는 이혼 후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결혼이민자에게 체류허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더불어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체류자격을 한국인 배우자에 의존하는 상황을 개선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이혼 후 체류기간을 연장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귀책으로 인한 이혼임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의 단순 변심으로 이혼한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은 정부로부터 체류허가 연장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가 임의로 신원보증을 철회하는 경우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질의

51. 현재 실시중인 고용허가제, 특히 사업장 선택의 자유 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자료 및 제도 변화 경향을 제출하고 그 운용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제시하시오.

52. 외국인 선원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열악한 근로조건과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시오.
53.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건수 및 사유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이들이 배우자의 귀책으로 체류자격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쟁점 10 : 비정규직과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현황

54.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볼 때 비정규직은 임금수준이 낮은 매우 열악한 형태의 일자리이다. 비정규직은 청년, 고령자, 여성, 장애인 및 외국인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차별문제와도 연관되며, 청년 비정규직이 급증하여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노년 빈곤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55. 비정규직 통계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학계)의 산출 기준이 다르다. 2016. 8. 기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를 정부는 644만 명(32.8%)으로 산정하는 반면, 대표적인 노동 관련 민간 연구소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874만 명(44.5%)으로 산정한다. 정부와 노동계 통계 모두 통계청이 직접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표>를 원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계약기간이 없는 임시일용직 약 232만 명을 정부는 정규직으로, 노동계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⁸⁾ <한겨레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노동계 통계 수치 차이의 핵심 집단인 약 232만 명의 근로자들은 월 평균 임금 159만원, 주 44시간 근로, 근속년수 평균 2.3년에 불과하고 사회보험가입률도 20~30%

8) <한겨레경제연구소>, HERI 하이라이트, “정부-노동계 ‘비정규직 통계 차이’ 짚어보니...”, 2017. 1. 12.

에 머무는 등 정부가 분류하고 있는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상황으로 평가되므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56. 정부는 2006년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을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012년 2만 2천여 명, 2013~2015년 6만 5천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등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형식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특정 직군 또는 직종의 저숙련 일자리인 경우가 많고, 임금·승진기회·능력개발·경력형성 등에서 통상의 정규직과는 격차가 존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시정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57.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및 직종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호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여전히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07. 9. 17.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와 정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소근로기준 보호, 노동3권 보장, 4대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2014. 11.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6개 직종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실질화하고 나아가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제125조)이 신설되어 현재 사업장 전속성이 있는 9개 직종(2008. 7. 4개 직종, 2012. 5. 2개 직종 추가, 2017. 7. 3개 직종 추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 것 이외에 지난 10년 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질의

58. 정부(노동위원회 등)의 차별시정제도 관련 통계(인용률 등)를 상세히 제출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당사국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시오.
5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10년째 중단된 상태이고, 산재보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사실상 불수용하는 등 이들의 고용 안정성 등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 노력이 미흡해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시오.

쟁점 11 : 최저임금

현황

60. 2016. 7. 16.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최저임금을 시급 6,470원(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1,352,230원)으로 확정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는 2016년 대비 7.3% 인상된 액수로, 인상률은 2016년 8.1%보다 낮고, 2014년(7.2%) 및 2015년(7.1%)과 비슷하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임금 상승 혜택을 받을 근로자 비율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하는 경우 14.4%(210만 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17.4%(336만 명)이다. 최저임금 미만을(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경제위기 시기였던 2009년 12.8%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2013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15년 말 11.5%로 2010년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단위 :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율	11.9	10.8	12.8	11.5	10.8	9.6	11.4	12.1	11.5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17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2016. 6, 12쪽)

61.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나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가 2007년에는 1,133명에서 2011년 2천명을 넘어섰고, 2014년에는 5,625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80%정도가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이 낮고, 직업재활시설의 경영운영이 어려움이 있으나 이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평생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직업재활시설이 늘어날수록 최저임금 사각지대는 점차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는 있다고 해도 특정 계층에게 집중된 고용차별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질의

62.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여전히 10%를 상회한다는 점은 우려된다. 이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정부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63.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주요대상이 결국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근로자에 집중되고, 적용제외를 계속 유지할 경우 그 대상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는 평생 노동을 해도 빈곤하고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책과 계획을 제출하시오.

쟁점 12 : 노동3권

64. 2009년 제3차 최종견해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파업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관행과 관련한 중요한 태도 변화를 보였다.
- a. 헌법재판소(2010. 4. 29. 2009헌바168 결정)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 위헌소원 사건에서 이전 결정과 같이 합헌결정 하였으나, 쟁의행위는 그 자체 불가피하게 업무방해를 초래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b. 대법원(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업의 전격성’,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 등 2개의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업무방해죄가 구성된다는 것, 그리고 이 입증책임은 검사 측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65.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제4차 최종견해에서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a. 위원회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가 불합리하게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한 점도 우려스럽다(54항).
- b. 당사국은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모든 공무원 및 해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55항).

66. 2016. 2. 현재 대한민국의 ILO 8대 핵심 협약 가입현황은 아래와 같다.

4대 원칙	8개 핵심 협약	가입여부
결사의 자유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미가입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금지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아동노동금지	제138호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가입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차별금지	제100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가입
	제111호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	

67. 2016. 8. 기준 노동조합 가입률 정규직 16.5%, 비정규직 2.6%으로, 정규직도 노동조합 가입율이 낮은 문제가 있으나, 비정규직은 더욱 심각하다.

질의

68.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대표적인 공공 사업장 노동조합들이 노동조합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의 노동조합의 설립과 자격과 관련된 법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하고 그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당사국 정부의 이들 국제기구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을 상세하게 제출하시오. 또한 이와 관련하여 ILO 협약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이 지체되는 이유, 정부의 현재 공식 입장, 향후 계획을 상세히 제출하시오.
69. 파업(쟁의행위)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기소 사례에 대해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유의미한 입장 변화가 있는 점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는 기소 자체를 규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고발 행위도 막을 수 없고, 단지 유죄 판결될 확률이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기업의 민사소송은 여전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위원회는 쟁의행위가 갖는 당사국 헌법 및 국제 기준에 따른 기본권적 가치에 대해 당사국 정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2010년 이후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측의 고발 건수, 민사소송 건수, 검찰의 기소 건수, 법원의 유죄 판결 건수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출하고, 위 대법원 판례 이후 판례 경향 및 정부 입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70. 2016. 8. 기준 노동조합 가입률은 정규직 16.5%, 비정규직 2.6%로 격차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의 차이는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노사자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당사국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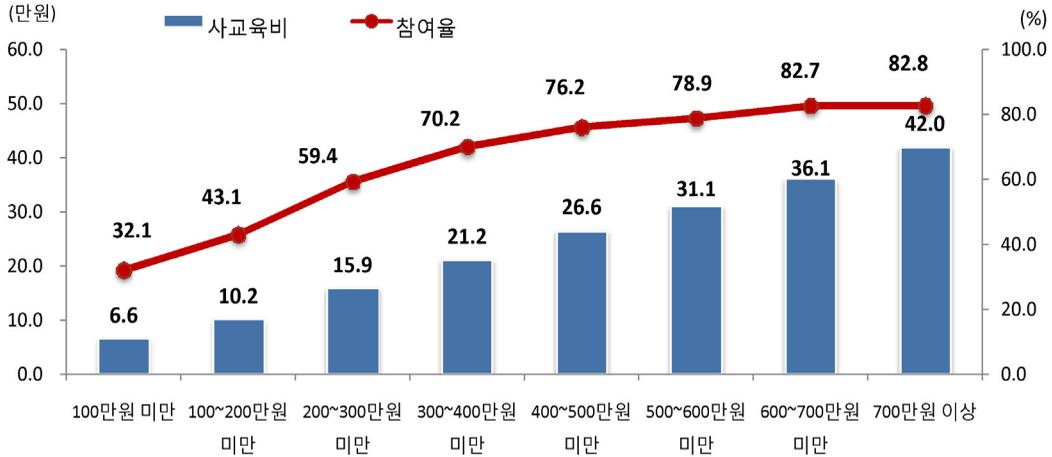
쟁점 13 : 교육불평등과 극심한 학업 경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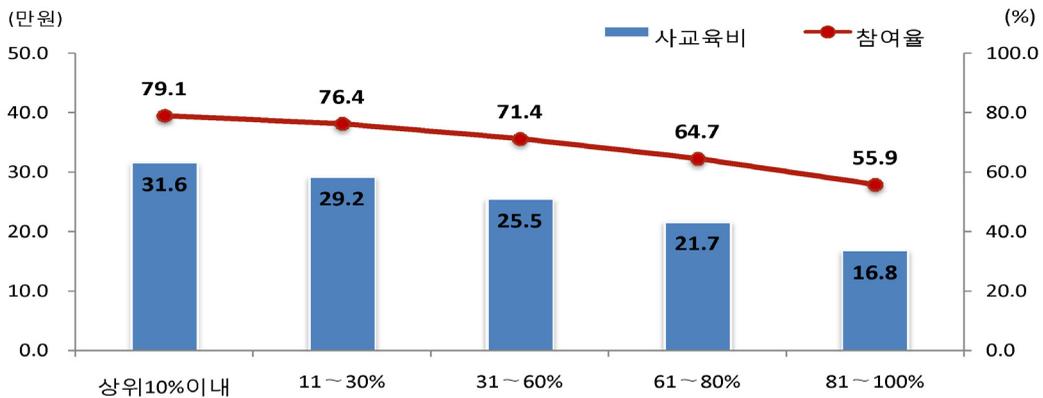
71. 한국은 사회 전반에 학력에 의한 차별 및 출신학교 서열화가 만연해 있어, 좋은 학교 출신이 보다 좋은 직업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고입과 대입 입시 위주의 학업 경쟁이 심각한 가운데 보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 시장이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사교육 시장에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 자녀와 그렇지 못한 저소득자 자녀 사이의 교육 불평등이 초래되고,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저소득자 자녀가 비정규직 저임금 저급 일자리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사교육 참여율은 감소함(2011년 71.7%, 2015년 68.8%)과 동시에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1년 335천 원에서 2015년 355천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사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학생이 증가한 반면, 받는 학생은 지출액을 높였음을 의미한다.

72. 나아가, 월평균 소득 7백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0천 원이고, 월평균 소득 1백만 원 미만인 가구는 66천 원이다. 참여율도 전자 그룹은 82.8%인 반면, 후자 그룹은 32.1%이다. 아래 첫 번째 그래프와 같이 각 소득구간별 참여율과 지출비용은 비례해서 증가하고,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교육 참여율과 성적도 비례한다.

〈2015년 가구 소득 구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및 사교육 참여율〉



〈2015년 성적 구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73. 한편, 12세 이하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시간은 주당 6.4시간으로 2011년 7.2시간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2015.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아동의 주관적 웰빙수준과 정책과제』에 의하면 대한민국 아동 학업스트레스 지수가 50.5%로 유니세프 조사대상 29개국 중 1위(평균은 33.3%), 생활만족도는 18.5%로 30개국 중 26위(평균은 26.7%, 1위 아일랜드는 42.5%)를 기록하고 있다.

74. 아동의 놀권리(child's rights to play)는 중요하다. 사교육 시간이 많다는 것은 아동이 그만큼 책상에 앉아 있는(sedentary) 시간이 증가하는 대신 야외 활동 등 충분한 신체활동을 할 시간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아동에게 활발한 신체활동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스포츠인권 헌장> 제5조에서 아래와 같이 선언한 바 있다.
- a.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이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와 기량 습득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b.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교과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 c.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 시설을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용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질의

75. 거대한 사교육 시장으로 대표되는 교육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초등학생 시기부터 시작되는 교육불평등이 대학 진학 여부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어 청년 층 내 빈부 격차가 악화되며, 결국 노인빈곤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공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사안인바, 당사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실시했던 정책과 향후 계획을 재정 투입 현황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제출하시오.
76. 사교육 등 한국사회에서의 아동 학업스트레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당사국 정부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과거에 실시한 정책이 무엇인지, 이들 정책이 어느 정도나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예산 지출과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시오.

77. 특히 아동의 놀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하여 정부의 입장을 제출하시오.

쟁점 14 : 아동학대

현황

78.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년 아동학대 주요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는 19,209건이 접수된바, 매년 아동학대 신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2016. 4. 12. 발표) 「형법」(아동학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아동학대 사범 접수 인원은 2011년 183명에서 2015년에는 2,691명으로 늘어났고, 위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3년(459명)에 비해서는 무려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인원 역시 2011년에는 49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79.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피해아동 수)이나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높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이 1명으로 이전보다는 높아졌으나, 미국의 9명에 비해 여전히 저조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아동학대가 적어서가 아닌, 아동학대의 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신고율이 낮은 것과 관련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80.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4년의 1,346건에서 2014년의 4,358건으로 10년 사이 4배가량 증가하였지만, 2014년 신고의무자 신고율(29%)은 호주(73%), 일본(68%), 미국(58%)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낮다. 또한 해마다 10% 정도로 학대가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개입과 재발방지를 위한 초기조치가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질의

81. 한국의 아동학대 현황과 관련하여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고, 아동학대가 신고된 이후 매해 10%정도 학대가 재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실시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이들 정책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쟁점 15 : 아동의 빈곤

현황

82. 대한민국은 아동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아동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2.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아동빈곤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의무와,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12개의 규정을 둔 외에 빈곤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아동빈곤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은 2017. 6. 시행될 예정이다.
83.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및 보건복지부 발표 2016년도 시행계획에 의하면, 빈곤가정 아동의 기본욕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 외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2013년)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아동이 빈곤한 가족에 속해 있는 경우, 아동빈곤률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 10.62%, 최저생계비(2012년 정부 발표 기준) 기준의 절대빈곤률은 9.45%로 나타났다. 아동이 포함된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가구가 약 4% 정도임을 감안하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한 아동은 약 53만 8천명에서 65만 1천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아동의 약 5.6%에서 6.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84. 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빈곤률은 소득계층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가족형태별 및 주양육자의 고용상태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급가구의 아동빈곤률이 79.75%에 달하고, 양부모 가족 아동빈곤률 3.22%에 비하여 한부모 및 조손가정 아동빈곤률이 63.54%이다. 이는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빈곤률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다차원적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85. 대한민국의 아동 빈곤률은 OECD 회원국 중 29개 국가의 평균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과거 10년 동안의 빈곤률 감소폭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아동에 대한 사회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 빈곤 문제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공공부조 제도 안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교육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것 외에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특성을 별도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질의

86.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빈곤률을 낮추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과 목표를 갖고 있는지,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계획이 있는지 제시하시오.

쟁점 16 : 주거권(노숙인 및 강제퇴거)

현황

87. 정부는 기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취약집단의 주거대책과 관련하여 임대료 보조제도 및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제도의 활성화를 언급하고 있으나, 임대료 보조제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상위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촌 등에 거주하는 사회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제도상 한계가 있다.

88. 또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수가 감소 추세이나, 빈곤 노인 및 노인 1인 가구 급증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100만 가구 이상이 최저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추이〉

(가구수, 전체 가구수 대비 %)

구 분	2005	2010	2012	2014
미달 가구수 (비중, %)	268만 (16.5)	184만 (10.6)	128만 (7.2)	100만 (5.4)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0, 2012, 2014))

89.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국가보고서에서는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지급, 철거민에 대한 임시거주지가 제공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법·제도상의 설명일 뿐 실질적인 주거안정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설립한 직장여성아파트의 경우 거주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면서 기존의 저소득 근로 여성 입주자들이 강제 퇴거되는 사례가 있다. SH공사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역시 빈곤으로 인한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강제퇴거 가구가 260가구를 넘어섰다.

90. 강제퇴거가 행정대집행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각종 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행정대집행에 대한 인권친화적 관리 방안에 대해 현재(20대 국회) 개정 법률안⁹⁾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질의

91.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청년 등) 주거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중인 정책, 제도,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시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9)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2016. 11. 21)

의 경우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 및 당사국의 현재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정부가 시급히 대처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특히 비주택(비닐하우스 등) 거주자 및 노인, 청년 및 장애 가구 주거 관련 별도 통계를 제출하시오.

92. 강제퇴거, 행정대집행 및 공권력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 등 인권침해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이에 대한 지난 제3차 최종견해 권고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설명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인권친화적 집행 방안과 관련한 상세한 계획을 제출하시오.

쟁점 17 : 건강권

93. 정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건강보험은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3조 1천 96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그동안의 누적 흑자 총액도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하여, 20조 7천 166억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사업' 및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여전히 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높고(77%) 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가 새롭게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였으나, 풍선효과¹⁰⁾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이러한 흑자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63.2%로 다소 상승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의료비 지출 총액 중 공공재원이 조달하는 비중은 55.9%로서, OECD 평균 72.7%보다 18%p 정도 낮다.

94. 대한민국의 절대 빈곤층 비율은 7%가 넘는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2013년 기준 전체 인구의 3%에 그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의

10) 국회예산정책처, 병원이 비급여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는 행위(『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평가』, 2016. 6.)

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도 1종의 경우 본인 부담금 비율이 전체 의료비의 5.9%, 2종의 경우 7.6%로 보고되고 있어 빈곤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의료보장은 빈곤층의 복지욕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절박한 욕구라는 점에서 최근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정에서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 및 보호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95.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대규모 국민 건강 대란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전국민적인 긴급한 건강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96. 도시와 농촌 간 건강권 보장 격차가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예산 문제로 폐쇄되거나 민영화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질의

97.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이 추진중임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감소하거나 정체된 이유를 설명하고, 건강보험 흑자 재원 활용방안을 서술하십시오. 특히 절대빈곤층에 대한 의료비 보조 서비스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제출하십시오.
98.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동 정책의 성과 및 한계, 향후 개선 계획 등을 상세히 제출하십시오.
99.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건강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제출하십시오.
100. 도시와 농촌,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건강권 격차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계획을 제출하십시오.

쟁점 18 : 문화 향유권

현황

101.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2015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용컴퓨터(PC) 기반 정보화 수준에 있어서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과 비취약계층 간 정보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조사가 시작된 2004년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종합지수는 비취약계층의 45%에 머물렀으나, 2010년 71%, 그리고 2014년에는 74.6%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스마트정보화 수준의 경우 57.4%에 머물러 있는데, 특히 장애인(60.2%)과 저소득층(72.5%) 보다는 농어민(51.4%)과 장노년층(54.3%)의 스마트정보화 수준이 더욱 낮다. PC보다는 스마트 기술에 의한 정보 유통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보 접근권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
102. 사회권규약 제15조 (b)항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보고서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정책과 생명윤리 관련 법제도를 언급하고 있을 뿐, 사회권규약위원회 뿐만 아니라 문화권 특별보고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등이 제기하는 다양한 이슈, 예컨대 과학기술 향유에 있어서 차별 문제나 과학기술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 특히 정보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형태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질의

103. 과학기술 및 문화 향유에 있어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현황 및 계획, 그리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향 및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쟁점 19 : 기업과 인권

현황

104.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기업과 인권 NAP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정부는 초안 마련 후 공청회 개최, 정부 관련부처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등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추진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105.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2016. 6. 1. 발표한 한국 방문결과 보고서에 기업과 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국민연금의 투자활동,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집행 등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인권에 대한 실천점검의무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은 기업들의 해외 사업과 관련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만약 침해가 있을 경우 국제기준과 모범관행에 따라 구제책에 대한 접근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문단 설립을 제안하였다.
106. 유엔과 OECD 등 국제사회는 한국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 면화수입, 한국기업들의 미얀마 의류공장에서 노동조건, 포스코의 인도 제철공장 및 대우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천연가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보상문제 등 한국기업들의 해외 활동시 인권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107. 유엔 위해물질특별고보관은 2016년 한국방문결과 보고서에 정부가 옥시 가습기 피해자, 삼성전자 위해물질 노출 근무자, 위해물질 노출 인근지역 피해주민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5. 23. 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생활화학제품의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기업과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위 기업과 인권 NAP 권고에서도 집단소송제도 등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구제제도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질의

108.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 NAP 수립 권고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출하십시오.
109. 공공기관이 수출 관련하여 신용정책금융을 제공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투자하는 경우 대상기업의 인권적 측면을 고려하고 그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십시오.
110. 대한민국 기업들의 해외 사업과 관련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만약 침해가 있을 경우 구제책에 대한 접근방안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다면 제출하십시오.
111.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삼성전자 위해물질 노출 근무자, 위해물질 노출 인근지역 피해주민 등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구제 및 조치사항을 제출하십시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자료집

5.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관한 생점목록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쟁점목록 (List of Issues)

I. 일반 정보

1.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에 대한 평가,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목표, 특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이전 계획의 평가와 현 계획의 작성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국가인권정책협의회와, 협의회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2. 당사국 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를 다루는 구제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가 모든 규약상 권리를 포함하는지, 개인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반에 관한 진정을 인권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지, 지난 5년간 이와 같은 권리에 관하여 조사를 한 사건의 데이터를 제공해주십시오.
3. 당사국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규약상 열거된 비시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그들이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또한 규약상 어떠한 권리가 당사국 보고서 상의 '성격상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것으로 인정되는지, 또한 당사국 보고서에 언급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규약의 제11조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국가보고서 제4항 참조).
4.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 부문에서의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고위공직자가 부패 등으로 기소, 선고된 숫자에

대한 정보,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년)이 적용된 사건의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5. 당사국 보고서에 언급된 규약상 권리에 관한 국내구제절차에 관한 연구 결과와 후속조치가 있었다면 후속조치에 대해 알려 주시고, 규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6. 기업이 경제사회문화적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고, 국내외 기업 활동, 특히 채굴 부문과 토지수용을 하게 되는 상업적 활동에서 '상당주의의무(due diligence)'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당사국이 개발원조사업이나 해외에서 활동예정인 기업에게 요구하는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II. 규약 일반 규정에 관한 쟁점(제1조 내지 제5조)

가용 최대한도의 자원(제2조 제1항)

7. ODA에 배정된 GNI의 정확한 비율을 제시하고, GNI의 0.7%라는 국제적 합의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전망, 보고기간 동안(2009년 말~2015년 말)에 최저개발국가에 대한 양자원조 중 증여율(grant element)이 어느 정도로 증가하였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비차별 원칙(제2조 제2항)

8. 당사국이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는지 여부, 그러하다면 법안의 기본적 특성과 채택을 위한 시간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9.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을 성별, 연령, 출신국가, 인종으로 분류하여 보고기간동안 난민 등의 지위를 부여 또는 거부한 이들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난민신청 처리에 소요되는 평균 대기 시간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연관된 「난민법」의 주요 규정을 알려주십시오.

10.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여성의 빈곤척도, 기대수명, 문맹률 및 고용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척도 등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최근의 통계자료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영주자격 취득 또는 귀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11. 성적 지향 및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철폐하고 금지하기 위하여 취한 입법적, 행정적, 여타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제3조)

12. 2012년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제정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이전 최종견해에서 요청한 바대로, 모든 현행 법률을 젠더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당사국에 요청합니다. 또한 정치적 생활과 공적·사적 부문에서 정책 결정 지위에 여성의 대표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한 구체적 조치를 적시 해주십시오.

III. 규약의 구체적 규정에 관한 쟁점(제6조 내지 제15조)

일할 권리(제6조)

13. 지난 5년간, 연령, 성별, 출신 민족, 장애종류, 지역으로 분류된 실업률에 관한 통계를 제공해주십시오.
14. 아동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강제노동을 범죄화하기 위해 입법적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당사국이 그러한 강제노동 관행에 대응하고 피해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명확히 해주십시오.

공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제7조)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행, 특히 가장 취약하고 불이익을 받는 집단에 대한 임금과 보험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특히 농업 부문에서의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16. 최저임금이 공적·사적 부문에서 고용주들이 실제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로 준수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최저임금은 규약에 부합하는 수준의 삶을 노동자와 그 가족이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17. 남성과 여성간에 37%에 달하는 임금격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나 정보 보조금 등, 직장내 보육시설 개발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취한 구체적 조치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18. 비공식경제의 범위 및 보고기간동안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접근권을 비공식경제 부문 노동자에게 보장하기 위한 현재의 조치를 구체화해주십시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종합대책’의 내용 및 영향, 상시지속적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지침’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대법원 2011.4.14.선고 2007두1729판결이 법률개정 등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19. 노동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장감독에 관하여, 지난 2년간 실시한 사업장 감독의 횟수, 고용주의 노동법 준수에 대한 평가, 그리고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사업장감독이 실시된 부문을 적시하고, 특히 가사근로·농업 근로가 그 근로감독에 포함되는지를 밝혀주십시오. 당사국이 노동위원회가 고용주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 단지 피고용자에 대한 배상명령뿐만 아니

라 처벌을 부과하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산업보건 및 안전을 규율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이에 관하여 특히 효과적인 사법적·행정적 조치에 관한 그들의 권리를 포함, 근로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취한 조치의 영향을 알려주십시오.

20. 사업장 내 성희롱을 범죄화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 최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 부과된 처벌, 피해보상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주십시오.

노동조합 권리(제8조)

21. 노동조합의 등록요건을 알려주십시오. 공무원의 노동조합권 향유에 대한 제한을 적시해주시고 당사국이 교사의 노조가입권에 부과한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또, ‘필수공익 사업장’을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직권중재제도를 변경한 것의 효과에 관한 정보와,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의 전후에 공공 사업장에서 발생한 파업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사회보장권(제9조)

22. 국민기초생활보장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과 약자 및 소외된 개인과 집단의 보장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이 기초생활보장체계 대상이 되기 위한 소득기준을 완화한 것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23. 2014년 「국민연금법」개정으로 인해 노인들이 국민연금체계로부터 완전한 혜택을 받을 권리에 관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연금 체계로부터 완전히 또는 일부 혜택을 받는 노인의 비율을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가정과 아동의 보호(제10조)

24. 부부간격을 포함하여 가정폭력으로 입건 및 기소된 사건을 성별, 연령, 인종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가해자에게 부과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제시해주시시오. 또한 2013년 채택된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등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시시오.
25. 2013년 인신매매죄를 도입한 「형법」의 개정에 있어, 당사국이 취한 이 조치의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인신매매에 관한 수사, 기소, 유죄선고에 관한 비교 데이터를 제공해주시시오.

적절한 주거수준에 대한 권리(제11조)

2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내의 노숙인 발생의 원인 및 그 범위, 동 법률의 이행을 위해 적용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주거의 이용가능성 및 적정성에 관한 분류된 데이터를 제공해주시고,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시시오.
27. 강제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시시오. 지난 5년간 연도별 강제퇴거의 숫자에 관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퇴거 시 영향을 받는 거주자들과 정책결정에 앞서 협의하였는지 여부를 설명해주시시오.
28. 식수에 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전국적 수질오염경보 시스템을 마련한 것의 영향과, 상하수도망 공급 및 위생에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시시오.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권리(제12조)

29. 가장 취약하며 소외된 개인과 집단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및 비용지불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한 조치의 영향을 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또, 2009년 당사국의 보고서 심의 이후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출의 역학관계와 공적 지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한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30. 학교내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피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한 것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당사국이 성·생식에 관한 의료서비스를 모든 인구집단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알려주십시오. 또 십대임신률에 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교육에 대한 권리(제13조 및 제14조)

31. 당사국이 학원의 야간교습을 제한하는 등 학업 스트레스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그러한 노력이 학생의 건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3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사교육을 위한 재정적 부담 경감, 교육에 관한 접근권의 평등에 대해 미친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문화적 권리(제15조)

33. 당사국이 다문화주의를 증진하는데 있어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를 제시해주십시오.
34.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 신문의 자율규제에 관한 2012년의 제안에 있어, 인터넷 신문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진전상황을 알려주십시오.

35.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36. 고령자, 취약자 및 소외 집단의 인터넷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해 알려주십시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자료집

6.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의견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 의견서(안)**

2017. 8.

국가인권위원회

서 문

A. 핵심 쟁점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쟁점목록 8, 11)
2.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산업 안전 확보(쟁점목록 18, 19)
3.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쟁점목록 22)
4.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개선(쟁점목록 29)
5. 빈곤과 학대로부터의 노인 인권 보호(쟁점목록 23)
6. 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쟁점목록 24)
7.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쟁점목록 15)
8. 난민인정 심사와 난민 처우 개선(쟁점목록 9)
9. 기업과 인권 NAP의 조속한 수립 및 기업의 인권존중 준수 강화(쟁점목록 6)
10. 성별 임금격차 해소(쟁점목록 17)

B. 쟁점목록에 대한 세부의견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의 투명성 강화(쟁점목록 1)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시 구제수단 강화(쟁점목록 2)
3. 외국인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호 강화(쟁점목록 3)
4.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쟁점목록 5)
5. 이주결혼여성의 생활 여건 및 귀화 절차 개선(쟁점목록 10)
6.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해소(쟁점목록 11)
7. 성 주류화와 여성 대표성 증진(쟁점목록 12)

8. 청년실업 해소(쟁점목록 13)
9.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으로의 인상 및 최저임금 준수(쟁점목록 16)
10. 과도한 근로시간의 단축(쟁점목록 17)
11. 비공식부문 근로자 근로 여건 및 지위 개선(쟁점목록 18)
12. 성희롱 근절을 위한 조치 강화(쟁점목록 20)
13. 노동기본권 보장(쟁점목록 21)
14.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쟁점목록 24)
15. 노숙인 대책의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쟁점목록 26)
16. 강제퇴거의 엄격한 제한(쟁점목록 27)
17. 하천 수질 악화로 인한 식수권 위협(쟁점목록 28)
18. 학업 부담 완화를 통한 청소년 건강권 보호(쟁점목록 31)
19. 공교육정상화법 보완(쟁점목록 32)
20. 미세먼지로부터의 건강권 보호

서 문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하여 본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3차 심의 후 사회권규약위원회가 밝힌 우려와 권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본 규약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일부 분야에서 개선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이행 상황이 진전되지 못하였거나 오히려 후퇴한 영역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차별을 철폐하고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이나 정부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이 확인되지 않고, 성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주민에 대한 착취와 배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 및 성별 임금 격차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심의의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의 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게 존재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기초적인 생계 수준을 보장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높은 의료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제시한 쟁점목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쟁점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대책 등을 포함하였다.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영향이 광범위하고 중대하여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으며, 그 외 심의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룰 필요성이 높은 사항을 선별하여 ‘쟁점목록에 대한 세부의견’으로 정리하였다. 이하에 선별된 쟁점들에 대하여 사회권규약위원회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A. 핵심 쟁점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쟁점목록 8, 11)

1. 최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실태 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2017)’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성적 소수자의 94%, 장애인의 79%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이주민의 51%가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혐오표현 규제를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등¹⁾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내외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 정부는 제4차 정부보고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입법사례 및 적용실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의 진행 상황이 공개된 바 없어 그간의 노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는 차별금지 사유 등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절차가 지연되었으며²⁾, 의견 수렴 및 설득 작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³⁾ 현재까지 사회적 논란 해소와 합의 형성을 위해 정부가 기울인 노력은 뚜렷하지 않다.
3. 2017년 3월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결성되어 활동하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입법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과 정확한 시행 효과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1) 국회입법조사처(2017), 혐오표현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2) 정부(2015),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대한 제4차 국가보고서

3) 법무부(2014), 제2차 UN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이행시민사회 정책제언에 대한 정부 의견

2.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산업 안전 확보(쟁점목록 18, 19)

4.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6년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2.8%에 해당하는 644만 명으로 집계된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2002년 노사정위원회가 규정한 비정규직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비정규직에 포함할 경우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44%, 사내도급 근로자와 특수고용직을 추가로 포함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53.4%에 이른다.
5.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가장 큰 위협은 고용불안이다. 쟁점목록 18조에서 언급한 대법원의 판결(2007두1729판결)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나, 현실적으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매우 좁게 인정하고 있어 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6. 경제적 처우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149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279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률, 퇴직급여 수혜율, 상여금 수혜율, 시간외수당 수혜율, 유급휴가 수혜율 등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과 비교해 현격히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⁴⁾
7.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자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자성 조차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여 노동기본권 보호를 요구해 관철하거나 직접 행동으로 쟁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불안정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을 수행하는 단순노무제공자들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나, 2008년 「산업재해보상

4)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보험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부가 산업재해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 것 이외에 지난 10년 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적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8. 한편, 산업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사내하청 근로자의 산업 안전 취약성이 두드러진다. 원청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집중시키는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원청업체의 공기 단축 요구에 따른 작업 부담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전가되어 산업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과 비교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통합한 사고사망만인율이 4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⁵⁾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재해 우려가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9. 이에 유해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한정적으로 규정된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의무를 확대하여 작업장 안전시설을 적극 개선토록 하는 등 원청업체의 현장 안전 확보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쟁점목록 22)

10.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정하였으나, 2015년 7월 이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정하는 변화가 있었다. 또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간 수급 기준을 달리 정하여 생활여건에 따른 차등적 급여 수급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수급자가 2014년 132만8천명에서 2015년 164만6천명으로 증가하였다.
11. 그러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급여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높은 급여액 비중을 차지하는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도 변경 이전 132만8천명이던 수급자는 제도 변경 이후 125만9천명으로 감소하여 취약계층 생활 보장 수준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6),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태조사

12. 또한, 2015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3.2%는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⁶⁾ 12.5%와 큰 차이를 보여, 빈곤층의 상당수가 공공부조의 제도권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응답자의 19.9%가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고, 36.8%가 지난 1년 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20.2%가 경제적 이유로 자살 등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고 답할 만큼 비수급 빈곤층의 경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13. 이와 같은 비수급 빈곤층은 주로 소득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존재로 인하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한다.⁷⁾ 규정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빈곤층이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단절 등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나 이러한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한바,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요구된다.

4. 국민건강보험 강화 및 의료급여 개선(쟁점목록 29)

14.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광범위한 비급여 항목 등으로 인해 63%대 수준에 머물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증질환 발병 등 높은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외 민간의료보험에 의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민간 의료보험의 신규가입 이유를 살펴보면 ‘불의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76.8%,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라는 응답이 10.2%를 차지하고 있다.⁸⁾ 이는 가계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로 인한 진료비 지출의 위험부담을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완화하려 함을 의미한다.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빈곤통계연보

7) 국가인권위원회(2014),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한국의료패널조사

15. 그러나 소득이 낮은 계층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저조하며 그 결과 고액의 의료비 부담에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이는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 유인을 줄이고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요구된다.
16.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지원이 지적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나,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축소하고 있으며, 정산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과년도 미지급금을 정산하지 않고 있다. 보험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험료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늘고 있음에도 2017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오히려 전년 대비 2,210억 원 삭감되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증진 여력을 저해하고 있다.
17. 국민건강보험 외에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의료급여제도가 운영 중이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2016년 의료급여 수급자수는 153만 명에 이르렀으나, 이는 2009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던 수급률이 2012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향후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수급자의 지속적 확대가 요구된다.
18.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상 비급여 진료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지나친 부담으로 정부가 비급여 진료의 상당액을 부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빈곤과 학대로부터의 노인 인권 보호(쟁점목록 23)

19. 2015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은 247만 명이며, 이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의 36.5%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이 특수직역에 종사하지 않은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적연금임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수급률은 저조한 수준이다.

20. 2016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6% 수준이나 이는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며,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실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3.98%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⁹⁾ 더구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향후 매년 0.5%포인트 낮아져 2028년에는 40%로 조정될 예정이어서 노후 생활의 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
21. 한편, 2014년 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2017년 6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206,050원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지급액이 감액되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효과가 적고,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액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사실상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또한, 기초연금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연동해 지급금액이 조정되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근로자 소득상승률보다 낮은 1.3%, 0.7%, 1.0%를 나타내어 이 같은 연동 구조가 지속될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의 상대적 빈곤 심화가 우려된다.
22.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금융자산 투자 시 주된 목적이 ‘노후대책’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53.3%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다. 상당수 가구가 노후 대비 저축을 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가정에서의 부양 기능 또한 약화되어가는 상황에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공적연금의 최저생계비 대비 자산충족률은 72.4% 수준으로¹⁰⁾ 공적연금제도로는 노인의 최저생계수준 조차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는바, 기초연금의 지급구조 및 지급액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23. 대한민국의 많은 노인들은 경제적 빈곤 이외에도 학대와 방임, 차별,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노인에 대한 학대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 2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통해 확인된 학대 사례가 4,280건으로 2015년(3,818건) 대비 12.1%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 내 3,799건(88.8%), 생활시설 238건(5.6%) 등으로, 외부로 잘

9) 감사원(2017),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10) 민주사회정책연구원(2015), 공적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수준의 변화

드러나지 않는 노인학대의 특성으로 인하여 학대사례의 발굴 강화, 노인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확대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학대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751건(17.5%),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3,529건(82.5%)으로 나타남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신고의무 관련 교육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24. 또한 노인에 대한 학대사례 중 방임(1,301건, 19.1%, 노인 본인의 자기방임 포함)이 정서적 학대(2,730건, 40.1%) 및 신체적 학대(2,132건, 31.3%)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인 당사자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홀로 사는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의 어려움이 우려되며, 정기적인 안전 확인 등 가장 기본적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규모(22만 명)가 홀로 사는 노인 전체(133만 명)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서비스 보장성의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25. 노인에 대한 돌봄이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옮겨감에 따라, 노인의료복지 시설 등 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 초기에 이용자수 급증 및 인프라 부족을 우려하여 민간 개인사업자로까지 참여가 확대되었으나, 소규모 민간요양시설이 시장에 과도하게 공급되면서 불법적인 과다 경쟁 초래와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서비스 질적 저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설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설치기준을 강화, 시설 지도·감독·평가체계 개선, 공공 요양시설 확충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6. 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쟁점목록 24)

26.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확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09년 9,309건에서 2015년 19,20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아동학대 사례건수도 2009년 5,685건에서 2015년 11,715건으로 증가했다.

27.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아동학대 신고율 및 발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위와 같은 학대 신고 및 확인 건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5년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¹¹⁾은 1.32%로 미국(9%) 등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율 역시 29.4%로 호주(73%), 일본(68%), 미국(58%)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제고를 요한다.¹²⁾ 2004년 18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증설되며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40.4% 증가하고,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강화되며 신고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36% 상승한 것에서 보듯,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율을 제고할 여지가 크며, 신고체계 확립과 신고의무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청된다.
28. 학대 발생 이후의 조치와 관련하여, 아동 학대 사례의 80%가 부모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나¹³⁾ 학대 피해 아동이 가해자와 적절히 분리되어 보호를 받는 경우가 적어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고 학대 피해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해자와의 분리 및 피해자 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아동 학대 보호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한 해 만 명이 넘는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함에도 보호 시설의 규모는 백 여 개에 그치는 실정이다. 학대 후유증으로부터 회복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심리치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전용보호시설이 필수적이나, 전용보호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일반 복지 시설이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운영 확대가 요구되나 예산이 원활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일반회계가 아닌 복권기금 등의 기금을 통해 확보되고 있어 보호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확대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9. 한편, 이주 아동의 경우에는 학대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보호를 받기 어렵다. 학대를 받은 이주 아동이 외국 국적을 가졌을 경우 기초생활보장대상이 아니어서 국

11) 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피해 아동 수

1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아동학대 주요현황

13)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아동학대 주요현황

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로 보호시설에서 거부되고 있으며, 특히 미등록 아동은 출입국관리소에 대한 통보 및 추방을 우려하여 학대를 겪어도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보호기관의 이주아동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이주 아동이 학대를 받았을 경우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7.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쟁점목록 15)

30.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경제활동인구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외국국적동포로 자격이 제한되는 ‘방문취업’ 등을 제외하면 대표적인 외국인 고용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이 제도에 따라 국내 취업한 외국인은 26만 명에 이른다.¹⁴⁾
31.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체류 기간은 4년 10개월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5년의 체류 기간에 미치지 못하여, 사회통합의 대상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직 기회가 3회로 제한되고, 사업장 변경 승인을 받은 후 3개월 내에 구직을 하지 못하면 출국하게 되며, 퇴직금에 해당하는 출국만기보험도 출국 이후 지급되는 등 단기적 노동 제공 후 출국을 예정하는 제도 하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통합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주변자로서 차별과 착취에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32. 이직 또는 퇴직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동의가 요구되는 등 직업 선택에 제약이 존재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10% 이상이 직장에서 폭행을 경험하는 등 폭언, 폭행, 따돌림 등의 빈도와 수위가 높은 상태이나 신고 또는 이직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태이다. 산업재해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비율이 21%에 그치고¹⁵⁾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미준수 사례도 빈번한 등 근로 여건도 매우 열악하다.

14) 통계청(2016), 외국인 고용 조사

15)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2016), 경남이주노동자 노동생활실태조사

33. 다수 외국인근로자가 장시간 근로와 불규칙한 휴식을 요구받고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농축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장기간 근로와 짧은 휴식을 강요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284시간에 이르렀으며, 월 평균 30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도 조사대상의 3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34. 한편, 정부는 시범시행 중이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최근 전국단위로 확대 시행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는 90일의 단기 체류가 인정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매 30일 당 최소 휴무일을 단 2일로 예시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특별한 개선책 없이 전국단위 시행이 추진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35. 한편,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급증하여 2016년 기준 국내 취업한 외국인 선원이 2만3천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대한민국 총 선원의 39%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어업 외국인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한 달에 이틀 밖에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상당수가 폭행이나 임금체불을 경험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로 이들에 대한 근로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¹⁷⁾
36.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타 산업 외국인근로자와 달리,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선원법」에 의한 선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무보다 열악한 선상 근무환경을 고려해 통상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나, 외국인선원의 경우에는 선원노조와 선박소유단체 간의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제 외국인선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선원 최저임금의 80% 미만에서 형성되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외국인선원에게 차별적 최

16) 국가인권위원회(2014),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17)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2016)

저임금을 적용하는 최저임금 고시제도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차별적 최저임금 고시 제도는 지속되고 있다.

8. 난민인정 심사와 난민 처우 개선(쟁점목록 9)

37.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자는 98명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연도별 난민신청자 현황¹⁸⁾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1,143	1,574	2,896	5,711	7,542
성별	남자	1,039	1,366	2,403	4,814	-
	여자	104	208	493	897	-
국적	파키스탄	242	275	396	1,143	-
	나이지리아	102	207	201	264	-
	이집트	43	97	568	812	-
	시리아	146	295	204	404	-
	중국	3	45	360	401	-
	기타	178	471	784	2,687	-

연도별 난민인정자 현황¹⁹⁾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70	47	42	60	57	94	105	98
성별	남자	51	31	27	39	35	62	54	-
	여자	19	16	15	21	22	32	51	-
국적	미얀마	33	13	24	18	19	4	32	-
	방글라데시	21	7	2	16	10	2	12	-
	콩고DR	1	3	6	4	1	3	1	-
	에티오피아	6	2	0	4	3	43	11	-
	기타	9	22	10	18	24	42	49	-

1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6년 자료는 법무부 2016년 난민현황)

1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6년 자료는 법무부 2016년 난민현황)

38. 「난민법」 제정은 난민인정심사의 절차 및 처우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실제 시행 측면에서는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심사 공무원 수가 부족하여 난민 신청자의 수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담당 공무원의 전문적 훈련기회가 부족하여 전문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의 신청시 2차 심사를 담당하는 난민위원회에서의 서면·요약심사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난민신청자의 의견 전달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지난 해 난민인정 98건 중 2차 심사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10건에 그쳤다.
39. 한편, 지난 해 난민인정자 98명 중 34명은 재정착난민제도(해외의 난민캠프 체류하는 난민 중 한국행 희망자를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수용하는 제도)를 통해 입국하였으며, 가족재결합에 의한 난민인정자 또한 34명에 달했다. 가족재결합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에 의해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난민인정자 중 재정착난민제도를 통한 난민과 가족결합의 비율이 높은 것은 박해사유에 대한 개별심사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움을 의미한다.
40. 난민신청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난민인정심사기간동안 국내 체류가 허용되어야 하나 난민신청 지연 등 형식적 사유만을 근거로 출국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여권, 비자 등의 문제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려 구금하거나 형사기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41. 한편, 2013년 이전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던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수가 2014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 등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난민신청자들로서 난민과 같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난민법은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이들의 처우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교육, 가족결합 등과 관련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정부에 대하여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격 부여를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건강

보험 적용은 적합하지 않다며 권고를 불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장기간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적 혜택을 얻지 못하는 인도적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도적 개선을 요한다.

9. 기업과 인권 NAP의 조속한 수립 및 기업의 인권존중 준수 강화(쟁점목록 6)

42.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9월 정부에 대해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기업과 인권 NAP는 기업의 인권경영을 촉구하고 실천·점검의무(Due Diligence)를 이행하며, 인권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최근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2017년 대한민국 방문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하여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2017년 개최된 G20 정상회의 결과 기업과 인권 NAP 수립과 기업의 실천·점검의무 이행이 공동성명에 포함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기업과 인권 NAP 수립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위 권고들에 따라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 활동이 인권친화적으로 수행되는데 기여하는 체계적 실천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43. 기업의 인권존중 행동규범 준수와 관련하여 국내연락사무소(NCP)의 독립성 부족과 활동 부진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동관련 전문가와 중재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선임하였다고 밝혔으나, 민간위원 선임 기준과 절차가 알려지지 않아 독립적 업무 수행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또한, 총 진정 접수 건수 등 대체적인 활동 규모와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국내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중재 건수가 총 2건, 권고 건수가 1건에 그치는 등 진정이 구체적 조치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국내연락사무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내연락사무소가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접근성을 제고하고, 분쟁의 중재와 권고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 장려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44. 한편, 최근 독성 가습기 살균제품 사용으로 인하여 2016년까지 대한민국에서

5,276명이 피해를 입고²⁰⁾ 에어컨·공기청정기의 항균필터, 치약에서 살생물제 방출이 확인되는 등 기업 활동이 소비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등의 법규가 마련되어 있으나, 제품 결함 보고 및 수거 의무 발생 요건이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관련 규정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에 충분치 못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10. 성별 임금격차 해소(쟁점목록 17)

45. 1990년대 후반까지 빠른 속도로 감소하던 성별 임금격차는 2000년대 들어 15년간 5%포인트 감소에 그치는 등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14년 기준 36.6%로 해당년도 조사 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²¹⁾ 성별 임금격차는 출산·육아의 부담의 편중에 따라 여성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력단절, 비정규직에 집중된 여성의 고용형태, 성별직종 분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의 조성,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확립 등이 관건이나 개선이 더딘 상황이다. 2016년 국내 경력단절여성²²⁾의 규모는 190만 명으로 54세 이하 기혼여성의 20.6%가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3년의 20.1%에 비해 상승²³⁾한 것이다. 2016년 8월 기준 전체 남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은 26.4%인데 반하여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은 41.0%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러한 여성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은 2010년의 41.8%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²⁴⁾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제8조), 교육 및 승진에서 성별 차별 금지(제10조), 정년 및 해

20)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센터 접수현황

21) OECD, Gender wage gap

22)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여성

2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에서 성별 차별 금지(제11조) 등 핵심적 규정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병원 등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 공백 예방을 위해 여성 종사자 간 순번을 정해 임신 시기를 조절하는 ‘임신순번제’ 등 비인간적 관행이 존재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기업의 수는 여전히 충분치 못하다.

47. 쟁점목록에서 언급된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인증기업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후 관리가 미흡해 기업들이 인증을 받은 후 3년의 재인증 기간 동안 일과 가정 양립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B. 쟁점목록에 대한 세부의견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의 투명성 강화(쟁점목록 1)

48.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을 위하여 정부는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을 구성하여 연도별 이행상황 점검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 이후로 그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이 지난해 종료되었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결과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49.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부터 2021로 예정되어 있으나, 2016년 9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 이후 추가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추진 일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2017년 7월 현재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50.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이루어진다. 협의회의 의장은 법무부장관이고 위원은 정부부처의 차관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의장이 안전과 관계된 소관 부처 소속 위원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회의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균형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자 간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요구되나 국가인권정책협의회 투명성이 미흡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이 회의에 반영되기 어려운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회의 참여 경로를 확대하고 회의의 결과를 외부에 공지하는 등 투명

성 강화가 요구된다.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시 구제수단 강화(쟁점목록 2)

5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시 구제절차로 헌법재판, 소송, 행정구제 등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라고 밝히고 있으며, 사회보장 영역에서 국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여 사회보장 수준과 관련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하고 있어 유사한 상황에서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한 권리 구제도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이용이 활발한 구제수단은 이의신청 등에 의한 행정구제이다. 행정구제는 비용이 들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사안에 대하여 신속한 구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행정청의 자발적 시정을 통한 구제로서 분쟁 해결에는 적절치 않아 침해 구제수단으로서 한계를 갖는다.
52. 지난 최종견해에 포함된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범위는 규약 상의 모든 권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의 규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헌법」 상의 교육권(제31조), 노동권(제32조 및 제33조), 사회보장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건강권(제36조) 등과 같이 사회권규약을 구성하는 주요 권리의 침해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시 구제 강화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외국인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호 강화(쟁점목록 3)

53. 정부보고서 제4항은 '위원회의 최종견해 제6항과 관련하여, 헌법은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권리의 속성상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는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

소 및 학계의 태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7년 결정(2004헌마670)에서, 근로의 권리의 자유권적 기본권 요소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사회적 기본권적 요소의 경우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며, 그 외 사회권, 특히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나 최저생계보장과 관련된 공공부조 영역의 경우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확인되는 판례를 찾기 어렵다.

54. 또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공부조제도는 개별 법령에서 외국인에 대한 적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법령은 대체로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적용을 인정하나 일부 급여의 경우 제한이 따르고, 생계급여 등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가족관계 등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4.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쟁점목록 5)

55. 정부보고서 제9항을 통해 정부는 '사회권규약상 규정된 권리에 대한 국내구제절차의 현황과 국내법적 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10월 유엔인권이사회의 대한민국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시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권고에 대해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고,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서도 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56. 그러나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관련된 연구 또는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공지 또는 보도자료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파악할 수 없다. 정부는 그간의 연구 진행 상황을 알리고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포함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5.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여건 및 귀화 절차 개선(쟁점목록 10)

57. 결혼이주여성 중 취업자 비율은 59.5%로,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29.0%로 가장 많고, 서비스종사자(18.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4.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2.2%)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학력은 초졸이하(문맹 포함)가 10.7%, 중졸 21.8%, 고졸 43.5%, 대졸 24.0%로 국내 학력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월급여는 50만원 미만이 17.4%를 차지하고, 150만원 미만이 82.5%에 달하는 등 낮은 경제적 지위가 두드러진다.²⁵⁾
58. 결혼이주여성의 귀화와 관련하여, 국적 신청 후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된다. 법무부는 2016년 12월 기준 국적 심사 대기 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 10개월 이상, 자녀가 없는 경우 18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을 뿐, 국적 심사에 대한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이 심사 기간 장기화에 따른 신분 불안을 겪고 있다.

6.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해소(쟁점목록 11)

59.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재하다. 정부 예산 중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또는 인권보호와 관련된 예산이 전무하며, 관련 입법을 위한 활동도 확인되지 않는다.
60.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 및 성 평등 이념 실현을 위해 대전광역시 제정된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인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2015년 8월 위 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성평등으로 확산시키는 데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61. 성소수자의 동등한 권리 향유를 가로막는 가장 중대한 제도적 제약은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이다. 「균형법」 제92조의6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

25) 여성가족부(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며, 헌법재판소는 2011년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균형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헌법재판과 관련하여 위 조항이 이성간 성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으면서 동성 간 성행위는 형사 처벌토록 하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는 특정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7월 헌법재판소는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균형법」 제92조의 6에 대하여 다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7. 성 주류화와 여성 대표성 증진(쟁점목록 12)

62. 쟁점목록 12에서 언급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적용대상이 사업 외에 법령과 계획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4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분석평가가 26,438건에 이르렀다. 또한, 성인지에산제도 역시 대상과제가 증가해 2015년 42개 기관의 343개 세부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작성된 바 있다.
63.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 팽창과 별개로 제도의 형식적 운영과 계량적 성과 강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4년 17개 광역 시·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한 분석 결과, 평가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전년도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등의 부실 작성이 있었으며, 정책개선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평가 비율이 78.9%에 이르는 등 형식적 운영 사례가 나타났다.²⁶⁾
64. 쟁점목록 12에서 언급한 여성 대표성과 관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 부족이 지적된다. 정치 분야의 경우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는 세계 193개국의 여성의원 비율 평균인 23.3%와 아시아 국가 평균인 19%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²⁷⁾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시에 정당은 지역구의원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 934명 중 10.5%인 98명만이 여성이었으며, 모든 정당의 여성 지역구의원 후보

26) 한국여성단체연합(2015),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100가지 젠더정책

27) IPU(2017),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자 추천 비율이 15% 미만에 그친 바 있다.²⁸⁾ 이와 같은 결과는 「공직선거법」 제 47조 제4항이 정당에 대하여 여성 지역구의원 후보자 추천 노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당의 법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위반시 이행을 강제할 수단도 두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바, 법규 개정을 통한 이행 강제수단 확보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65. 공공분야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를 구성하는 공무원 중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낮아 성 불균형을 보이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상 국가와 지자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온전히 지키는 기관이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성 대표성이 저조하다.²⁹⁾ 민간 영역에서도 대기업 이사회의 여성 임원 비율이 아태지역 조사 대상 20개국 중 가장 낮은 2.4%로 나타나는 등³⁰⁾ 여성의 대표성이 저조한 상태로,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이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

8. 청년 실업 해소(쟁점목록 13)

66. 지난 5년 간 청년실업률(15세~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률)은 타 연령계층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2017년 1/4분기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 4.3%의 2.5배가 넘는 10.8%를 나타냈다.
67. 그러나 이러한 공식 청년실업률은 취업 실망에 따른 구직 포기자, 단기적 근무를 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³¹⁾에 따르면 2015년 8월 공식 청년실업률은 9.7%로 나타났으나, 잠재구직자, 잠재취업가능자 등을 고려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22.4%에 이르러 같은 기간 공식 청년실업률의 두 배를 상회했다.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6), 선거통계시스템

29) 여성가족부(2016),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현황 조사결과

30) 국제여성기업이사협회(Corporate Women Directors International), 2017

31) 한국경제연구원(2015), 고학력 청년층 체감실업률 추정과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

68. 취업 형태 측면에서도 신규로 채용되는 청년층의 64%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는 등³²⁾ 청년 고용은 질이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청년 고용 대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청년인턴제 확대 등 저임금의 단기간 일자리에 집중되어 청년 고용의 질적 저하를 심화시킨 바 있다.
69. 2017년 6월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중소·창업기업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일자리의 질적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였다. 위 계획은 정부의 조치만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주 내용으로 하여 달성 가능한 한편, 단기적 과제를 위주로 수립되어 장기적 일자리 창출 전략이 공백으로 남아있는바,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 계획의 면밀한 수립과 추진이 요구된다.

9.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으로의 인상 및 최저임금 준수(쟁점목록 16)

70.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5만2천원, 2인 가구 281만4천원, 3인가구 354만원, 4인가구 446만7천원 등이다. 한편, 2017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18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급환산액은 157만원이다. 2018년 시간급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월급환산액이 2인 가구 중위소득의 56%, 3인 가구 중위소득의 44%에 그치는바 최저임금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 및 빈곤상태 개선을 위하여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71. 한편,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2015년 기준 11.5%에 이르러³³⁾ 최저임금의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분포는 사업장이 영세할수록(300인 이상 사업장 1.7%, 1-4인 사업장 27.9%), 고용형태가 불안정할수록(상용직 2.5%, 임시직 26.9%, 일용직 34.4%) 높았으며, 여성, 19세 이하, 60세 이상, 고졸이하 집단에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계층이 생활개선은 물론 장기적 직업능력 개발을

32)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33)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위한 여력 또한 갖기 어려움을 의미하므로, 노동시장 양극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 제재와 근로감독 강화 등 대책이 요구된다.

10. 과도한 근로시간의 단축(쟁점목록 17)

72. 2015년 대한민국 취업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을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것이며, OECD 회원국의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이나 많은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 50조는 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동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주 당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주당 최장근로시간인 52시간 이상의 근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73.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연구³⁴⁾에 의하면, 주5일(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663만 명이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가 345만 명에 이른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이 근로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동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라 농축산업 등 종사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주 당 12시간의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최대 16시간의 휴일근로가 추가로 가능해 주당 총 68시간의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74. 이러한 제도적 환경 아래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기존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장시간의 근로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취업난을 야기할 뿐 아니라 취업자에게는 과도한 근로 부담으로 작용하여 적절한 휴식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이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휴일근로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주 당 12시간의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34)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16),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과 의의

11. 비공식부문 근로자 근로 여건 및 지위 개선(쟁점목록 18)

75. 매 년 약 10만 명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전에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노동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학습 내용의 실제 적용과 경험 축적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전공과 무관한 실습업체로의 파견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현장실습생이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장실습생이 실질적인 근로행위를 한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나, 실질적인 근로행위를 함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이다.
76. 2017년 2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고객의 서비스 해지를 막는 업무를 담당하던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이전 2012년에 울산신항만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현장실습생이 작업선 전복으로 사망하고, 2014년 자동차제조 협력업체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현장실습생이 공장 지붕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77. 한편,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가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자로 남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노동3권과 사회보장권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 등을 정부에 권고하였으나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는 수용되지 않았다.
78.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가사근로자는 가사업무 제공과 숙식을 교환하며 생활하는 넓은 의미의 가정의 일원으로 고려되었으나, 현재 가사돌봄노동은 시장화되어 산업을 형성한 상황으로 법 제정 이후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가사근로자들이 이미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사회적 보호를 받는 것을 고려할 때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과 그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바, 2017년 7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2. 성희롱 근절을 위한 조치 강화(쟁점목록 20)

79. 성희롱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형사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언어적 성희롱 등에 대해서도 형사적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³⁵⁾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현재 유사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³⁶⁾
80. 성희롱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행위자를 징계하거나 징계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외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81. 성희롱 예방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은 상시 10명 미만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형태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예방 교육 효과 및 관심 부족이 우려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³⁷⁾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이 90.8%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³⁸⁾에서는 조사대상의 59.5%만이 직장에서 성교육 예방교육(서면 또는 유인물 교육 포함)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교육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발생 사례가 적지 않은 바³⁹⁾,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35) 2014. 4.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 포함

36) 2017. 5.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반복적 성적 언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37) 여성가족부(2015), 성희롱 실태조사

38)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6), 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39) 한국성희롱예방센터(2016), 성희롱 피해 상담사례 527건 중 41.3%인 218건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13. 노동기본권 보장(쟁점목록 21)

82. 일반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대상 여부가 직급과 보직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단체행동권은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 등 극히 일부 공무원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있다.
83. 국제노동기구는 지속적으로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해 왔으며, 2017년 6월 열린 제330차 이사회에서도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당 규정을 폐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직된 교사가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3년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였고,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해직 공무원이 노조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있다.
84. 쟁점목록에 언급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익사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한 직권중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이 높게 결정되어 노조 측의 교섭력을 지나치게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85. 한편,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방해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억제 하라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 철도노조 파업 개시 직후 노조 간부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는 등 쟁의행위 직후 사측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14.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쟁점목록 24)

86. 2016년 가정폭력 검거건수⁴⁰⁾는 45,614건으로 2012년의 8,762건 대비 5.2배가 증가하였다.⁴¹⁾ 그러나 가해자 처벌은 약해지는 추세로 가정폭력 사건의 기소율이

발생

40) 검거건수는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종결시에 작성하는 검거통계원표의 작성 수를 기준으로 함

41)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실(2017), 경찰청 제출 자료

2012년 14.8%에서 2016년 8.5%로 감소하였으며, 구속률 또한 감소하여 2016년 구속률이 0.9%에 그쳤다. 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으며, 상당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87. 가정 내 범죄에 대해 적극적 형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가정 유지의 목적을 1차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나, 이에 대해 피해자 보호 측면이 균형 있게 고려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따른다. 또한, 소극적 형사처분은 가정폭력이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을 야기하여 가정폭력 해소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15. 노숙인 대책의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쟁점목록 26)

88. 정부는 노숙인에 대하여 시설 입소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노숙인이 시설 입·퇴소와 거리노숙을 반복하는 현상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노숙인에게 매년 6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 지원 정책은 노숙자 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 규모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노숙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노숙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
89. 장기간 주거로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쪽방이나 고시원 거주 가구, 비닐하우스 주거 가구 등 비주택 가구, 주거비 상승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한 보호 또한 요구된다. 이에 따라 비주택가구의 주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에 대하여 주거급여 제공, 공공임대주택 공급, 금융지원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90. 주거와 관련하여 최근 대두된 사회적 문제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향, 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민간임대를 활성화하여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2015년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은 역대 최고인 21.8%로 상승하였으며, 소득분위(1~5분위)로 살펴볼 때 1분위 청년가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⁴²⁾ 이에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완화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16. 강제퇴거의 엄격한 제한(쟁점목록 27)

91. 정부보고서에서는 정비사업 시행 시 주민동의요건을 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다수 정비사업에서 주민동의를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을 의미한다. 대도시 정비사업 지역의 경우 세입자가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세입자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철거시기 제한과 관련하여서도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 시행시에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동절기 철거가 금지 될 뿐,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시에는 동절기 철거금지가 제도로서 보장되지 않고 있다.
92. 정부는 정부보고서를 통해 행정대집행의 엄격한 제한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퇴거를 종용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고용한 사설 철거용역들에 의한 폭력이 심각하다. 2016년에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사설 용역들이 소화기를 건물 안 주민들에게 직사하며 폭력적인 강제퇴거를 강행한 사례들이 월계동 인덕마을재개발 지역과 신수동재건축 지역 등 수차례 보고되었다.
93. 강제퇴거는 주거권 뿐 아니라 생명권, 안전에 대한 권리, 사생활 불간섭에 대한 권리 등 연관된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4호는 ‘강제퇴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제법의 관련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강제퇴거가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성과 비례성을 유지하여 이루어지고 강제 퇴거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형태의 강제퇴거 상황을 엄격히 통제하는 종합적인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2) 한국도시연구소(2017), 박근혜 정부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대한 실증보고서

17. 하천 수질 악화로 인한 식수권 위협 해소(쟁점목록 28)

94. 16개 보 건설 및 하천변 개발 사업을 골자로 하는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강의 유속이 느려짐에 따라 대형하천에서 녹조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질오염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녹조가 심해질수록 정수 과정에서 염소 투입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총트리할로메탄 등의 소독부산물도 증가도 증가한다.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의 국내 먹는 물 수질기준치는 $0.1\mu\text{g/L}$ 지만 독일은 이 보다 낮은 $0.05\mu\text{g/L}$ 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에 국내 정수장에서 총트리할로메탄의 농도가 $0.05\mu\text{g/L}$ 넘긴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수돗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95. 최근 정부는 4대강 16개 보 중에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6개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일각에서는 위 결정이 수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하천 수질 회복과 국민들의 식수 안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18. 학업 부담 완화를 통한 청소년 건강권 보호(쟁점목록 31)

96. 정부는 학원의 교습시간이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2시 후에는 학원교습을 할 수 없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⁴³⁾ 그러나 실제로 권고에 따라 22시 이후 학원 교습을 제한하는 시도는 17개 시도 중 5개 시도에 불과하고, 8개 시도는 자정까지 학원교습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등 권고에 따른 야간교습 제한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97. 조례에 의하여 야간교습이 제한되는 학원과 달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의 야간 자율학습은 특별한 제한 없이 심야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야간자율학습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2시를 넘어 24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조사 대상의 2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⁴⁾

43) 정부(2015),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대한 제4차 국가보고서

98. 다수 학생들이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간자율학습이 학생들의 수면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학원 수업보다 크고 광범위할 수 있다. 전국의 각 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면 부족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원·과외를 이유로 든 학생이 조사 대상의 45.3%에 이른 가운데, 야간자율학습을 이유로 든 학생도 22.8%를 나타냈다. 특히, 야간자율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일반/특목/자율고등학교 학생 대상 조사에서는 최근 3년 간 학원 또는 과외보다 야간자율학습을 수면 부족의 이유로 꼽은 학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⁴⁵⁾

학생 수면 부족의 원인(2015년)

분류	야간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학습	게임	채팅, 문자 메시지	드라마, 영화 시청 등
소계	22.8	45.3	44.5	35.8	51.9	56.3
초등학교	0.0	52.3	55.7	44.3	28.7	59.7
중학교	8.1	51.4	41.6	40.7	62.1	62.3
일반/특목/자율고	45.7	43.9	47.6	24.4	49.1	47.5
특성화고	11.1	13.7	17.8	56.9	71.3	69.7

99. 야간 학습 외에 입시를 목표로 하는 주입식 학습, 잦은 시험, 능력과 적성에 대한 배려가 적은 교습과정 등도 학업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학생들은 두통이나 위궤양, 근육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 뿐 아니라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등 정신건강 상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부재하다.

100. 학업 스트레스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가장 심각한 영향은 자살이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원인으로 ‘학교 성적’(42.%)이 가장 높은

44) 서울시의회 박호근 더불어민주당 의원(2016)
4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⁴⁶⁾, 실제 자살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자살 직전 성적문제를 고민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⁴⁷⁾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살에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교육방식과 학업평가방식 개선, 학습시간 축소 등을 통한 학업 스트레스 완화가 요구된다.

19. 공교육정상화법 보완(쟁점목록 32)

101. 청년의 구직이 어렵고 구직자의 절반 이상이 열악한 처우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게 되는 현실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높은 사교육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명문대 입학에 의해 취업 경쟁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막고 학교교육에서 선행교육을 규제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취지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 정상화법)이 제정되었으나 가시적인 사교육 억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에도 모든 학교급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상승하고 있다.

학교급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연도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2	23.6	21.9	27.6	22.4
2013	23.9	23.2	26.7	22.3
2014	24.2	23.2	27.0	23.0
2015	24.4	23.1	27.5	23.6
2016	25.6	24.1	27.5	26.2

4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47) 한림대 자살과 학생 정신건강 연구소(2014), 자살 학생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 조사 결과 분석

102. 「공교육정상화법」은 각 급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며 위반시 시정명령과 재정지원 중단,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학생 모집 정지 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만을 두고 있어 사교육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 또한,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선행학습 광고 금지 등 위반 시에도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아 금지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7년 4월 교육부가 서울 내 학원 밀집지역 내 학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펼친 결과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학원 88개소를 적발하였으나 특별한 처분 없이 해당 광고를 삭제토록 하는 행정지도에 그친 바 있으며, 현재 학원의 선행학습 유도 광고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103.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당시 학원 선행학습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학원등록 말소, 1년 이내 교습 정지 명령, 학과라치제 도입 등 수단이 법안에 포함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이 법의 실효성을 저해하였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20. 미세먼지로부터의 건강권 보호

104.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Group 1 :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로 분류하는 등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알려지고 있다.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⁴⁸⁾조사에서 대한민국의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Average Exposure to PM 2.5)가 180개 국 중 174위로 나타나는 등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다.
105. 그러나 미세먼지의 유발 원인과 국내·국의 오염원 비중에 관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연구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의 유발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외교적 관계 악화를 우려해 외부로부터의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때로는 외부적 영향을 전면 부각시키며 대내적인 책임을 축소시키고 있다.

48) 세계경제포럼(WEF), 예일대, 컬럼비아대 환경연구소(2016)

106. 미세먼지의 유발 원인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수립되기 어렵다. 정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등은 도로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를 중점으로 하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저조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⁴⁹⁾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대기환경관리의 접근 방식도 한계로 지적된다.
107. 현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일평균 미세먼지 $100\mu\text{g}/\text{m}^3$, 초미세먼지 $50\mu\text{g}/\text{m}^3$ 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나쁨'으로 발표되고 있다. 위 기준은 WHO의 권고수준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 환경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 운용 중인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중 54%가 정확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⁵⁰⁾ 수도권 외 지역의 측정소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측정된 대기질의 정확성 및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108. 나쁜 공기질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활동을 제한하여 건강권뿐 아니라 연관된 제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특히 시간적·공간적 영향 범위가 넓어 노약자, 어린이, 호흡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협으로부터 분리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심각성이 크다. 이에 정부차원의 연구를 통한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원 규명과 그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환경기준 설정과 측정을 통해 미세먼지 노출의 영향을 정확히 알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9) 국회예산정책처(2016),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

50) 감사원(201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자료집

7.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NGO 보고서



대한민국 권리 실태 및 권고 사항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NGO 보고서

제62차 회기
2017년 9월 18일 ~ 2017년 10월 6일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74개 단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대구여성회, 문화연대, 민달팽이 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오픈넷, 성매매 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30세 이상 레즈비언 모임 '그루터기',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SOGI법정책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즈비언 라디오 방송 제작팀 레주과, 무지개인권연대, 사단법인 신나는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교연대,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땃똥,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이주와인권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네트워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넷,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서문

한국의 74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NGO 대응 모임은 2017년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리는 62차 회기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2017년 2월 27일에서 3월 3일 사이에 열린 60차 회기에서 위원회가 채택한 쟁점목록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은 2009년 3차 사회권 심사 이후 경제규모는 팽창하였으나 부의 집중과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한 불안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2003년 이래 지속적으로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높은 자살률(2015년 기준 10만명당 26.5명)과 OECD 평균의 4배에 달하는 높은 노인빈곤율(49.6%), 세계 최저에 가까운 초저출산 현상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불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한편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촛불시민운동이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에 이르렀고, 이어진 지난 5월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으나, 한국에서의 사회권의 현황은 그리 밝지 않다.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노동의 유연화가 이루어졌으며,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은 강화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상태에 시달리고 있다. (Issue 15, 18) 재벌대기업-하청중소기업의 수직적 계열화, 불공정 거래로 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는 크게 확대되었으며, 노동소득 분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노동조합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Issue 21) GDP 대비 복지지출은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빈약한 사회안전망은 경제적 집중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결하기에는 취약한 수준이다.

사회권 규약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 규범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Issue 2)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하지 않고 있다. (Issue 5)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않았다. (Issue 8) 국

가인권의 위위 선임 절차의 투명성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심각한 사회권 침해 사안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Issue 2)

한국 정부의 주장과의 달리, 성소수자의 인권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Issue 11) 난민과 외국인의 사회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Issue 3, 9)

가족, 임신부, 연소자들의 사회권은 실질적 진전이 더디기만 하다. (Issue 10, 12, 17, 20, 24, 25, 30) 사회보장수급권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수는 2009년도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였다. (Issue 22, 29)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소득대체율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Issue 23) 주거빈곤층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나, 보수적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늘리지 않았다. (Issue 26) 계급화된 사회구조로 인하여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다. (Issue 31, 32)

한국 NGO 대응 모임은 위원회의 심사에 정보를 제공하여, 이 보고서에 강조된 우려의 영역들이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최종 권고와 제안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일반사항

1.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에 대한 평가,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목표, 특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이전 계획의 평가와 현 계획의 작성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국가인권정책협의회와, 협의회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 한국 정부는 2차 NAP 이행평가구단 구성 시에 시민사회 관계자를 포함했다고 밝혔으나 그 명단을 살펴보면 법조인, 학계, 연구원, 종교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시민사회 관계자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6년 9월 실행된 3차 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초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미 3차 NAP가 시행되고 있어야 하는 2017년 8월 현재까지도 초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2016년 1월에는 3차 NAP 수립 관련 핵심추진과제 작성을 위한 의견수렴용 양식을 웹사이트에 게재하였으나 언제까지 어디로 의견을 보내야하는지, 실제 수립된 의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NAP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 당사국 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를 다루는 구제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가 모든 규약상 권리를 포함하는지, 개인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반에 관한 진정을 인권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지, 지난 5년간 이와 같은 권리에 관하여 조사를 한 사건의 데이터를 제공해주십시오.

1) 구제절차

- 정부는 사회권 규약에서 보호되는 권리에 관해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 행정소송, 명령과 규칙에 대한 사법심사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사회권규약 조항을 구속력 있는 국내법으로 거의 적용하지 않아서¹⁾, 사회권 침해를 받은 사람들은 국내법상 구체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는 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다.
- 또한, 한국법상 법원에 행정청에 대한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사회보장급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피해자는 거부처분에 대한 위법성만 다룰 수 있고, 직접적으로 해당 서비스 및 급부의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없어,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렵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임시로 급부를 하도록 하는

1)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과 법원, 대법원 국제인권법학회 회원 공동집필, 2013

가처분 제도도 마련되지 아니하여 권리구제의 적시성 및 실효성도 거의 없다.

- 행정입법이 사회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권리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²⁾ 소를 각하하는 경우가 많다.
-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사회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하여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여 법원에서 사회권 침해를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사회권 규약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라.
- 사회권 규약상 권리 침해로 재판을 청구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소송 과정에서 임시로 급부를 하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라.
- 적절한 사회서비스와 급부를 제공하지 못한 행정청을 대상으로 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라.

2)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해 조사나 구제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고, 다만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하다. 이에 2009년 유엔사회권위원회는 3차 심의에서 사회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 강화에 대해 권고하였으나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 이로 인해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침해 등 사회권 침해에 대해 인권위에 호소할 수단이 없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한계로 그동안 시민사회는 사회권과 관련한 피해를 차별진정이나 긴급구제를 요청해 인권위의 최소한의 개입을 끌어냈다. 그러나 그것도 인권과 무관한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들로 임명되면서 어려워졌다. 대표적인 것인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도지사가 폐원하려하자 이에 대해 긴

2) 특정한 범조항에 대한 소송은, 그 범조문이 별도의 이행행위 없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 허용된다.

급구제요청을 했으나 이를 기각한 것³⁾과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밀양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주민들을 탄압한 사례다⁴⁾. 또한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하는 유성기업에 대한 차별 진정을 5년간 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인권위의 결정이 후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권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회의록에 인권위원들의 입장이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정권과 기업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원들이 사회권 침해 관련 긴급구제나 차별진정을 기각해도 공적인 비판이 불가능하다. 2017년 정권이 바뀌고 인권위 개혁과 위상 강화가 논의 중에 있으며 시민사회는 인권위 회의록 공개 및 실명 공개 등의 개혁안을 제출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차례에 걸친 ICC-SCA의 등급평가에서 보류를 3번이나 당했다. 등급 보류의 이유는 인권위원 인선 절차의 투명성 결여, 시민사회의 참여 부족 등이 그 이유다⁵⁾. 2016년 5월 3일에 최종적으로 A 등급평가를 받게 되었으나, GANHRI-SCA는 독립적인 인선기구 설립을 권고하였다⁶⁾. 인권위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임명권자만 있지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선 과정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돼있지는 않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침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법 개정 전이라도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사회권과 관련한 차별 및 긴급구제 등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권위 결정

3) 진주의료원은 도지사에 의하여 2013년 5월 폐원되었으며, 강제퇴원당한 22명의 환자가 사망하였다. 관련 기사 : http://english.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304192040587&code=710100

4)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23 December 2013) paras. 75-78.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13/191/02/PDF/G1319102.pdf?OpenElement>

5) ICC-SCA,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16-20 March 2015), pp. 39-41. <http://nhri.ohchr.org/EN/AboutUs/ICCAccreditation/Documents/SCA%20MARCH%202015%20FINAL%20REPORT%20-%20ENGLISH.pdf>

6) GANHRI-SCA,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9-13 MAY 2016), pp. 40-41. <http://nhri.ohchr.org/EN/AboutUs/ICCAccreditation/Documents/SCA%20FINAL%20REPORT%20-%20MAY%202016-English.pdf>

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위 회의록과 인권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인권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 GANHRI-SCA에서 권고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위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3. 당사국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규약상 열거된 비시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그들이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또한 규약상 어떠한 권리가 당사국 보고서 상의 '성격상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또한 당사국 보고서에 언급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규약의 제11조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⁷⁾,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⁸⁾. 그러나 비시민은 실제로 경제문화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 데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책임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나아가 비시민(외국인)은 헌법상 사회권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⁹⁾. 이는 비시민(외국인)에게 사회적 기본권 침해로 이유로 한 헌법재판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 비시민의 사회권적 기본권은 법제도에서도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인은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중 배제가 가장 철저한 것은 공공부조 영역이다. 영주권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이 없다. 결혼이주민도 한국인 배우자의 한국인 국적 부모와 주거나 생계를 같이 하거나, 한국국적 미성년자를 임신 또는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수급자가 될 수 있다.¹⁰⁾ 외국국적 아동은 학대나 유기 피해아동 등

7)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

8)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2항

9) 헌법재판소, 2017. 8. 30. 2004헌마670 결정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 실제 가구원수가 급여에 반영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 해당 이주민이 속

국가에 의한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¹¹⁾. 장애가 있는 외국인 중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제한되어 있고, 모든 외국인은 장애복지서비스 중 핵심인 활동보조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¹²⁾ 외국인, 특히 이주노동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보험 가입자격이 주어지거나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도 보험급여에서 차별적 적용을 받거나 장기체류를 전제로 하는 자격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없어 보험료는 똑같이 납부하면서도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비시민이 사회적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라.
- 외국인 아동을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라.
- 장애인 외국인, 특히 영주권자, 결혼이주민, 난민 등 한국에 정주하는 외국인도 활동보조서비스 등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4.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 부문에서의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고위공직자가 부패 등으로 기소, 선고된 숫자에 대한 정보,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년)이 적용된 사건의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 정부는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국제 평가기관들이 평가하

한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11) 부모의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공공부조 대상이 되는데(이 때 급여의 지급은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나 위탁가정에 한다), 외국국적 아동은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제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이외의 외국인은 장애인등록이 불가능하다. 장애인등록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장애인등록이 허용되는 체류자격 소지자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제2항의 위임을 받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결국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외국인도 가장 필수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는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은 급락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평균 53점으로 조사대상국 176개국 중 52위로¹³⁾ 2008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였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여야 하나,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¹⁴⁾>은 신고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제보자 보호의 수준도 미흡하다.

-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업무를 관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부패방지위원회가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되어 지금의 국민권익위원회로 재편된 것으로,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부패방지기구의 위상과 의미를 약화시키고, 업무의 명료성과 전문성도 떨어뜨렸다. 유엔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은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없이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독립성을 부여받은 부패방지기구의 존립을 보장해야 한다(제6조)고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좌초시킬 수 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현재의 나열해서 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하여 중대한 기업범죄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라.
-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하라.
- 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중단하고, 안정적인 법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라.

13) https://www.transparency.org/news/feature/corruption_perceptions_index_2016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09호)

5. 당사국 보고서에 언급된 규약상 권리에 관한 국내구제절차에 관한 연구 결과와 후속조치가 있었다면 후속조치에 대해 알려 주시고, 규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 현재 한국 정부는 규약 선택의정서를 서명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 사회권위원회는 정부에 선택의정서 서명을 권고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비준의 필요성과 영향을 검토한다는 답변만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권 국내 구제절차에 관련하여 지원한 연구가 2014년 완료되었다고 밝혔으나, 연구 결과는 민간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정부는 규약 선택의정서를 지체없이 서명하고 비준하라.
- 규약상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 구제절차를 마련하라.
- 2014년 종료된 선택의정서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및 추가 연구 진행상황을 공개하라.

6. 기업이 경제사회문화적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고, 국내외 기업 활동, 특히 채굴 부문과 토지수용을 하게 되는 상업적 활동에서 '상당주의의무(due diligence)'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당사국이 개발원조사업이나 해외에서 활동예정인 기업에게 요구하는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 한국정부는 2017년 6월에 발표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한국 방문보고서에 권고된 내용에 대하여 수용여부를 아직까지 표명하지 않고 있다¹⁵⁾. 특히 기업의 해외활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NCP를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 외에, 상당주의의무(Due Diligence)를 포함한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 그러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한국 NCP가 어떻게

15) Report of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on its visit to the RoK, UN Human Rights Council, 1 May 2017, A/HRC/35/32/Add.1

공정하게 운영되고 가이드라인을 장려했다고 주장하는지 의문이다. 20건이 넘는 진정에 대해서 1차평가 단계에서 기각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2016년에 있었던 오직 2건의 조정 및 화해절차도 문제해결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NCP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공기관이거나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 소속이다. 2017년에 한국NCP에 참여한 노동법 전문가 선임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으며, 이 노동법학자는 친 기업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NCP사무국을 민간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맡고 있는 것도 다른 NCP에선 찾아볼 수 없다. 한국정부는 NCP를 OECD 가이드라인을 장려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제에 접근하도록 하는 기관이 아니라 중재(Arbitration)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NCP는 2019년 동료평가를 앞두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한국 정부는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권고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 한국 정부는 2019년 동료평가 이전까지 다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NCP 개혁을 실시하라.

7. ODA에 배정된 GNI의 정확한 비율을 제시하고, GNI의 0.7%라는 국제적 합의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전망, 보고기간 동안(2009년 말~2015년 말)에 최저개발국가에 대한 양자원조 중 증여율(grant element)이 어느 정도로 증가하였는지를 알려주십시오.

- 2015년 11월 확정된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2차 기본계획에서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DAC 회원국들의 최근 평균치인 GNI 대비 ODA 비율 0.3%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하고 그에 앞서 2016년 0.15%, 2017년 0.16%, 2020년 0.20%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차 기본계획 실시 첫 해인 2016년

GNI 대비 ODA 비율은 0.14%에 그쳤다.

- 2010년 10월 확정되었던 1차 기본계획에서는 2015년까지 GNI 대비 0.25%까지 ODA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실제 2015년 실적은 0.14%에 불과했다. 2010년 0.12%에서 단 0.02% 상승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1차 기본계획에서 수립했던 목표치 0.25%를 0.20%로 대폭 내렸다. 그러나 지금 추세라면 2020년에도 0.20%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0.7% 달성은 2030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 한국정부가 최빈국에 제공한 양자원조 중 유상원조의 경우 증여율이 2009년 86.4%에서 2013년 91.0%로 증가하였다. 1978년 DAC가 내린 권고에는 부합한다. 그러나 최빈국에 대해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가 무색하게 한국은 다른 DAC 회원국에 비해 최빈국에 대한 유상원조 비중이 높은 국가들 중 하나이다. 한국의 양자원조에 대해서는 증여율 증가치 보다 최빈국 유상원조 비중 추이를 살펴야 한다. 2016년 기준 유상원조 중 최빈국 비중은 42%에 달한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GNI 대비 ODA 비율 0.20% 달성을 위해 다자원조, 예산지원 등 방법으로 ODA를 확대하라.
- 유상원조 중 최빈국 비율을 대폭 축소하라.

차별금지(3 조)

8. 당사국이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는지 여부, 그러하다면 법안의 기본적 특성과 채택을 위한 시간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 유엔인권기구¹⁶⁾⁽¹⁷⁾⁽¹⁸⁾⁽¹⁹⁾ 와 2차 UPR²⁰⁾ 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협약과 약정상의 권리를 차별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2차 UPR 중간보고서에서 “차별금지 사유를 포함한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²¹⁾. 그러나 2007년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7가지 범주²²⁾를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논쟁을 일으킨 것은 정부였다.²³⁾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버릇에 대한 연구를 공개하지도 않았고, 공개적인 캠페인을 하지도 않았다. 법률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사회권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0조에 따라 사회권규약 2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차별에 대한 사유를 분명히 밝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라.

9.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을 성별, 연령, 출신국가, 인종으로 분류하여 보고기간동안 난민 등의 지위를 부여 또는 거부한 이들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
- 16)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public of Korea, 17 December 2009, E/C.12/KOR/CO/3, at para. 9.
 - 17)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Republic of Korea, 1 August 2011, CEDAW/C/KOR/CO/7, at para. 15.
 - 18)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2 February 2012, CRC/C/KOR/CO/3-4, at para. 29.
 - 19) UN Human Rights Committee (HRC),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3 December 2015, CCPR/C/KOR/CO/4, at para. 12-13.
 - 20)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12 December 2012, A/HRC/22/10, at para. 124.24, 124.33. “124.24. Adopt the Anti-discrimination Act as a matter of priority while encompassing also grounds for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Czech Republic); Include in the Anti-discrimination Law a specific 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Spain); 124.33. Study the possibility of intensifying measures aiming at eliminating all discriminatory treatment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Argentina).”
 - 21) Republic of Korea, Second universal periodic review mid-term progress update by the Republic of Korea on its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made in October 2012
 - 22) 삭제된 7가지 범주: 성적지향, 병력(military status),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학력
 - 23) Human Rights Watch, “South Korea: Anti-Discrimination Bill Excludes Many”, 6 November 2007. <https://www.hrw.org/news/2007/11/06/south-korea-anti-discrimination-bill-excludes-many>

난민신청 처리에 소요되는 평균 대기 시간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연관된 「난민법」의 주요 규정을 알려주십시오.

- 한국에서 난민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1994년부터 2017. 4.까지의 누적 난민신청자 수는 총 25,510명이다. 그 중 난민인정자는 694명으로 난민신청자 대비 인정자 비율은 3.9%에 불과하다. 난민인정자 중 가족결합을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224명으로 난민인정자의 약 1/3을 차지한다²⁴⁾.
- 2017. 4. 기준 난민심사 결과 인도적체류허가를 부여받은 외국인인 1,321명이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도적 사유로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입국당국의 재량으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다. 인도적 체류허가자 수는 난민인정자의 약 2배로, 까다로운 난민인정기준으로 인해 난민인정 받지 못한 인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적체류허가자가 보장받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난민신청자와 차이가 없다. 인도적체류허가자는 제한적으로 취업이 허가되는데,²⁵⁾ 가족결합 등 한국에 정착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²⁶⁾
-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두 임의규정으로 급여 제공여부는 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다. 주거시설 지원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소로 이루어지는데, 전국에 한 곳밖에 없고, 2016년 말 기준 입주 인원은 65명에 불과하다.²⁷⁾
- 생계비 지원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2016년 기준 769명이며, 지원기간은 평균 2.8

24) 난민인권센터의 법무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2017. 8. 25. 최종접속) <http://www.nancen.org/1622>

25) 인도적체류허가자는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적체류허가자는 대부분 노동자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찾게 되고, 고용주 중 많은 경우 외국인을 일일노동자로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입장에서 취업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6) 인도적체류허가자는 안정적 일자리를 전제로 하는 직장의료보험은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가입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일일노동자로 일하는 등 안정적 일자리가 없는 경우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인도적체류허가자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여 개인사업을 할 수 없다.

27) 2017년도 중앙행정기관외국인정책시행계획 406면

개월 이다.²⁸⁾ 2016년 난민신청자 총 7,542명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²⁹⁾ 2016년 기준 생계비 지원금액³⁰⁾은 아래와 같이 정부 발표 최저생계비³¹⁾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표 1] 난민 생계비 지원금액과 정부 최저생계비 비교

(단위: 원, 2016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난민신청자 생계비	418,400	712,500	921,800	1,131,000	1,340,300	5인 가구와 같음
최저생계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 난민신청자가 생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난민신청 후 6개월 이내고, 이 기간 생계비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행의 난민신청자 지원제도는 상당수의 난민신청자들을 불법 취업이나 자선에 기대토록 내몰고 있다.
- 난민신청자는 지역건강보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직장건강보험은 안정적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없는 난민신청자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외국인 노동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비 지원사업은 종목과 예산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한하며, 한정된 병원에서만 제공된다³²⁾.
-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인정자에 대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인정자는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인 등록, 활동보조서비스 등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다

28) 법무부, 2016년 난민현황

29) 법무부, 2016년 난민현황

30) 법무부, 보도자료 '난민신청자 기초 생계보장을 위한 생계비 지원 확대' (2015년 12월 발표)

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6호

32) 의료비 지원사업은 난민과 아이들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배우자와 아이들, 결혼이주민과 아이들,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홈리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체 예산은 2013년 40억원에서 2016년과 2017년 30억원으로 점차 삭감되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활비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을 실질적 필요에 맞게 확대하라.
 - 난민신청자 주거지원을 다양화하고 전국적으로 접근가능한 주거지원을 마련하라.
 - 모든 인도적체류허가자들에게, 취업허용, 건강보험 가입, 가족결합, 교육접근, 사업자 등록 등 한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라.
10.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여성의 빈곤척도, 기대수명, 문맹률 및 고용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척도 등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최근의 통계자료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영주자격 취득 또는 귀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 여성가족부의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³³⁾ 결혼이민자는 국민 전체 취업자에 비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고(29% 대 13.4%), 서비스직 종사자의 비중 또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18.7% 대 10.5%). 특히 단순 노무직 종사자 비중은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 귀화자가 전체 취업자에 비해 상용직 비중은 훨씬 낮고(48.5% 대 34.9%) 임시직(28.6% 대 19.6%) 및 일용직 비중(20.8% 대 6.0%)은 훨씬 높다. 결혼이민자의 노동 조건은 한국인보다 열악하며, 이러한 실태가 반영된 결과 결혼이주민들은 한국 생활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29.8%로 1순위로 꼽고 있으며, 이는 배우자와의 갈등 요인이기도 하다.
 - 현행 국적법은 귀화 허가 요건의 하나로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행단정’요건에 위반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주민이 과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범칙금을 납부했거나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품행미단정이라며 결혼이주민의 귀화신청을 불허하고 있다. 한편

33) http://www.mogef.go.kr/mp/pccd/mp_pccd_s001d.do?mid=plc503

혼인생활이 파탄 난 경우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민에게 귀화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하나, 결혼이주민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가하고 있어 신체적 폭력 이외에 경제적·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귀화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결혼이민자와 가족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훈련과 교육을 지원하라.
-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민이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후에도 거주자격을 취득하거나 귀화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라.
- 국적법상 귀화요건을 보다 투명하고 예견가능하게 개정하라.

11.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철폐하고 금지하기 위하여 취한 입법적, 행정적, 여타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 한국의 LGBTI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모두 차별과 낙인을 경험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 조사에 따르면,³⁴⁾ 응답자의 44.8%가 성정체성으로 인하여 직장에서의 차별을 경험했으며, 레즈비언, 게이 및 양성애자의 14.1%, 트랜스젠더의 16.5%가 성정체성을 이유로 사임 또는 퇴직을 권고받았다. 또한 LGBTI와 성별 정체성이 형성중인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더 심각하다.³⁵⁾ 2016년 혐오발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장 혐오발언을 많이 경험한 응답자는 LGBTI였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동성애의 확산”을 막겠다고 주장한 기독교 정당이 2.63%의 득표를 얻어서,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³⁶⁾

34)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urvey on the situation of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2014

35) “54% of LGBTQ youth said they were harassed by their friend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urvey on the situation of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2014.

36) The Korea Herald, “Religion-affiliated parties want to ‘protect’ country from Islam, homosexuality”, 11 April 2016.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60411001013>

- 차별은 정부로부터 시작된다. LGBTI 단체인 비온뒤무지개 재단은 법무부로부터 설립허가를 거부당했는데 표면상 이유는 성소수자라는 좁은 인권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법무부는 보다 폭넓은 ‘일반적 인권’ 주제를 다루는 단체만이 설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³⁷⁾ 서울퀴어페스티벌의 행진은 2015년 경찰에 의해서 제한되었다.³⁸⁾ 교육부는 성적 소수자를 새로운 성교육 지침에서 제외 시킴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인 정보, 건강, 교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³⁹⁾ 군형법 제92조의6⁴⁰⁾은 군대내에서 합의된 동성 성관계를 형사범죄로 보며,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유일한 법률규정이다. 대부분의 남성에게 (일정 기간의) 군 복무가 의무인 한국에서, 이 조항은 보편적인 동성에 금지가 된다.⁴¹⁾ 한국 정부는 사실혼 관계에 인정되는 권리를 동성커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성커플은 연금, 주택, 국민건강보험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있어 차별을 경험한다.
- 또한 LGBTI는 ‘동성애’가 ‘치료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전환요법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트랜스젠더는 법적 성별 인정이나 군복무 면제를 위하여 전환불가능한 수술을 받을 것이 강제된다. 간성(intersex)인 사람, 특히 유아, 어린이, 청소년은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없이 불필요한 의학적 수술을 직면하게 된다.
- LGBTI에 대한 이러한 광범위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UN 헌장, 세계인권선언 및 대한민국이 비준한 인권 조약,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LGBTI에 대한 평등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LGBTI를 위한 NAP 수립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성적 지향과

37)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on hi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A/HRC/32/36/Add.2, at para. 49.

38) Human Rights Watch, Dispatches: No Parade, but Pride Preserves in South Korea, 1 June 2015

39) Human Rights Watch, “South Korea Backslides on Sex Education”, 17 February, 2017

40) 군형법 92조의 6(추행) 제 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1) The Korean Herald, “Gay conscientious objector gets Canada asylum”, 15 December 2011.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11215000521>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모든 행정, 입법 및 사법적 조치를 제공하라.

- 사회권 규약에 따라 보호되는 모든 권리가 LGBT에게 동등하게 보장되도록 하라.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3 조)

12. 2012년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제정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이전 최종견해에서 요청한 바대로, 모든 현행 법률을 젠더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당사국에 요청합니다. 또한 정치적 생활과 공적·사적 부문에서 정책 결정 지위에 여성의 대표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한 구체적 조치를 적시해주십시오.

1)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다. 매년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성별영향분석 교육은 “보고서를 잘 쓰도록 도움이 되는 교육”에 초점을 두어 성별영향분석과 성인지예산제도가 형식적인 보고서로 작성되어 성평등 정책 실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도구인 성별분리통계는 인구수와 성비만을 파악하여 활용하는 단계여서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활용성이 매우 낮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성주류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부처에 성평등정책 담당관을 지정하고, 여성정책 관련 공무원의 젠더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라.

2) 정치와 정책결정에서 여성 대표성 강화

- 공공기관 여성임원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했으나, 남성노동자수 대비 남성관리자는 19%인데 반해 여성노동자수 대비 여성관리자는 4% 수준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시 비례대표 후보자 중 50%를 여성할당으로 의무화 하고 있으나, 강제이행조치가 없기 때문에 정당이 법 조항을 위반해도 제재할 방안이 없다. 지방분권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지만,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여성단체장은 전무하고, 2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여성 단체장은 고작 9명(4.0%)이다. 광역의회에서 여성의원은 14.3%, 기초의회 여성비율은 25.3% 수준이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공공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개정하여 여성할당제를 강제하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라.

3) 성평등

-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평등(gender equality) 용어에 대하여 생물학적 성별이분법에 따른 좁고 왜곡된 해석을 바탕으로, 실질적 평등과 불평등한 젠더 권력 관계를 간과한 정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성평등 정책의 설계 및 이행에 있어서 다양한 여성들을 대변하는 여성 단체의 실질적 참여가 부재했고, 또한 여성 단체의 역량 강화와 관련한 예산이 축소되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성평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여성단체, 특히 가장 취약한 여성그룹을 대변하는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7조)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행, 특히 가장 취약하고 불이익을 받는 집단에 대한 임금과 보험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이주노동자, 특히 농업부문에서의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1)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의 문제

-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제, 시간제 및 비전형 고용(호출, 파견, 아웃소싱 및 재택)이 포함된다. 그러나 아래 통계에서 많은 노동자들은 장기 임시 노동자(건설 현장의 일용직)이나 사내하청 노동자처럼 그들의 고용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동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통계에서 매우 적는데, 대다수가 사업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비정규직의 수는 더 증가할 수 있다.

[표 2]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⁴²⁾

	평균월급 (원)	국민연금 가입률 (%)	국민건강보험 가입률 (%)	고용보험 가입률 (%)
임금노동자 (19,627,000명)	2,368,000	67.6	72.6	69.6
정규직 (13,183,000명)	2,795,000	82.9	86.2	84.1
비정규직 (6,444,000명)	1,494,000	36.3	44.8	42.8

2)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건

- 한국 정부는 2015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했고, 2016년부터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3월과 4월에 고용노동부 등이 실시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4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16년 8월

고용사업장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장시간 근로, 임금체불, 과도한 숙식비 공제로 인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거주에 부적합한 숙소 제공, 여권 압류, 성희롱, 폭행 등 인권침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노동관계법 또는 기타 법률 위반으로 고용주를 처벌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없다.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법적인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인이 아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농축산업 사업장 의무적인 보험가입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축산업 사업장에 고용허가를 발급하는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전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가운데 20% 미만이 건강보험 가입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인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가입률 7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용허가 발급 조건 강화하고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 근로기준법 제63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에게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라.
16. 최저임금이 공적·사적 부문에서 고용주들이 실제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로 준수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최저임금은 규약에 부합하는 수준의 삶을 노동자와 그 가족이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2018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 1,570,000원이다. 이 금액은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1인 가구 평균 실태생계비 1,752,898원에 못 미치며, 3인 가구 (맞벌이, 자녀 1인) 평균 3,638,000원, 4인 가구 (맞벌이, 자녀 2명) 4,239,000원에도 훨씬 미달한다.

-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임금실태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다음과 같다.

[표 3]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와 비율⁴³⁾

(단위= 1,000명,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임금노동자 수(A)	17,734	17,734	18,240	18,776	19,312	19,627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B)	1,899	1,699	2,086	2,270	2,222	2,664
비율 (B)/(A)	10.8	9.6	11.4	12.1	11.5	13.6

- 민간부문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은 편의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영화, 컴퓨터게임 산업 등 특정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공공부문 최저임금 준수 실태에 관한 정보는 부재하며, 이에 민주노총은 2015년, 2016년 각 지자체의 세출사업 명세서 상 비정규직(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항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241개 기관 중 112개(46.4%)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으로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라.
-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사회권규약에 명시된 바에 부합하도록 하라.
- 최저임금법 상습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4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매년

17. 남성과 여성간에 37%에 달하는 임금격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나 정보 보조금 등, 직장내 보육시설 개발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취한 구체적 조치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 한국의 남녀임금격차의 주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에 있다. 즉, 여성들은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부터 중소기업사업장에, 혹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저임금의 보조적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은 유리천장에 간혀 40세 전후로 하던 일에서 밀려나게 된다. 또한, 청년 여성들은 고용 면접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법에 동등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채용 공고에서 동일한 직무의 남성과 여성의 임금을 다르게 명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정부는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 정부는 지난 9년간 고용의 양 확대를 목표로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주력해 왔으며, 고용의 질 개선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지나치게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과도한 업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07년 여성노동자 중 12.5%에 불과했던 시간제 노동자가 2016년 20.7%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8월 현재 시간제 노동자 월 평균임금은 74만원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 123만원, 2016년 최저임금 : 126만원)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는 주로 경영자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계 출신 인사는 부재하다. 본 협의회의 노동 문화 인식 개선 사업인 '근무혁신 10대 제안'은 기업의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남녀임금격차를 줄이고,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의 감소를 포함하여 여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 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여성노동을 대변할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라.

18. 비공식경제의 범위 및 보고기간동안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접근권을 비공식경제 부문 노동자에게 보장하기 위한 현재의 조치를 구체화해주십시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종합대책'의 내용 및 영향, 상시지속적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지침'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판결이 법률개정 등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1) 기간제 노동자

- 2016년 <기간제 노동자 고용 안정 가이드라인>은 구속력 없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공공부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간제 계약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노동조건 개선이 보장되지 않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풍선 효과'로 되려 간접고용이 확대된다⁴⁴⁾.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기간제 고용을 허용하도록 법제화 할 것을 요구해 왔다. (ILO 권고 166호)

44)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03년 이후 전체 공공부문 근로자수 대비 20%를 약간 상회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12년 360,255명(20.5%)에서 2013년 351,781명(20.0%)으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정부가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결과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약 1만여 명 줄어든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접고용 근로자 수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초기인 2006년 64,822명에서 2013년에 111,940명, 2015년에 115,30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대책이 간접고용 근로자의 수를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고용안정, 임금, 사회보장)는 전환 이전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간접고용 노동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⁴⁵⁾ 고용형태를 공시한 300인 이상 사업장 3,407개 사업장 3,852,000 명 노동자 중, 902,000(19%) 명이 위탁, 외주, 파견,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다.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은 사업장 규모가 클 수록 높아, 5,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5.5%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모든 자료에서 사내하청은 정규직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1~2년을 주기로 계약이 갱신되어 지속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혹은 파견업체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원청 사용주가 노동조합을 무력화 할 목적으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 노동자들은 자동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 해당 노동자들이 새로운 하청업체 혹은 파견업체를 통해 재고용 되더라도 근무 기간이 인정되지 않고 많은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재계약에서 배제된다.

3) 특수고용 노동자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건설장비 기사, 화물 트럭 기사, 보험모집인, 방과후강사, 재택집배원,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관광가이드, 방송작가 등 약 2,500,000명의 노동자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고용 계약 없이 노무를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기업(혹은 복수의 기업)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이들의 직, 간접적 지휘통제하에 업무를 한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용주에 의해 고용계약이 일방적으로 전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노동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보호도 누리지 못한다.

4) 가사노동자

- 현행 근로기준법 제 11조는 “가사사용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1년 ILO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 채택되면서 이를 비준하는 각국 정부에게 이들의 노동권을 다른 노동자와 동등

45) 300인 이상 사업장 고용형태공시제 결과(2017)

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는 현실과 배치된다. 최근 정부가 발의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인증하고 서비스 이용권 발행 등을 통해 수요촉진을 지원할 뿐,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에는 취약하며, 이용자는 사용자로서 의무가 없는 소비자로 간주하고 있다. 가사노동자들은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며,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도 없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특히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혹은 간접고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 이를 위해 기간제법, 파견법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라.
 - 특수고용노동자가 모든 법적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2조 노동자 정의를 개정하라.
 - 가사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최저임금법 등 제도 적용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20. 사업장 내 성희롱을 범죄화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 부과된 처벌, 피해보상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주십시오.
- 사업장 내 성희롱 관련법은 법적 처벌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사업주와 가해자에 낮은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쳐, 벌칙 조항으로서의 실효성이 낮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신고한 이후 직장 내에서 왕따, 해고 권고 등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은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으로 판명된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인사 조치, 특별 인권교육 등의 권고조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또한 사건 종결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사업장 내 성희롱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
- 고용노동부 내 성희롱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이들에게 성희롱 등의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라.
-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피해 사건의 권고 이행 상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권리 (8조)

21. 노동조합의 등록요건을 알려주십시오. 공무원의 노동조합권 향유에 대한 제한을 적시해주시고 당사국이 교사의 노조가입권에 부과한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또, ‘필수공익 사업장’을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직권중재제도를 변경한 것의 효과에 관한 정보와,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의 전후에 공공 사업장에서 발생한 파업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해 해고가 확정된 해고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조항은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 조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했고, 이에 따라 60,000명의 교사들이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

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역시 같은 이유로 반려되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1997년부터 관련 사항을 심도깊게 심의하였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정부에 해고자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므로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⁴⁶⁾ 이는 노조 설립신고 절차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노조설립신고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필증을 발급하면서 공무원의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2)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 고용 계약이 아닌 업무 수행에 따라, 사용자가 아닌 고객에게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결사체는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체결한 협약은 법적 구속력 있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협약 이행을 거부하곤 한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특수고용노동자(‘독립 계약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서 노조 활동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을 지속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4차례에 걸쳐 권고했으나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⁴⁷⁾ 간접고용 ‘진짜 사장’이 사용자로서 의무를 회피함에 따라 결사의 자유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⁴⁸⁾ 원청사용자가 노조 간부의 현장 출입을 막을 경우 노조의 일상활동은 침해당한다.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임금, 고용, 노동시간) 및 노조활동(근로시간면제, 노조전임자)

46) 결사의 자유 위원회 사건 번호 1865호, 2017년 6월 382차 보고서 Effect given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and the Governing Body - Report No 382, June 2017 Case No 1865 (Korea, Republic of) - Complaint date: 14-DEC-95 (GB,330/INS/4) paras 33-96

47) 결사의 자유 위원회 사건 번호 2602호, 2012년 363차 보고서 Report in which the committee requests to be kept informed of development - Report No 363, March 2012, Case No 2602 (Korea, Republic of) - Complaint date: 10-OCT-07

48)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외부 기업(하도급 회사, 외주 회사, 인력 파견 회사, 노동 조달 사업, 자회사, 신탁관리 등)과의 외주계약하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노동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외부 기업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은 없지만, 실제 사업자(원래 계약자 또는 건물 소유자 등)는 노동 관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실제 사업자들은 노조법에 명시된 고용주로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은 원청 사용자가 그 비용을 하청 계약에 포함시킬 때라야 보장되지만 원청 사용자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직접적인 고용 계약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쉽게 회피할 수 있다(단체교섭권 무력화). 원청 사용자는 파업이 발생하면 다른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파업 대체인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들 노동자의 파업권은 쉽게 무력화된다. 삼성전자서비스 수리 노동자들의 사례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⁴⁹⁾

3)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교섭권 제약과 노조파괴

- 단체교섭권에 관하여,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1년 7월 1일) 다수노조는 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 쟁의권을 모조리 행사할 수 있고 소수노조는 노동조합의 핵심 기능인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사용자들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어용노조에 유리하게 차별적 대우를 한다. 많은 경우 노무관리 컨설팅 업체들이 위와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제공하였고, 이는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연루된 1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노조파괴 전략⁵⁰⁾,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⁵¹⁾ 에서 벌어진 유사한 노조파괴 등은 이러한 교섭창구단일화 악용의 대표적 사례다

49) 결사의 자유 위원회 사건번호 3047호, 2017년 3월 381차 보고서 Report in which the committee requests to be kept informed of development - Report No 381, March 2017, Case No 3047 (Korea, Republic of) - Complaint date: 05-DEC-13

50)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 방한 보고서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on its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A/HRC/35/32/Add.1, para 24.

51) 유엔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보고서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on hi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A/HRC/32/36/Add.2, paras. 62-69

4) 파업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형사처벌, 손해배상 가압류)

- 노조법은 정당한 파업을 협소하게 정의하여⁵²⁾ 노동자들이 효과적인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파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입장과는 대조적으로,⁵³⁾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부의 경제 사회정책에 관한 파업이나 경영상의 문제들(정리해고, 공장이전 등)에 관한 해법을 찾기 위한 파업은 정당한 목적의 파업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 공공부문에서 강제중재제도는 폐지되었으나 광범위하게 정의되는 “필수공익사업” 규정으로 인해 그 효과는 여전히 유지된다.⁵⁴⁾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파업 중에도 필수업무가 유지되어야 하고 긴급조정이 가능하며 대체인력 투입도 가능하다. 정부는 ‘필수업무’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사전에 정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이러한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필수업무 유지율 역시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70~100%에 이른다. 그 결과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한다는 파업의 기능은 사라지고, 파업의 효과가 무력화되어 공공부문에서 파업 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52) 파업권에 관련하여 노조법은 제2의 6조에 있는 ‘쟁의행위’를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노조법 제3조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제4조에서는 “단체교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법 제37조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는 노시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자발적 협상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주가 협상을 거부할 경우, 노동 조합원 투표에 의한 결정과 같은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후,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고용주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행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대량해고 및 공장 폐쇄 또는 고용안정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책 개정에 대한 파업은 정당화되거나 보호될 수 없다.

53)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ILO (2016), paras. 526-544

54) 노조법 제42조의2는 필수유지업무를 광의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 및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할는 업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국제노동기준은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는 역무를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4]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입 전후 철도 파업기간 비교

	2006	2009	2013	2016
파업 기간	4일	9일	23일	74일
고속 승객 열차 운행률	-	100%	70~100%	100%

-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형법 314조(업무방해죄) 적용 및 노동조합 혹은 개별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형법 314조 적용에 대해 법원의 판례가 바뀌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⁵⁵⁾고 보고 있으나 파업이 시작되기 전 정부가 먼저 “불법파업”으로 선언하고 사용자가 형사고발하면 수사기관은 기소부터 하는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법원의 변경된 판례에 따르더라도 평화적인 파업에 대해 여전히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⁵⁶⁾.
- 2017년 6월 현재,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 또는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는 24개 사업장에 걸쳐 186,700,000,000원에 이른다. 가압류된 노동조합 혹은 개별 조합원의 은행 계좌, 임금 등은 최소18,000,000,000원에 이른다.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청구된 손해배상 액수는 2003년 10월(57,500,000,000원)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 사용자들이 전략적으로 손배 가압류를 노조 탄압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55)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56) Effect given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and the Governing Body - Report No 382, June 2017 Case No 1865 (Korea, Republic of) - Complaint date: 14-DEC-95 (GB.330/INS/4) para 93.

Suggested Recommendations

- 전교조가 합법화하고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
- 해고자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 와 노동자 정의를 개정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완전히 누리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용자(원청 사용자)와 효과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할 것.
- 정당한 파업의 정의, 필수유지업무 등 관련 조항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개정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관행을 재검토하고 노동조합 및 노조 간부에 대한 손해 소송을 취하할 것.

사회보장권 (9조)

22. 국민기초생활보장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과 약자 및 소외된 개인과 집단의 보장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이 기초생활보장체계 대상이 되기 위한 소득기준을 완화한 것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 한국 정부는 2015년 7월 급여별로 대상자 기준을 다층화하는 개별급여를 도입하고 상대적 빈곤기준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빈곤층에게 필요한 기본적 현금급여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2016년 12월 기준 124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39%에 불과하며,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중 16% 정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낮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기준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수급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정했기 때문에 선정기준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비율은 낮고 생계급여 보장수준도 낮아, 수급자들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 개편 당시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28%(현재 30%)로 오히려 개편 전(기준 중위소득의 32%)보다 떨어졌다.

- 한국 정부는 최근에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상대빈곤율이 2016년 14.7%로 전년대비 0.9%p 증가하는 등 소득분배지표가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계급여 급여수준을 인상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았다. 생계급여의 급여는 현재 중위소득의 30%를 한도액으로 실제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었으나, 생계급여는 1.16% 인상되어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국민최저선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인간답게 살 권리’에 합당한 수준으로 보장수준을 인상하여야 한다.
-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했다고 하나, 정부 자료에 따르면이라도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만도 93만명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⁵⁷⁾. 정부는 2015년 7월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데 이어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빈곤층에게 절실한 현금급여인 생계급여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되고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완화해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수급 당사자인 빈곤층이 아닌 부양의무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수급 당사자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다. 심지어 이마저도 2022년이나 시행할 예정이며, 당장 생존의 위협을 겪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5년을 기다리라는 것은 가혹하다.

Suggested Recommendation

- 생계급여 수급기준이 중위소득의 30%에 불과하여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인구의 16%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생계급여 수급기준을 인상하라. 중위소득의 30%에 불과한 생계급여 보장수준 인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

57)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2017. 8. 10.)

개하라.

-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으로 인해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게 막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급여에서 폐지하라.

23. 2014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노인들이 국민연금체계로부터 완전한 혜택을 받을 권리에 관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연금 체계로부터 완전히 또는 일부 혜택을 받는 노인의 비율을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 한국 정부는 2016년 6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과거 적용제외 기간의 국민연금의 추후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연금수급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나, 이는 추후납부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 일부에게 도움이 될 뿐이다. 또한 2014년 기초연금 도입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이 낮아지도록 설계하여 국민연금 장기가 입자에게 불이익을 준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가뜩이나 낮은 공적연금의 금액을 더욱 삭감하는 문제가 있다.
-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이며 OECD 평균인 12.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⁵⁸⁾. 반면 국민연금은 급여액이 너무 낮고 사각지대가 넓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은 2016년 40년 가입기준 평균소득의 46%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2016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월평균수급액은 약 34만원 정도로 최저임금의 27% 수준이고, 1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2017년 기준 661,172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여전히 18~59세 총인구의 49.4%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58)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

Suggested Recommendations

- 국민연금의 저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하라.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라.
-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 경우 기초연금의 수급액을 삭감하는 정책을 중단하라.

가족과 아이들의 보호 (10조)

24. 부부간을 포함하여 가정폭력으로 입건 및 기소된 사건을 성별, 연령, 인종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가해자에게 부과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제시해주시시오. 또한 2013년 채택된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등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시시오.

1) 부부간 가정폭력

-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비롯해 정부의 가정폭력방지정책은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은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중심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2013년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은 가정폭력을 개인의 성향, 음주 등 중독이나 정신건강상의 문제 또는 가족 내 갈등의 문제로 접근하며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와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통한 수강명령이나 상담위탁을 확대하는 것을 정책으로 수립했다. 그리고 이는 2013년 이후 가정폭력사건 기소율이 점점 낮아지고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결과(표 23, 정부답변서)를 가져왔다.
- 이러한 정부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단일한 인식과 사법처리의 문제점은 범죄통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정부가 공개하는 범죄통계 상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가정폭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부간을 포함한 배우자폭력의 실태를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은 물론 연령, 장애, 출신국가, 인종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가정폭력을 비롯한 젠더에 기반한 폭력범죄의 특성과 사법처리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여성에 대한 폭력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및 관계(배우자 별도 분류)에 따른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범의자에 대한 검찰 처분 및 처벌 결과, 범죄 발생상황 및 범의자·피해자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

2) 아동학대

- 한국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2012년 6,403건에서 2016년 18,573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그 중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가정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치 않다. 2016년에 서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장기결석한 초·중·고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 및 경찰 조사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미취학 연령의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의 근거 법령은 여전히 부재하다.
-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 심각한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학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격리·보호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경미한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가족지원 서비스가 중요하나 이에 대한 서비스 연계·지원은 저조하다. 2014년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총 73,814건 중에 가족기능강화 서비스(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연결, 공적지원 연결)는 1,508건으로 2%에 머물렀다.
- 전 인구의 3% 정도를 차지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 중 15.9%, 1회적 학대가 아닌 재학대 행위자 중 56%를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층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빈곤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의 예산규모는 2017년 복지부 예산의 0.1%를 차지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가정 내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미취학 연령 아동 중, 필수 예방 접종, 정기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라.
- 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학대 요인을 줄이고, 아동이 부당하게 가정과 분리되지 않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25. 2013년 인신매매죄를 도입한 「형법」의 개정⁵⁹⁾에 있어, 당사국이 취한 이 조치의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인신매매에 관한 수사, 기소, 유죄선고에 관한 비교 데이터를 제공해주십시오.

- 한국 정부가 쟁점목록 답변⁵⁹⁾에서 제공한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법률에 인신매매죄가 포함되지 않은 법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 건수만 제시하였으므로, 인신매매죄의 유죄 판결 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당사국 데이터에 포함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있을 뿐, 인신매매죄 규정은 없다. 또한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의하면, 형법 제 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속한 전체 범죄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유죄판결은 2014년 74건, 2015년 76건인데⁶⁰⁾, 2013년 형법에 도입된 인신매매죄는 형법 제31장 중 일부

59) E/C.12/KOR/Q/4/Add.1, para 61

60) [표 5]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에 관한 죄의 1심 판결 통계 (형법 31장)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기소	판결	유죄선고	무기징역	유기징역	보호관찰	벌금	기소유예	무죄	기타
2014	90	82	74	-	34	39	1	1	3	4
2015	96	92	76	1	34	39	2	3	4	9

조항이므로 인신매매죄 유죄 건수는 위의 유죄 건수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2016년 유죄 확정 피의자가 33명이라고 한다⁶¹⁾. 이러한 통계는 정부가 제시한 통계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 한국 정부는 쟁점목록 답변⁶²⁾에서 2013년 형법 개정이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 이유는 2013년 형법 개정시,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한⁶³⁾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인신매매 정의,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인신매매죄 성립에 영향이 없음’ 등과 같은 핵심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보호조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또한 인신매매의 특성을 반영하여 피해자, 특히 외국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인신매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 최근의 예로 2017. 5. 대한민국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보도된 사실에 따르면 마사지업소에 취업하는 줄 알고 한국에 온 태국여성들이 감금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인신매매 피해자였음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해자들 전원을 귀국조치하고, 브로커와 업주 등 인신매매행위자들을 단순히 성매매알선죄로만 수사하였다. 이 사건은 인신매매죄를 도입한 2013년 형법 개정이 노동착취나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현행 형법의 인신매매죄 규정을 대한민국 국회가 2015. 5. 29. 비준한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인신매매 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다시 개정하라.

61) U.S.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June 2017. <https://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71339.pdf> Accessed 23 Aug 2017

62) E/C.12/KOR/Q/4/Add.1, para 61

63) 2015. 5. 29. 비준

- 기존의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별도로, 피해자의 신변 보호, 사회복지 서비스, 법률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라.
- 정부는 경찰, 검찰,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등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하여 권고한 2016. 6. 20.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교육하고, 위 공무원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위 지표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라.

2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당사 국내의 홈리스 발생의 원인 및 그 범위, 동 법률의 이행을 위해 적용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주거의 이용가능성 및 적정성에 관한 분류된 데이터를 제공해주시고,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시시오.

- 정부는 홈리스의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라고 상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뿐, 홈리스 발생 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⁶⁴⁾, 홈리스의 결정적 요인에 부채, 신용불량, 파산 및 임대료 연체, 해고 등 경제적인 요인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만큼 고용, 주거, 사회복지 정책과 홈리스 발생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 복지법)’이 2012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을 지연하였으며, 법시행 이후 3년 8개월이 경과한 2016년 2월에서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실태조사는 지난 4월 완료하였으나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위 종합계획은 노숙인복지법에서 정한 항목인 ‘재정계획’ 및 ‘노숙인 등의 증감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환경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 조차 누락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을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으로 축소하였다.

64) 정원오 외, 노숙인 발생원인 규명 및 주류복지체계 연계 방안(2014. 12.)

- 정부는 시설을 주거의 주요 유형을 제시하며, ‘자립준비가 된 노숙인’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해당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홈리스들을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게 하며 시설을 순환할 뿐 홈리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홈리스 대책을 주거 우선 접근으로 전환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하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입주대상자와 신청 통로를 확대하고 자활계획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야 한다.
-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 100%를 초과했으나 2016년 전체 가구 대비 임차 가구 비율이 43.2%에 달하고 수도권은 그보다 높은 51.1%에 달한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밖에 보장하지 않아,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은 자가점유가구에 비해 떨어진다. 자가가구의 경우 평균 주거기간은 10.6년임에 반해 전세는 3.4년, 보증금 있는 월세는 3.5년에 불과하다. 세입자의 주거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의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지는 사회적 논의와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최저주거기준 이하 가구수가 줄고 있다고 주장하나, 2016년 기준 102.7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숫자는 2014년보다 오히려 3만5천가구 이상 증가한 것이다⁶⁵⁾.
- 최근에 서울연구원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⁶⁶⁾, 서울에서만 비주택 거주가구는 2005년 1.2만 가구에서 2015년 7.9만 가구로 6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찜질방, pc방 등 비숙박업소, 종교시설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2005년 0.5만 가구에서 2015년 7만 가구로 14배나 증가하였다. 비주택 거주가구는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렵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각종 복지정책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65) 국토교통부, 2016, 주거실태조사

66) 박은철 외, 부담가능 임대주택 공급정책과 모델, 서울연구원 (2017.2)

Suggested Recommendations

- 법률에 정한 내용도 포괄하지 못한 노숙인 종합계획을 폐기하고 새로 수립하라.
- 한국 정부는 홈리스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38호에 불과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확대하고 주거와 사회서비스를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 한국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에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임차인의 주택 임대차 갱신 청구권, (2)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3) 지역별 임대료 가이드라인(표준임대료) 제정을 이행하라
- 한국 정부는 최저주거기준 이하인 주거빈곤층과 비주택 거주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라.

27. 강제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지난 5년간 연도별 강제퇴거의 숫자에 관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퇴거 시 영향을 받는 거주자들과 정책결정에 앞서 협의하였는지 여부를 설명해주십시오.

- 한국 정부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강제퇴거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나, 이는 법적인 최소한의 보상만 완료하면 퇴거할 수 있는 근거에 불과하다. 현행 법상 손실보상은 퇴거 위기에 놓인 사람에게 개발 이전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주거 및 생활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퇴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해 보상 완료 형식을 취해 강제퇴거를 실행하고 있다.
-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제도개선이 되어 협의의 기회가 보장된 측면이 있지만, 형식적 합의에 그치는 등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 관리처분계획에서의 철거예정 시기의 명시도 통상 관리처분인가 후 3개월 이내 이주기간을 주는 것에 불과하고 상가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3차 사회권 심사 이

후 한 차례의 휴업보상 인상이 있었을 뿐 여전히 이전과 동등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착대책으로는 부족해, 강제퇴거로 인한 폭력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정부는 답변서에서 세입자 대책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은 모든 세입자들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개발지역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더 많고, 민간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법적인 이주대책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
- 지난 사회권 3차 심의 최종권고에서도 강제퇴거 관련 통계보고를 촉구하였고, 이번 4차 질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였으나, 정부는 단 한차례도 관련 통계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인권영향을 평가하고 강제퇴거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강제퇴거에 관련한 통계를 마련하고 정보를 공개하라.
28. 식수에 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전국적 수질오염경보 시스템을 마련한 것의 영향과, 상하수도망 공급 및 위생에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주요 지점의 수질상황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지만,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대형댐으로 인해 상수원에 심각한 수준의 남조류가 발생해도⁶⁷⁾ 수문개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식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으나, 식수공급에서 식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여 사회적 논쟁이 생기고 있다.
 - 수도권의 경우 대규모 광역 상수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지역의 경우 개발민원을 이유로 지방상수원을 대거 해제하고, 광역상수원의 용

67)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598190.html

량보다 과도하게 이용 계약을 맺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충남 서부지역 식수공급에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는 지방상수원 관리를 소홀히 한 환경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

- 낙동강 유역의 경우 1300만 인구의 상수원인데, 수질관리 소홀 및 4대강사업의 여파로 인해 취수원 이전논란이 뜨겁고, 국립공원인 지리산에 신규댐 계획이 추진 중이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한국 정부는 4대강 보 16개의 용도 및 경제성을 평가하여 인위적으로 강물의 흐름을 막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한국 정부는 지방상수원의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폐쇄된 상수원을 복원하여야 한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12조)

29. 가장 취약하며 소외된 개인과 집단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및 비용지불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한 조치의 영향을 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또, 2009년 당사국의 보고서 심의 이후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출의 역학관계와 공적 지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한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 정부는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나, 의료급여 수급자수는 2008년 184만명 이후 2009~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5년 수급자수도 153 만명에 불과하여 2011년보다도 적은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2.9%만을 포괄하고 있다⁶⁸⁾. 빈곤율이 크게 변동이 없음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수가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보수정부 출범 이후 부양의무자 소득과약을 더욱 강화하여, 본인이 아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하

68) 통계청, 의료급여 수급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06

여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의료불평등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정부의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 한국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가구) 2010년 3.68%⁶⁹⁾에서 2014년 4.49%⁷⁰⁾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의 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였다고 하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1년 63%에서 2015년 63.4%로 거의 변화가 없으며, OECD 평균 보장률인 80%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정체된 이유는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약 10% 정도로 OECD 평균 7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이나,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⁷¹⁾.
- 또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하여야 하나, 매년 법에 위반하여 15% 정도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률은 20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의료 서비스를 위한 공적 지출을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라.
- 한국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를 감소시켜라.
- 한국 정부는 공공병원의 비율을 증가시켜라.
- 한국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법률에 따라 이행하고, 한시적 지원을 영구적으로 변경하라

69) OECD Health System Characteristics Survey 2012

7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 8. 9. 발표)

71) 확대는 커녕, 공공병원(진주의료원)은 2013년 5월 도지사에게 의해 폐원되는 일까지 있었고, 22명의 환자가 강제로 퇴원당한 뒤 사망하였다. 관련기사 : http://english.khan.co.kr/khan_art_view.html?artic=201304192040587&code=710100

30. 학교내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피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한 것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당사국이 성·생식에 관한 의료서비스를 모든 인구집단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알려주십시오. 또 십대임신률에 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 여성의 성과 재생산에 관한 국가의 지원 정책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수단으로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 속에서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임신을 중단할 권리는 더욱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또한 임신중절을 결정한 모든 여성들은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시술법 적용 등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를 보장받지 못한다. 교육부가 2015년 발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청소년기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금욕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성별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성차별적인 사회규범을 담고 있다. 더불어, 올바른 피임법에 대한 자세한 교육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국의 시민/인권 단체들은 이 표준안을 폐지할 것을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성과 재생산 관련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인공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여 지나치게 협소한 임신중절의 허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임신의 지속과 중단에 관한 여성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 의료인 교육, 약물을 통한 임신중절 등을 포함한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즉시 폐기하고, 피임법과 성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관한 성교육을 성인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권 (13, 14조)

31. 당사국이 학원의 야간교습을 제한하는 등 학업 스트레스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그러한 노력이 학생의 건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 정부는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평일 21~22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며, ‘심야교습 시간 제한이 학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심야교습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면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현재 각 지역별로 조례에 따라 다르게 규율되어 있기 때문에 17개 시도 중 밤10시로 제한하는 곳은 단 5곳에 불과하며, 심지어 8개 지역에서는 학원 교습을 자정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이 과열된 일부 지역은 불법, 편법적으로 심야 또는 새벽에 교습을 하고 있지만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방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 많은 학생들이 휴일도 없이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학생들의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야간교습제한과 더불어 학원휴일휴무제를 도입하여 절대적인 휴식 및 여가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UN 아동권리위원회(CRC)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여가 문화 생활 권리가 사교육으로 인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정부는 밤10시 이후 심야교습을 전국적으로 제한하라.
 - 밤 12시까지 학원 교습이 허용되는 지역과 밤 10시까지 허용되는 지역의 학생의 수면시간 및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의 차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 학원 휴일 휴무제 등 학생들에게 여가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3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사교육을 위한 재정적 부담 경감, 교육에 관한 접근권의 평등에 대해 미친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 정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교사 중 91%가 수업분위기 개선 90.1%가 각종 경시대회가 감소되었다고 응답하였고 학부모 중 89%가 학습부담

감소, 76.8%가 사교육 의존도가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었던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2015년과 2016년에 사교육참여율은 변화하지 않았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표 6] 사교육 참여율⁷²⁾

	2013	2014	2015	2016
평균	68.8	68.6	68.8	67.8
고등학교	49.2	49.5	50.2	52.4

- 사교육비는 고등학생의 경우 2015년 23만6천원에서 2016년 26만2천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의 도입이 사교육비 증감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표 7] 월 평균 사교육비⁷³⁾

(단위 : 10,000원)

	2013	2014	2015	2016
평균	23.9	24.2	24.4	25.6
고등학교	22.3	23.0	23.6	26.2

- 원인은 공교육정상화법이 학교에서의 선행교육만을 금지하는 데에 있다. 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은 얼마든지 선행교육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성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이 허락하는 한 사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선행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교육을 위한 재정적 부담 경감, 교육에 관한 접근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하여 변칙적이고 반칙적인 사교육기관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해야 한다. 나아가 공교육에서 부족한 학생에게는 보충학습을,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심화학습

72)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301&conn_path=I2

73)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을 제공해주어 경제적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현상을 중단시켜야 한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하여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을 금지시키는 등 사교육 경감과 교육 평등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라
- 공교육정상화법은 한시적으로 학교에서의 방과후 및 휴업일의 선행교육을 허용하고 있는바, 한시조치가 연장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 부의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바, 교습비 제한에 대한 학원법 개정을 포함하여 교육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문화적 권리 (15조)

33. 당사국이 다문화주의를 증진하는데 있어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를 제시해주십시오.

- 2016년 한국의 외국인 인구는 2백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에 우호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36.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18개 EU 국가들의 73.8%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⁷⁴⁾.
- 하지만, 한국에는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정의한 적도 없다.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로 처벌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없다.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으며⁷⁵⁾, 한국에서 발생하는 사례의 숫자나 방식에 대하여 알아낼 방법이 없다.

74) http://www.koreatimes.co.kr/www/news/issues/2016/11/182_219243.html

75) 2015, A/HRC/29/46/Add.1

Suggested Recommendations

- 한국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규제하고, 통계를 수집하라.
33.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 신문의 자율규제에 관한 2012년의 제안에 있어, 인터넷 신문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진전상황을 알려주십시오.
-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 10년간 정부와 언론재단의 집중적인 지원받아 양적 성장을 해 왔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한국은 현재 6090개의 인터넷신문이 등록돼 있고 지금도 그 수가 늘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참여매체는 255개로 인터넷신문 대부분을 포함하지 못하고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설립당시 인터넷신문협회라는 사업자(발행인) 단체가 부설로 만든 기구로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자율심의를 하던 기구이다. 또 인터넷신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을 할 정도로 보수적인 인물들이 주도해 만들어졌고 지금도 이들이 이사진을 구성하고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 현재 인터넷기자협회를 비롯해 다양한 단체들이 각각 자율심의 기구를 준비하고 있다. 인터넷언론 자율심의기구는 참여 주체가 인터넷신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1인 미디어, 블로거 등에까지 확대돼야 하고 심의대상 콘텐츠는 웹툰·웹소설·웹드라마 영역까지 확장돼야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보다 포괄적인 인터넷언론 자율심의기구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추가적 이슈 -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문제

- 2015년 12월 28일 한국 정부는 일본 아베정부와 함께 2015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였다⁷⁶⁾. 이는 시대적 상황만 다를뿐 현재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에 대한 인식의 한계와 관점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 사회권위원회는 이미 2009년 한국 정부가 제출한 3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매춘과 성착취를 위한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미흡한 대응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문제등을 언급한 바 있다⁷⁷⁾.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이라는 범죄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라는 범죄는 연장선상에 놓인 문제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피해여성의 입장을 중심에 놓고 피해여성의 인권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엔내 각종인권기구가 정한 원칙에 부합되는 태도이다.
- 그러나 피해자들을 옹호해야 할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문제 해결을 정치, 외교적 관점에서 국익이라는 명분하에 도구화하여 일본정부의 치유금 10억엔을 받아 국가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합의 과정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이 배제되고 합의 내용 또한 피해자 및 지원단체의 요구와 국제적 인권원칙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는 이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 선언했다.

Suggested Recommendations

-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2015한일합의의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라.
- 한국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⁷⁸⁾와 유엔인권최고대표⁷⁹⁾가 2015한일합의

76)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Announcement by the Foreign Ministers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Joint Press Occasion”, 2015. 12. 28. URL: http://www.mofa.go.jp/a_o/na/kr/page4e_000364.html.

77)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CESCR, 19 November 2009, E/C.12/KOR/CO/3, para. 24, 25.

78) Concluding Observations: Japan, CEDAW, 7 March 2016, CEDAW/C/JPN/CO/7-8, para. 28, 29.

79)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7200&LangID=E>

발표 직후인 2016년 3월 제출한 입장과 2016년 5월 유엔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출한 2015 한일합의 개정권고⁸⁰⁾를 받아들여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하라.

- 한국 정부는 피해자 및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유엔인권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80)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CAT, 11 May 2017, CAT/C/SR.1538 and 1539, para. 47, 48.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자료집

8.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영문)



E/C.12/KOR/CO/4

Advance Unedited Version Distr.: General
6 October 2017

Original: English
English, French and Spanish only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¹*)**

1.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sidered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KOR/4) at its 54th and 55th meetings (E/C.12/2017/SR.54 and 55) held on 20 and 21 September 2017, and adopted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at its 78th meeting, held on 6 October 2017.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submission of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State party and the written replies to the list of issues (E/C.12/KOR/Q/4/Add.1). The Committee appreciates the constructive dialogue held with the State party's intersectoral delegation.

* Adopted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t its sixty-second session (18 September-6 October 2017).

B. Positive aspects

3. The Committee welcomes the legislative, institutional and policy measures taken to promot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State party, including:
 - (a) Amendmen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in 2016 providing for a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selection process;
 - (b)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of 2014;
 - (c) Refugee Act of 2013;
 - (d) Act on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of 2011;
 - (e) Amendment of 2010 of the Higher Education Act, which placed an upper ceiling on tuition increases.
4. The Committee welcomes the ratification of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in 2010.

C. Principal subject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5. While noting the statistical data on the activities implemented under the 2nd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plan has not been sufficiently used to fully implement the concluding observations following the State party's third periodic report (E/C.12/KOR/CO/3). It also regrets the absence of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ensuring the full particip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civil society in the planning and monitoring of national action plans(art. 2(1)).
6.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 (a) **Make public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second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as soon as it is possible;**

- (b) Fully incorporate the present recommendations in the third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with clear implementation timelines and indication of responsibilities for the branches and tiers of the Government;
- (c) Put into place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full particip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civil society in the formulation,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national action plans for human rights.

Application of the Covenant

- 7. Given the limited scope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the Covenant rights are not given full effect in the jurisprudence of the State party, including as a consequence of the judiciary's reluctance to review the conformity of the domestic legislation with the Covenant rights (art. 2(1)).
- 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Covenant is given full practical effe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rough (a) institutionalized training of judges, lawyers and prosecutors on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and the justiciability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b) awareness-raising of the Covenant rights among the public at large, and (c) full incorpor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its Constitution in the context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announced by the Delegation. The Committee refers the State party to its general comment No. 9 (1998) on the domestic application of the Covenant.**

Access to remedies

- 9.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in spite of the expansion of the availability

of legal aid, access to judicial remedies for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s hampered by the high costs associated with legal proceedings, such as the court stamp fee (art. 2(1)).

1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view the rules on judicial proceeding fees to ensure that they do not hamper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for victims of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Maximum available resources

11.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continuously very low level of public social spending, as a percentage of the GDP, in the State party, in spite of its increase in absolute terms over the long term. It is also concerned at the lack of an effective accountability for the delivery of social services by public agencies and private entities and by the fact that the accessibility, affordability and quality of social services delivered by the latter are not regularly guaranteed (art.2(1)).

12.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 (a) **Accelerate the increase of its investment in social spending, including by pursuing a more redistributive fiscal policy, in order to improve the enjoy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specially for marginalized and disadvantaged groups, and address social inequalities;**
 - (b) **Raise awareness of local authorities and public agencies of their duties under the Covenant;**
 - (c) **Strengthen monitoring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for the delivery of social services, by both public agencies and private entities.**

Corruption

13. The Committee regrets the lack of statistical data on judicial cases relating to

corruption. It is also concerned at shortcomings in the anti-corruption legislation (art. 2(1)).

1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widen the scop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Interest Whistle-blowers, fully enforc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ith its original provisions, and ensure that the anti-corruption institutional framework is effective.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onitors the effectiveness of the anti-corruption machinery by collecting statistical data, including on judicial cases relating to corrupti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15. While appreciating the work undertaken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its investigative mandate is limited to articles 10 to 22 of the Constitution and thus, essentially exclude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6.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ame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with a view to mak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rights subject to investigation and assessment of complaints by the Commission. The Committee draws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its general comment No. 10 (1998) on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protec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Business and human rights

17.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absence of a legal obligation for companies domiciled in the State party or under its jurisdiction to exercise human rights due diligence.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t the documented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resulting from operations of

Korean companies at home and abroad and that the State party's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do not link the provision of loans and grants to companies and projects to human rights requirements.

1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in the context of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ection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f the third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the State party:**
 - (a) Establish a legal obligation for companies domiciled in the State party and those entities that they control - including those in their supply chain (subcontractors, suppliers, franchisees, etc.) - to exercise due diligence in order to identify, prevent and mitigate the risks of violations of the Covenant rights, to avoid such rights being abused, and to account for the negative impacts caused or contributed to by their decisions and operations;
 - (b) Act upon allegations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resulting from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domestically and abroad, that are brought to its knowledge, and ensure that victims can claim reparations through the State party's judicial and non-judicial mechanisms;
 - (c) Link public procurement as well as the provision of loans, grants and subsidies with the observanc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domestically and abroad;
 - (d) Enhance the impact, transparency, inclusive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Contact Point, including through promotional activities and proactive mediation in accordance with human rights standards.
19. **The Committee draws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its general comment No. 24 (2017) on State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context of business activitie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regret that the State party'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0,14 per cent) falls far below the internationally agreed commitment of 0,7 per cent of gross national income (art. 2(1)).
2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accelerate the increase of the level of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international commitment of 0,7 per cent of its gross national income, and (b) seek a better balance of the share of grants and loans in aid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Non-discrimination legislation

22.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delay in the adoption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especially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State party's Constitution prohibits discrimination only on the grounds of sex, religion and social status. It is further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 has not taken sufficiently proactive and effective steps to build consensus around the 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among the population (art. 2(2)).
23. **The Committee reiterates the urgency of adopting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aises awareness among the population and the legislators about the harmful effect of discrimination on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and the equal enjoyment of human rights. The Committee refers the State party to its general comment No. 20 (2009) on non-discrimination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24.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criminalization of same-sex acts in the Military Criminal Act.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the persons involved in same-sex relationships are exposed to discrimination in the enjoyment of several Covenant rights. Moreover, it is concerned at reports of discriminatory attitudes and acts against lesbians, gays, bisexuals, transgender persons and intersex persons in many fields of public life. (art. 2(2))
2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effective measures to eliminate *de jure* and *de facto* discrimination against lesbians, gays, bisexuals,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In particular,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Abrogate the provision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criminalizing same-sex acts;**
 - (b) **Revise legal and regulatory provisions that are discriminatory, or have discriminatory effect such as those relating to social security, reproductive health, and housing;**
 - (c) **Ensure that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ory law to be adopted also prohibits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 (d) **Conduct awareness raising campaigns to counter prejudices regarding lesbians, gays, bisexuals,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Non-nationals

26.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rights contained in the State party's Constitution are accorded only to citizens and about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that non-citizens are not entitled to the full set of social rights. In particula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non-citizens are excluded from

the State party's social security system and public services, including those relating to birth registration and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abuse (art. 2(2)).

2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the Covenant rights shall be exercised without discrimination on account of national origin. In particular, it urges the State party to allow non-nationals to enrol in its national social security system, to benefit from welfare services, and to ensur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of children irrespective of the status of the parents. The Committee refers the State party to its Statement 13 March 2017 on the duties of States towards refugees and migrant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

28.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t the prevalence of 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 including long-term temporary employment, in spite of the adoption of measures such as the Act No. 8074 of 2006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erm Workers. Moreover,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in order to minimize their labour costs and transfer accident risks, large companies resort to practices involving sub-contracting, dispatched labour, and recruitment of individual contractors that deprive workers of the protection of labour rights (art. 7).
2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effective measures to curb the abuse of the forms of employment that do not fully protect the workers' rights.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a) the labour legislation covers all categories of workers, including those who are working under the regime of sub-contracts, dispatched labour or are**

recruited as individual contractors, (b) legislative and regulatory measures be taken to fully implement the Supreme Court ruling 2007 Doo 1729 outlawing unreasonable non-renewal of contracts, including deterrent penalties for contraveners; and (c) labour inspections effectively monitor abuse of non-regular forms of employment.

Coverage of the labour and social security legislation

30.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sectors such as agriculture, fisheries and domestic work, where workers are exposed to unfair and un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re excluded from the Labour Standards Act and other legislation protecting the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nd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rts. 7 and 9).
31.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xpand to all sectors of the economy the coverage of the Labour Standards Act and other laws protecting worker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nd right to social security. Moreove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any distinct legislation applicable to specific sectors such as agriculture, fisheries and domestic work do not set lower labour rights, but rather address the increased risk of infringement of workers' rights. The Committee refers the State party to paragraphs 47 (f) and (h) of its general comment No. 23 (2016) on the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dequate remuneration

32.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in spite of the recent increase, the amount of the minimum wage remains inadequate to enable workers and their families to enjoy a decent living.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t the number of workers that are paid below the minimum wage (art. 7).

33.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recommendation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at the minimum wage is at a level which would enable workers and their families to enjoy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t also recommends that the minimum wage be applicable in all sectors and is enforced through labour inspections and dissuasive penalties.

Gender wage gap

34.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gender wage gap has not narrowed in spite of the measures taken by the State party (art. 7).
3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Address the root causes of women's career interruptions and their over-representation in part-time employment, due to care responsibilities;
 - (b) Assess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taken, such as the sufficiency of the number of day-care services, the uptake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and paternity leave and the enforcement of quotas, and take remedial measures;
 - (c)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n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of the Equal Employment Act, including by conducting cross-sectoral job evaluations.

Migrant workers

36. Noting the information from the State party that a number of migrant workers manage to change employment,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the conditions set i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restricting and subjecting employment change to the authorization of employers, render migrant workers vulnerable to exploitation.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at reports of 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s in agriculture and fisheries that, in

many cases, amounts to forced labour (arts. 6 and 7).

3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bolish the restriction on the change of employment for migrant worker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Moreover, bearing in mind the recommendation on the coverage of the labour legislation,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labour and social security rights are protected and respected in the fisheries and agricultural sectors, including by preventing the practice of passport confiscation, investigating reports of exploitation, de facto detention and physical abuse of migrant workers, and bringing perpetrators to justice.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ratify the ILO Forced Labour Convention No. 29 and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No. 105.**

Right to strike

38.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a) the restrictive criteria for legal strikes which effectively bar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trike in the State party; (b) reports of reprisals against workers participating in industrial actions, including the continued prosecution of workers through civil and criminal actions on account of “obstruction of business”; and (c) the broad definition of “essential services” in which workers are not allowed to strike (art. 8).
3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ase the conditions for conducting legal strikes and restricts the scope of the definition of essential services so as to ensure the effective exercise of the right to strike.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frain from actions that lead to violations of the right to strike and conduct independent investigations on allegations of reprisals against workers participating in industrial actions.**

Trade union rights

40. While noting the legislation allowing the plurality of trade unions,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reports that it has been used by companies to weaken workers' power in collective bargaining.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t legal provisions, such as those on the membership of dismissed workers, which hamper the independent functioning of trade unions. Moreover, it is concerned that workers in non-regular forms of employment, which make up the majority of the labour force in the State party, are not authorized to form or join trade unions (art. 8).
4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at the plurality of trade unions is not used by companies to weaken workers' power in collective bargaining.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amendments to guarantee the right of all persons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freely and to prevent arbitrary interference in the functioning of trade unions.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ratify the ILO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No. 87 and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No. 98.**

Right to social security

42. While noting the in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gradually abolish the application of the family duty to provide support to its members as an eligibility criterion for some social allowances,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it currently prevents individuals and households in need from receiving some social security benefits.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the amount of certain social allowances is inadequate (art. 9).
43.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abolish altogether the family duty to support its members as an eligibility criterion for social security benefits so**

as to ensure that those in need actually enjoy their right to social security.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at the amounts of benefits, especially und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cheme, are adequate. The Committee refers the State party to its general comment No. 19 (2008) on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National health insurance

44. While noting the plan of the State party to expand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its restrictive coverage leads to heavy financial burden on households through out-of-pocket medical expenses and expensive private insurance premiums (arts. 9 and 12).
45. **In the context of the highly privatized health system,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e adequacy of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o that health care is affordable, especially for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groups. To this end,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ystem covers preventive and curative services for illnesses and medical conditions, including non-communicable diseases. It also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universal coverage by removing eligibility obstacle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medical benefits scheme.**

Older persons

46. Noting that the welfare of its ageing population is a key priority of the State party,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t the prevalence of poverty among and the reports of abuse of older persons, including in care facilities (art. 10).
4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older persons live in dignity and in environments that are safe. In particular,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Ensure tha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under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re adequate and the amounts of benefits enable older persons to enjoy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 (b) Ensure that older persons are able to remain at home for as long as possible and promote community-based care;
- (c) Identify and address the root causes of abuse;
- (d) Prevent abuse, including by significantly improving the monitoring of care facilities and strengthening the reporting system of elderly abuse.

Child abuse

48.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increasing number of cases of child abuse in the family in the State party, especially in a context of still inadequate reporting and victim protection systems (art.10).

4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Ensure that professionals that are in contact with children be designated as mandatory reporters and consider introducing a duty to report for any individual who suspects child abuse;
- (b) Ensure that legal provisions and infrastructure are in place to ensure that children victims of abuse are separated from abusers; and
- (c) Promote family-type alternative care for children victims of abuse.

Right to water

50.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reports of contamination of the State party's rivers and the negative impact on the availability of safe drinking water (art. 11).

5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strengthen efforts to ensure**

the quality of water sources and the availability of safe potable drinking water for all. The Committee draws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its general comment No. 15 (2002) on the right to water.

Housing

52.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s housing policy does not provide for long-term solutions against homelessness. It is also concerned at (a) the large number of individuals and households housed in inadequate dwellings, (b) the high housing costs, including due to housing shortage, and (c) the lack of adequate protection of tenants against forced evictions (art. 11).
53.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laborate housing policies that:
- (a) Address the root causes of homelessness and pursue long-term solutions for homeless individuals;
 - (b)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adequate and affordable housing, including social housing;
 - (c) Put into place mechanisms to regulate rising housing costs in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unreasonable housing costs and provide for the renewal of rental contracts to encourage longer term security of tenure for tenants;
 - (d) Ensure that legislation provides all groups with adequate protection against eviction, including the right to be consulted, proper procedural safeguards and access to suitable alternative housing or adequate compensation.
54. The Committee draws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its general comment No. 4 (1992)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nd No. 7 (1997) on forced evictions.

Suicide

55. While noting the implementation of successive plans to address the high level of suicide in the State party and the system of gatekeepers introduced, the Committee regrets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measures taken to tackle the societal root causes of the still high rate of suicide in the State party.
5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strengthens efforts to prevent suicide, including by addressing its societal root causes, including undue stress in education and employment, poverty among older persons, and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experienced by certain groups, such as LGBTI.**

Mental health

57.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very low percentage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es that have had access to mental health services in the State party (art. 12).
5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xpands the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particular by promoting community-based care, and allocating a larger percentage of the health budget to mental health care services.**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59.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criminalization of abortion in the State party (art. 12).
60.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decriminalize women undergoing abortion so as to guarantee women's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the protection of their dignity, and ensure that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be made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The Committee refers**

the State party to its general comment No. 22 (2016) on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Health care for persons with HIV/AIDS

61.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reports of medical personnel refusing medical care to persons with HIV/AIDS (art. 12).
62.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persons with HIV/AIDS enjoy their right to health, by accessing and receiving care without discrimination. The Committee draws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paragraphs 18 and 19 relating to non-discrimination and equal treatment of the general comment No. 14 (2000) on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Equal access to quality education

63.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in spite of the measures taken by the State party, the frequent recourse to night-time course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which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households cannot afford, limits the equal access to education, including to higher education, and deepens inequalities.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bout the discriminatory impact of the system on individuals' access to employment (arts. 13 and 14).
6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equal access to affordable and quality educ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needs of the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individuals. In particular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Limit the need to resort to night-time course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by ensuring the quality of school curricula and its delivery;**
 - (b) **Revise the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entrance systems to ensure**

- equal access for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 (c) Monitor the impact of regulatory measures taken on reducing recourse to night-time course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 (d) Pursue the egalitarian function of education, including with a view to promoting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in employment.

Cultural diversity

65.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low level of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among the State party's population. While noting the measures taken to facilitate the social integration of non-nationals in the State party,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lack of policies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that reach out to the population at large (art. 15).
6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Promote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among its population, including by countering prejudices against non-nationals;
 - (b) Monitor the impact of measures taken on the extent to which cultural diversity is embraced.
67. The Committee refers the State party to its general comment No. 21 (2009)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D. Other recommendations

68.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provide additional and more detailed information in its next periodic report with respect to the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scientific progress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 in line with article 15, paragraph 1(b), of the Covenant.
69.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7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ratify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7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fully into account its obligations under the Covenant and ensure the full enjoyment of the rights enshrined therei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el.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ould be significantly facilitated by the State party establishing independent mechanisms to monitor progress and treating beneficiaries of public programmes as rights holders who can claim entitlements. Implementing the Goal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would ensure that no one is left behind.
7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steps to progressively develop and apply appropriate indicators on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order to facilitate the assessment of progress achieved by the State party in complying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Covenant for various segments of the population. In that context, the Committee refers the State party to, inter alia, th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framework on human rights indicators developed by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ee HRI/MC/2008/3).
73. The Committee requests that the State party disseminate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widely at all levels of society, particularly among parliamentarians, public officials and judicial authorities, and that it inform the Committee in its next periodic report about the steps taken to implement them.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engage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other members of civil society in the follow-up to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and in the process of consultation at the national level prior to the submission of its next periodic report.

74.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n follow-up to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the State party is requested to provide, within 18 months of the adoption of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ommittee in paragraphs 18 (a) (business and human rights), 23 (non-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41 (trade union rights) above.
75.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submit its fifth periodic report, to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reporting guidelines adopted by the Committee in 2008 (E/C.12/2008/2), by 31 October 2022. In addition, it invites the State party to update its common core document in accordance with the harmonized guidelines on reporting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HRI/GEN/2/Rev.6, chap. I).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자료집

9.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한글)



원본

배포: 일반
2017년 10월 6일

원문: 영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1.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7년 9월 20일-21일 개최된 제54, 55차 회의(E/C.12/2017/SR.54 및 55) 에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의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서(E/C.12/KOR/4)를 심의하고 2017년 10월 6일 개최된 제78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A. 도입

2.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4차 정기보고서 및 쟁점목록 (E/C.12/KOR/Q/4/Add.1)에 대한 서면 답변 제출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범부처 대표단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높이 평가한다.

B.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해 당사국이 취한 다음을 포함한 법적, 제도적 및 정책적 조치를 환영한다.
 - (a) 2016년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 과정을 제공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

- (b)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c) 2013년 난민법;
 - (d)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e) 2012년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한 고등교육법의 개정.
4. 위원회는 2010년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환영한다.

C. 주요 우려 및 권고사항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

5. 위원회는 제2차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이행된 행동에 대한 통계자료를 주목하는 한편, 동 계획이 당사국의 제3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E/C.12/KOR/CO/3)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것에 우려한다. 또한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제2조 1항).

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독려한다:

- (a)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제2차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공표할 것;
- (b) 동 권고를 제3차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에 온전히 반영하며 이에 대한 이행 시기와 정부부처의 책임 등을 명시할 것.
- (c)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가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의 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에 있어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규약의 적용

7. 사회권규약에 관한 헌법 조항의 제한적 범위를 고려할 때, 위원회는 사법부가 규약의 권리와 관련한 국내법의 적합성 검토를 주저하는 등, 규약의 권리가 당사국의 법 체계에서 온전한 효력을 갖지 못함에 우려한다(제2조1항)

8. 위원회는 당사국이 헌법 제6조에 따라 규약이 실질적인 효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a) 규약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재판적격성에 관한 판사, 변호사, 검사에 대한 제도화된 훈련, (b) 대중의 규약상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c) 대표단이 언급한 개헌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헌법예로의 완전한 편입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규약의 국내 적용에 관한 일반 논평 9호(1998)를 참조할 것을 제시한다.

구제에 대한 접근

9. 위원회는 법률 구조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에 대한 접근이 인지대와 같은 법적 절차와 관련된 높은 비용으로 인해 저해된다는 사실에 우려한다(제2조1항)
10.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 피해자의 효과적 구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법적 절차와 관련한 수수료에 대한 규칙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최대 가용 자원

11. 위원회는 당사국의 공공사회지출의 장기적 절대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지속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 주체에 의한 사회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효과적인 책임성이 부재하며, 민간 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의 접근성, 부담가능성 및 품질이 규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제2조1항)
12.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독려한다:
- (a)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향유를 개선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분배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등 사회 지출에 대한 투자의 증가를 가속화 할 것;
 - (b)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규약상의 의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것;
 - (c) 공공기관과 민간주체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과 책임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

부패

13. 위원회는 부패와 관련한 사법처리 사건에 대한 통계 자료 부족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반부패 법률의 단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제2조1항)
14.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원안대로 철저히 이행하며, 반부패 제도의 틀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부패와 관련된 사법처리 사건을 포함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반부패 장치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국가인권기구

15.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에 감사하는 한편, 인권위의 조사권한이 헌법 제10조 내지20조에 국한되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배제함에 우려한다.
16. 위원회는 당사국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 규약 이행에 관한 내용을 진정사건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0호(1998)를 제시한다.

기업과 인권

17. 위원회는 당사국에 소재하거나 당사국의 사법관할에 있는 기업들이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실행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당사국의 공공 금융기관들이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원조)용자에 있어 인권관련 사항들을 연계하지 않음에 우려한다. .
18. 위원회는 제3차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 내의 기업과 인권 부분 작성과 이행에 있어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당사국에 소재한 기업과 기업의 공급망(하청업체, 공급업체, 가맹점 등)을 포함

하여 기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체가 규약상 권리 침해에 대한 위험을 파악, 예방 및 경감시키며,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결정이나 운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수립 할 것;

- (b) 한국기업들의 국내의 활동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이 당사국의 사법적 및 비사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c) 공공조달과 용자, 원조, 보조금 지급을 국내외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준수여부와 연계할 것;
 - (d) 인권기준에 의거한 홍보활동 및 선제적 조정 등을 통해 OECD 국내연락사무소의 영향력, 투명성, 포용성 및 효과성을 향상할 것.
19. 위원회는 당사국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른 국가의무에 대한 일반논평 24호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공적개발원조

- 20. 위원회는 당사국의 공적개발원조(국민 총소득의 0.14%)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준(국민 총소득의 0.7%)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한다(제2조 1항)
- 21. 위원회는 당사국이 (a)공적개발원조 수준을 국제적 합의인 국민 총소득의 0.7%에 달하도록 증가를 가속화 할 것과 (b)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비율에 있어 더 나은 균형을 찾을 것을 권고한다.

차별금지법

- 22.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의 헌법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기반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차별금지법의 도입의 지연됨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금지 사유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제2조 제2항)

23.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 채택의 시급성을 재차 언급하며, 당사국이 인간 존엄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있어 차별이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일반논평 제20호(2009)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24. 위원회는 균형법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동성 커플들이 여러 규약상 권리를 누리는데 있어서 차별에 노출된다는 점에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공공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행동에 대한 보도에 대해 우려한다 (제2조 제2항)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및 사실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별히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 (a) 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균형법의 조항을 폐지할 것;
 - (b) 사회보장, 재산상 건강, 주거와 관련된 차별적이거나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및 규제 조항들을 개정할 것;
 - (c) 채택예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보장할 것;
 - (d)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맞서기 위해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외국인

26. 위원회는 당사국 헌법에 포함된 권리가 국민들에게만 부여된다는 사실과 외국인은 완전한 사회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외국인이 출생등록제도와 학대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사회 보장 제도 및 공공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것을 우려한다 (제2조 제2항).
27.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의 권리가 국적에 근거한 차별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외국인이 국가 사회 보장 제

도에 등록하고,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리며, 부모의 지위에 관계없이 아동의 보편적 출생 등록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사회권규약에 의거한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에 관한 2017. 3. 13.자 성명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비정규직 고용

28. 위원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장기임시고용 등 비정규직 고용이 만연한 상태라는 점에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기업이 노동 비용을 절감하고 사고 위험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하청, 파견, 특수고용에 의지하여, 노동자들로부터 노동권 보호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제7조).
29.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지 않는 형태의 고용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위원회는 (a)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할 것 (b)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법원 판결(2007두1729) 을 이행하기 위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여 입법 및 규제 조치를 취할 것 (c) 근로감독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권고한다.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적용 범위

30. 위원회는 농업, 어업과 가사 등 노동자들이 불공정하고 비우호적인 노동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분야가 근로기준법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을 보호하는 법률들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제7조, 제9조)
31. 위원회는 당사국에 근로기준법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을 보호하는 법률들의 적용을 모든 경제 부문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농업, 어업과 가사 등 특정 산업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률이 노동권의 수준을 낮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 침해 위험을 해결할 수 있길 권고한

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환경에 관한 일반견해 23호(2016년)의 47조 f항과 h항에 주목하길 요청한다.

적절한 보수

32. 위원회는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다수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점에 우려한다 (제7조).
33.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동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재차 강조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모든 부문에 적용되도록 할 것과 근로감독과 처벌을 통해 준수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성별 임금 격차

34. 위원회는 당사국이 취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별임금격차가 축소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한다 (제7조).
35.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여성의 양육 책임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시간제 일자리 쏠림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것;
 - (b) 보육 시설 수, 탄력근무제 및 육아휴직 이용률, 쿼터제 이행 등 당사국이 취한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것;
 - (c) 부문간 업무평가를 포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 이행을 감독할 것.

이주노동자

36. 위원회는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한다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함과 동시에 사업장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시 사업주의 허가를 받게 하는 고용허가제상의 조건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착취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에 여전히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많은

경우 강제노동에 이른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제6조, 제7조)

37. 위원회는 당사국이 고용허가제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장변경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노동관련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권고(30, 31항)를 염두에 두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여권 압수 관행을 예방하고, 착취와 사실상 구금과 신체적인 학대에 관한 보고에 대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포함해, 어업과 농업 분야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및 사회보장 권리가 확실히 보호되고 존중되게 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ILO 강제노동협약 제29호와 강제노동폐지협약 제105호를 비준할 것을 독려한다.

파업권

38. 위원회는 (a) 당사국내의 파업권 행사를 효과적으로 저해하는 제한적인 합법파업 요건, (b)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관한 보고, (c) 파업이 금지되는 "필수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에 우려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파업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하여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노동조합권리

40. 위원회는 법률상 복수노조가 허용한다는 점을 인지함과 동시에 기업들이 이를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의 힘을 약화하기 위해 이용해왔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방해하는 해고자 노조가입에 관한 조항 등에 대해 우려한다. 더 나아가 당사국 노동력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구성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 우려한다 (제8조).
41. 위원회는 당사국에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률이 기업에 의해 단체교섭에서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구성하거나 가입하도록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있어서의 자의적 개입을 예방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 98호를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사회 보장의 권리

42. 위원회는 일부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자격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적용을 점차적으로 폐지하려는 당사국의 의도에 주목함과 동시에, 현재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사회보장혜택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함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특정 사회보장급여의 액수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우려한다 (제9조).
43. 위원회는 사회 보장 급여의 자격 기준으로의 부양의무를 완전히 폐지하여 필요한 이들에게 사회 보장 혜택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충분한 액수의 사회 보장 혜택,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에 의한 혜택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사회 보장 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 제19호 (2008)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국민건강보험

44.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당사국의 계획에 주목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의 제한적인 보장범위로 인해 개인 의료 비용과 고가의 민간 보험료 등 가계에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제9조 및 제12조).
45. 고도로 사유화된 보건 체계의 맥락에서 위원회는 특히 소외된 그룹들이 의료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의 적절성을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비전염성 질병을 포함하여 질병 및 건강상태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시스템에서 적격성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보편적 보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노인

46. 위원회는 고령인구의 복지가 당사국의 최우선 과제임에 주목하며, 노인 빈곤의 만연과 요양시설에서의 학대를 포함한 노인 학대 보고에 대하여 여전히 우려한다 (제10조).
47.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인들이 존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 (a) 국민연금의 자격 요건의 적절성과, 노인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수령액수를 보장할 것;
 - (b)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집에 머물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증진할 것;
 - (c) 학대의 근본원인을 확인하고 다룰 것;
 - (d) 요양시설 모니터링의 획기적인 강화와 노인학대 신고시스템의 강화 등을 조치를 통하여 포함하여 학대를 예방할 것.

아동학대

48.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가족 내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부적절한 보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에 관하여 우려한다 (제10조)
4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아동과 접촉하는 전문가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도록 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개인에게도 신고의 의무를 부가하는 것을 고려할 것;
 - (b)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격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 규정 및 인프라가 마련되도록 할 것;
 - (c) 학대 아동 피해자를 위한 가족형 대체 돌봄을 증진할 것.

식수권

50. 위원회는 당사국의 강 오염과 안전한 식수의 이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고에 우려한다 (제11조).

51. 위원회는 당사국이 수자원의 질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음용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식수권에 대한 일반논평 15호(2002)에 주목할 것을 권고한다.

주거

52. 위원회는 당사국의 주거 정책이 노숙자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a) 적절하지 않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개인과 가구의 숫자가 많다는 점, (b) 주택부족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 높은 주거 비용, (c) 강제 퇴거에 대한 적절한 세입자 보호 장치 부족에 대하여도 우려한다 (제11조).
53.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은 주택정책을 고안하길 권고한다:
- (a) 노숙의 근본원인을 다루고 노숙자 개인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추구할 것;
 - (b) 사회 주택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의 이용가능성을 증가시킬 것;
 - (c) 불합리한 주거비용을 포함하여 민간부문에서 증가하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공할 것;
 - (d) 협의권, 적절한 절차상 보호 장치, 적합한 대체주택에 대한 접근권 또는 적절한 보상을 포함하여, 법률이 모든 그룹에게 퇴거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
54. 위원회는 당사국이 적절한 주거권에 대한 일반논평 제4호(1992)와 강제퇴거에 관한 일반논평 제7호(1997)에 주목할 것을 권고한다.

자살

55. 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자살률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계획의 연속적인 실행과 예방 시스템의 이행을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자살률의 근본적인 사회적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의 부족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56. 위원회는 교육 및 노동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 노인 빈곤, 그리고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집단이 겪는 차별과 중요 발언 등 사회적 근본 원인 해결등을 포함하여 자살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정신 건강

57. 위원회는 당사국 내 정신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을 우려한다 (제 12 조).
58. 위원회는 당사국이 정신 보건 서비스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고, 특히 지역 사회 기반의 진료를 장려하고 정신 보건 서비스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할 것을 권고한다.

성 및 재생산 건강의 권리

59. 위원회는 당사국에서의 낙태의 범죄화를 우려한다 (제 12 조).
60. 위원회는 당사국이 낙태를 겪은 여성을 비범죄화하여 여성의 성 및 재생산 건강과 존엄성 보호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 및 재생산 건강 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길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성 및 재생산 건강에 관한 일반 논평 제22호(2016)에 주목하길 권고한다.

HIV/AIDS 감염인의 의료

61. 위원회는 HIV/AIDS 감염인에게 대한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고에 우려한다 (제12조).
62. 위원회는 HIV/AIDS 감염인이 의료에 차별없이 접근하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권을 향유하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건강 기준에 대한 일반 논평 제14호 (2000)의 차별 금지 및 동등한 대우와 관련한 18문단과 19문단에 주목하길 요청한다.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63. 위원회는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 가구는 감당할 수 없는 야간 수업과 과외활동에 대한 의존이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에의 평등한 접근을 제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개인의 고용 접근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제13조 및 제14조).

64. 위원회는 소외계층 사람들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감당가능하고 양질의 교육에 평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특히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 (a) 학교 커리큘럼의 질과 전달을 보장함으로써 야간수업과 과외활동에 의지할 필요성을 제한할 것;
 - (b) 모두에게 역량을 기준으로 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중등 및 고등교육 진학 시스템을 개정할 것;
 - (c) 야간 수업 및 과외활동에 의존을 줄이도록 취해진 규제 조치들의 영향을 모니터링할 것;
 - (d) 고용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의 평등적 기능을 추구할 것.

문화적 다양성

65. 위원회는 당사국 인구 중 다문화주의의 수용 정도가 낮다는 것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외국인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인지하면서도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전반적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제15조).
66. 위원회는 다음을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 (a) 외국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포함하여 인구의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장려할 것;
 - (b) 문화적 다양성이 받아 들여지는 정도에 관하여 취한 조치의 영향을 모니터링할 것.
67. 위원회는 당사국에 모두가 문화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 21호(2009)에 주목하길 요청한다.

D. 기타 권고

68. 위원회는 당사국에 차기 정기 보고서에서 사회권규약 제 15 조 제 1 (b)항에 따라 모든 사람의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추가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69. 위원회는 당사국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대한 선택 의정서를 비준하도록 장려한다.
70. 위원회는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및 모든 사람의 강제 퇴거에 관한 국제 협약의 비준을 당사국이 검토 할 것을 권고한다.
71. 위원회는 규약에 따른 의무를 충분히 고려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이행함에 있어 그 안에 담긴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달성은 당사국이 발전사항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공공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자로 대우함으로써 크게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 참여 및 책무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가능목표를 실행한다면 누구도 뒤쳐지지 않을 것이다.
72.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양한 인구 집단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 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달성한 진전의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특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개발한 인권 지표(HRI/MC/2008/ 3 참조) 에 대한 개념적이고 방법론적 틀을 제시한다.
73. 위원회는 이번 최종 견해를 사회의 모든 분야, 특히 국회의원, 공무원 및 사법 당국자들에게 널리 배포하며, 차기 정기 보고서에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청한다. 위원회는 차기 정기 보고서 제출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부기구 및 기타 시민 사회 구성원들과 현재의 최종 견해에 대한 후속 조치와 국가 수준에서의 협의 과정에 참여할 것을 장려한다.
74. 당사국은 위원회가 채택한 최종 견해에 대한 후속 조치 절차에 따라 동 최종 견해 채택 후 18 개월 이내에 위 단락 18 (a) (기업과 인권), 23 (차별금지법) 및 41 (노동조합 권리)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데 관한 정보를 제공하길 요청된다.
75.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2022년 10월 31일까지 2008년 위원회가 채택한 보고 지침 (E/C.12/ 2008/2)에 따라 준비된 제5차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당사국이 국제 인권 조약 상 보고에 관한 조화된 지침(HRI/GEN/2/Rev.6, 제1장) 에 따라 공통 핵심 문서를 갱신할 것을 요청한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자료집

10.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 배포일시 2017. 10. 13. | 보도일시 : 2017. 10. 13. | 02 2125 9870/9873 | 홍보협력과장 김은미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장 조형석(02-2125-9880) | 담당: 사무관 이동우(02-2125-9886)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유엔, 포괄적 차별금지법·ILO 핵심협약 비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권고 -
 - 인권위, 정부에 국제사회의 우려해소 및 권고수용 위한 최대한 노력 이행 촉구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지난 10월 9일(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에 발표한 대한민국 사회권규약 이행상황 4차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국내에 알리고, 위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196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76년 1월 발효됐습니다. 대한민국은 1990년에 사회권규약에 가입·비준했으며,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은 올해 10월 기준 166개국입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권규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동 규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총 4회(2001, 2006, 2009, 2016)에 걸쳐 사회권규약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부보고서를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최종견해는 정부가 2016년 6월에 제출한 4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지난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된 제54차 및 제55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로,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가 2009년에 나온 이래로 8년 만에 받은 사회권규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 이번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는 ①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 절차를 제공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2016) 개정,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③ 「난민법」(2013), ④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1) 제정, ⑤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한 2012년 「고등교육법」 개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와 함께 사회권규약위원회는 30개의 구체적 분야에 대해 총 71개에 달하는 우려와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①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특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법적 의무를 수립할 것, ②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③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고용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④ 성별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할 것, ⑤ 이주노동자의 노동 및 사회보장 권리를 보호할 것, ⑥ 파업권 보장을 위한 합법파업의 요건 완화 및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것, ⑦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제87호 및 제98호를 비준할 것, ⑧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 ⑨ 노인학대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⑩ 자살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 ⑪ 노숙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포함하는 주택정책의 마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 위 권고사항 중에 △기업과 인권,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에 대한 권고는 동 최종견해의 채택 후 18개월 이내에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함으로써 그 시급성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권고 사항으로는 ①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NAP)의 수립과 이행감시 및 평가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것과, ②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과 관련된 내용도 진정사건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관련해 그동안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그리고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유엔 내 여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와 같이,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급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정부가 차별이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또한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및 사실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며, △동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균형법의 조항을 폐지할 것,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보장할 것,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맞서기 위해 인식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등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 이러한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의 상당수는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대해 권고 및 의견표명 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4차 정부보고서 심의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독립의견서 내 핵심 쟁점 10개가 모두 4차 최종견해에 포함된 결과에 대해 환영을 표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수립 중인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권고한 대한민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견해를 존중하며, 이러한 최종견해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1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우려들을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사회권규약의 완전한 이행을 앞당겨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7. 10. 1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자료집

| 인 쇄 | 2018년 8월

| 발 행 | 2018년 8월

| 발행인 |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886 | F A X | (02) 2125-0918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ISBN 978-89-6114-633-3 9334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